

#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2023. 8. 11.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



# 차 례

##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목 적 .....	3
제 2 절 용어의 정의 .....	3
제 3 절 신 청 .....	3
제 4 절 접 수 .....	4
제 5 절 서류의 보완 등 .....	4
제 6 절 처 리 .....	5
제 7 절 처리기간 .....	5
제 8 절 유효기간 .....	5
제 9 절 외국환거래 신고(수리)서 번호 기재 .....	6
제 10 절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확인업무 처리절차 등 .....	6
제 11 절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리)분에 대한 사후관리 .....	7
제 12 절 외국환거래 관계문서의 보존기간 등 .....	8

## 제 2 장 외국환의 매매 등

제 1 절 외국환의 매입 .....	12
1. 외국환의 매입 .....	12
제 2 절 외국환의 매각 .....	16
1. 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의 매각 .....	16
2.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의 매각 .....	19
3.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제출대상 매각 .....	20
4.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을 대가로 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의 매각 .....	21
제 3 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	21
1.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	21
제 4 절 외환증거금거래 .....	22
1. 외국환은행의 외환증거금거래 .....	22

### 제 3 장 지급과 영수(해외여행경비 등은 제외)

제 1 절 통 칙 .....	25
제 2 절 지 급 .....	29
1. 사전지급 .....	29
2.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급 .....	30
3.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등의 지급 .....	32
4. 미화1만불 이내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	33
5. 기타지급 .....	34
6. 수입대금 지급 .....	38
<별표 1> 용역대가지급 항목 .....	39
<별표 2> 비거주자원화계정의 예금종류 및 지급가능 이자소득범위 .....	42
<별표 3>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예치·처분 .....	42
<별표 4> 운항경비 .....	42
<별표 5> 어로경비 .....	43

### 제 4 장 해외여행경비 등의 지급

제 1 절 통 칙 .....	46
제 2 절 해외여행경비 지급 .....	49
1. 일반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경비 .....	49
2.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포함)의 해외여행경비 .....	51
제 3 절 여행업자등의 단체해외여행(연수)경비 지급 및 법인명의로의 일반해외여행경비 지급 .....	52
1. 여행업자등의 단체 해외여행경비 .....	52
2. 법인명의로의 일반해외여행경비 .....	54
제 4 절 해외이주비의 지급 .....	55
1.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	55
제 5 절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	58
1. 해외이주자중 외국국적취득자 및 외국의 영주권취득자의 국내재산 반출 .....	58

## 제 5 장 지급등의 방법

제 1 절 통 칙 .....	63
제 2 절 상계신고(보고) .....	64
1. 상계신고(보고) .....	64
2. 신고(보고)내용의 변경 .....	65
제 3 절 상호계산 .....	66
1. 상호계산 신고 .....	66
2. 상호계산계정 잔액의 처분 .....	66
제 4 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 .....	67
1. 제3자지급등 신고 등 .....	67
2.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 지급 .....	67
3.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	67
4.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의 지급 .....	67
5.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지급 .....	68
6.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국내 구미대행업체의 지급 .....	68

## 제 6 장 지급수단의 수출입

제 1 절 지급수단의 취득 확인 .....	71
1.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 취득 확인 .....	71
2. 외국인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 취득 확인 .....	72
<별표 1>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주요 발급사유 .....	73

## 제 7 장 자본거래

제 1 절 통 칙 .....	75
제 2 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과의 예금거래 .....	76
1. 거주자계정 예치 .....	76
2. 거주자계정 처분 .....	77
3. 대외계정 예치 .....	77
4. 대외계정 처분 .....	78
5. 해외이주자계정 예치 .....	79
6. 해외이주자계정 처분 .....	79

제 3 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과의 신탁거래 .....	80
1. 거주자외화신탁계정 예치 및 처분 .....	80
2.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예치 및 처분 .....	80
제 4 절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외화예금 및 신탁거래 .....	80
1. 거주자의 해외예금 .....	80
2. 거주자의 해외신탁 .....	82
제 5 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83
1.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및 차입자금의 용도전환 .....	83
2.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자금 차입 .....	85
3.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차입 .....	86
4.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87
제 6 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88
1. 투자매매·중개업자 현지차입에 대한 보증 .....	88
2. 거주자의 현지법인의 해외리스에 대한 국내본사 등의 보증 .....	88
3. 국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의 보증 .....	88
4.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차입에 대한 보증 .....	89
5. 해외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원리금 상환보증 등 .....	89
제 7 절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시설물 이용에 관한 권리(회원권 등) 취득 .....	91
1. 회원권등의 취득 .....	91
제 8 절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 .....	91
1. 증권발행에 따른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91
2. 증권발행에 따른 대외계정 .....	91
제 9 절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 .....	92
1. 투자전용 대외계정 .....	92
2. 비거주자의 비상장·비등록주식 취득 및 처분 .....	93
제 10 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	94
1. 임대차계약 .....	94
제 11 절 현지금융 .....	95
제 1 관 통    칙 .....	95
제 2 관 현지금융에 대한 사후보고 .....	97
1. 거주자 및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에 대한 사후보고 .....	97
제 3 관 현지금융 원리금 상환 .....	98
1. 현지금융의 원리금 상환 .....	98

## 제 9 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제 1 절 해외직접투자	101
제 1 관 통 칙	101
제 2 관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105
1.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105
2.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	105
3. 사후보고방식에 의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107
제 2 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108
제 1 관 해외지사의 설치·변경	108
1.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108
2.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신고내용의 변경	110
제 2 관 해외지사의 영업기금 및 설치비 지급	111
1.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지급	111
2. 해외지사의 설치비 지급	111
제 3 관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 지급	112
1.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 지급	112
2. 국내항공·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112
제 3 절 외국기업 국내지사	113
1. 국내지사 설치	113
2. 신고내용의 변경	113
3. 영업자금 도입	114
4.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115
5. 국내지사의 폐쇄 신고	115
6. 청산대금의 회수	116
제 4 절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117
제 1 관 통칙	117
제 2 관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120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소유권 취득	120
2.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신고수리	121
3.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용변경	122
4.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임차권 취득	122

제 5 절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123
1.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취득 .....	123
2.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 지급 .....	124

## 제 10 장 대북투자 등

제 1 절 통 칙 .....	127
제 2 절 대북투자 .....	130
1. 대북투자 신고 .....	130
2. 대북투자 신고내용의 변경, 투자금액 감액 신고 .....	131
3. 투자금 송금확인 .....	131
4. 재투자신고 .....	131
5. 대북투자 청산신고 .....	132
제 3 절 북한지사 .....	133
1. 북한지사 설치 신고 .....	133
2. 북한지점 설치내용의 변경신고 .....	133
3.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송금 .....	133
4. 북한지사의 설치비 지급 .....	134
5. 북한지사의 유지활동비 지급 .....	135
6. 북한지사 폐지, 명칭 또는 위치 변경 신고 .....	136
제 4 절 현지금융 .....	138
1. 대북투자자 등의 현지금융 .....	138
2. 현지금융 원리금 상환 .....	140

## 제 11 장 외국환거래신고, 신고수리 분류표

.....	141
-------	-----

## 제 12 장 지집 서식

.....	146
-------	-----



# 제 1 장 총 칙

- 제 1 절 목 적
- 제 2 절 용어의 정의
- 제 3 절 신 청
- 제 4 절 접 수
- 제 5 절 서류의 보완 등
- 제 6 절 처 리
- 제 7 절 처리기간
- 제 8 절 유효기간
- 제 9 절 외국환거래 신고(수리)서 번호 기재
- 제 10 절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지정확인업무 처리절차 등
- 제 11 절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리)분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2 절 외국환거래 관계문서의 보존기간 등



# 제 1 장 총 칙

## 제 1 절 목 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23조,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 및 제7항,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13조에 의거 외국환은행의 장이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용어의 정의

1. 신고 : 신고라 함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소정의 신고서에 당해 외국환거래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당해 거래 등이 신고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신고서에 “신고필”이라 기록하여 신고기관의 장 직인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신고수리 :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앞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규정에 있는 신고요건에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신고수리를 받아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고수리의 절차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3. 사후보고 : “사후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의 인정된 거래를 위한 절차상 보고로 제10-9조의 사후관리 및 보고서 등의 제출과는 상이함. 외국환거래 당사자는 규정에서 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국환거래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정의 보고서에 첨부하여 당해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은행은 외국환은행의 장 직인을 날인한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이 지침의 “영수”는 2009. 2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의 “수령”과 동일 함

## 제 3 절 신 청

1.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신고수리,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신청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고서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각 항목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말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서와 당초의 신고필증 또는 신고수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전자적 방법 중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송금방식 무역거래에 따른 지급등의 신청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지급등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사전 송금방식 무역대금 지급등
  - 나. 사후 송금방식 수입(수출)거래 지급(수령)신청시 별도 시스템에서 확인된 수입(수출) 신고잔액 범위 내의 무역대금 지급등
  - 다. 수출대금의 영수사실이 전산상 확인된 경우의 송금방식 중계무역대금 지급
2. 제1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는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3.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당해 신고를 요하는 행위나 거래의 당사자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실명확인증표로 당사자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이 신고인이 될 수 있으며 “사”목의 경우에는 대리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시에는 실명확인을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2호에 의거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입시의 실명확인으로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가.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의 무능력자이거나 노약자로서 그 가족이 대리하여 신고인이 되는 경우.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이

가족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외국에 있는 자 또는 비거주자인 당사자나 본인을 위하여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인이 되는 경우(예시 : 해외유학경비, 해외체재비 등)

다.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인 당해 당사자 또는 본인의 행위나 거래에 관하여 그 본사 또는 본점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

라.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에 따라 취득한 국내 보수 송금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대리하여 지급신청하는 경우 및 해외인력 송출기관의 국내사무소가 일괄 지급하는 경우(최초 신청시 국내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사본 및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외관 41271-270. '98.11.12)에서 정한 북한지역 관광객의 기본경비를 당해 관광객을 대리하여 환전하는 경우. 다만, 당해 지침에서 정한 관광사업자가 발행한 북한지역 관광 경비지급 영수증 원본 등으로 당해 관광객(동행인 포함)을 위한 환전이 확인되고 대리인의 신분이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법인(단체·조합·개인기업 등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해당 소속 임직원이 대리하여 신고인이 되는 경우

사.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

4. 신고인은 신고서를 국문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를 가진 자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외국어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5.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된 신고서(제출서류 포함)의 신고인에게 당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적기관이나 기타 공인된 기관이 작성 또는 확인한 국문의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신고는 당해 행위 또는 거래를 착수 또는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7. 이 지침 제7장 내지 제9장에 의한 신고등과 관련하여 기존 신고인·대리인·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8. 신고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우편으로 신고필증 또는 신고수리서 등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송우표를 동봉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9. 대북한 관련 지급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또는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거래

지침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당해 지급행위가 동 법령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류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 4 절 접 수

1. 신고시 제출서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2. 외국환은행은 원본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확인이 된 사본을 발행·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신고금액, 일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이 지침 제7장 내지 제9장에 의한 신고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 제 5 절 서류의 보완 등

1. 외국환은행은 신고서를 접수, 검토하여 서류상의 하자가 있거나 지급사유 및 타당성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보정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보완·보정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요구사항에 관한 명세서에 제출기한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신고인이 제2호의 기한 내에 보완·보정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4. 신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보정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제출요구가 불가능하거나 그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책임자가 신고서에 취소인을 날인하여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5. 외국환은행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 확인 또는 추천서 등 기타서류의 제출을 신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추천은 신고인의 지도·감독기관인 하부기관에 동 추천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기관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6 절 처 리

1. 외국환은행은 신고서를 접수순에 따라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 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제7절에서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이를 처리하고, 제9절에서 정하는 번호 기재요령에 따라 신고사항은 신고대장, 신고수리사항은 신고수리대장에 각각 기장하여야 한다.
2. 신고필증은 당해 신고서에 “신고필”이라 기록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직인을 날인·교부하고 신고수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장의 직인이 날인된 신고수리서를 발행 교부함에 의한다.
3. 신고서 제출서류 원본(계약서, 주무부장관 등의 허가서, 추천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신고에 필요한 주요서류의 원본을 말한다)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서류 원본에 점포명, 금액, 일자 등 신고수리 또는 신고에 관한 주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 지침 제7장 내지 제9장에 의한 자본거래 신고를 한 경우 대외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5. 제2호에 의하여 발행·교부된 신고필증 및 신고수리서상의 신고(수리)금액, 신고(수리)일자, 유효기간의 정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정정된 서류는 이를 무효로 한다.
6.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전결권자는 접수일자 및 소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한 국세청 또는 관세청 통보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관련자료제출집계표(지침서식 제1-3호)에 해당 신청서, 한도관리대장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통보한 경우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외국환은행은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신고업무 및 당해 신고와 관련된 업무 등(거래외국환은행지정, 한도관리, 보고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전산처리에 의하여 외환관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거 당해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9. 이 지침에서 “현지공관장등”이라 함은 현지공관장(주재재경관 포함), 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사무소장, 외국환은행 해외점포(현지법인 포함)장을 말한다.

10. 외국환은행의 장이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은 자로부터 기 신고(수리)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받는 경우 변경신고(수리)/보고서(지침서식 제7-21호) 및 변경사유인증서류를 제출받아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 7 절 처리기간

외국환은행의 장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신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 분	처리기간
1.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리업무	7영업일 이내
2.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업무	2영업일 이내

제 8 절 유효기간

1. 이 지침 제9장에 의한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유효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인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신고(수리)서(신고필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당초 유효기간 이내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의 신고(수리)서(신고필증) 원본을 확인하고 ( )변경신고(수리)/보고서(지침서식 제7-21호) 또는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9-6호)를 제출 받아 당초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연장할 수 있다.
3.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그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나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수리)는 무효로 한다. 신고(수리)서(신고필증)의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한하여 별도의 신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 제출한 신고증빙서류를 근거로 다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신고(수리)일(일자가 변경된 신고필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다시 신고(수리) 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새로운 신고(수리)서와 당초 신고(수리)서(신고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를 한 당사자는 동 신고(수리)서(신고필증)의 유효기간 이내에 분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은 분할지급시 신고(수리)서(신고필증)에 의거 신고(수리)금액(신고필증 금액) 범위내인가를 확인하고, 신고(수리)서(신고필증)에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하고 지급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5. ‘유효기간’이라 함은 신고인이 신고(수리) 내용에 따라 당해 지급 또는 영수를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 9 절 외국환거래 신고(수리)서 번호 기재

신고 또는 신고수리번호는 아래와 같이 신고 또는 신고수리별, 일련번호순으로 매년 개편하여 신고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에 구분 기재한다.

< 예 시 >

㉠	㉡		㉢		㉣
신 고	1234	-	자본	-	00001
신고수리	1234	-	해투	-	00001

㉠ :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사항,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리사항으로 각각 구분표시

㉡ : 12 = 은행 외환 No, 34 = 외국환취급(부)점 No.

㉢ : 항목번호(지침 제11장제1절의 「외국환거래 신고·신고수리 분류표」 참조)

㉣ : 연도별 일련번호

### 제 10 절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확인업무 처리절차 등

#### 1. 신규지정

##### 가. 지정확인 신청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10-11조에 의거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지침서식 제1-2호)를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회계처리하는 출장소는 모점 명의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한도관리를 위해 모점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나. 지정확인번호 부여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거래자의 지정확인번호를 이 절 제3호에 의거 부여하여야 한다.

- 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한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음(단,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으로 실명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 2. 변경지정

##### 가. 변경의뢰 및 변경동의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현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하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이 동의한 경우 변경후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나. 변경지정 신청

변경신청인은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이 확인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이하 “변경후 지정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지정취소 및 관련서류 송부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은 변경후 지정거래은행의 요청에 의거 기존의 지정사항을 취소하는 동시에 동 거래자의 송금 및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변경후 지정거래은행 앞으로 송부한다.

##### 라. 지정확인번호 부여 및 확인

변경후 지정거래은행은 새로운 지정확인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의 당해 연도중 송금 및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종합관리하는 동시에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확인번호 및 지정일자를 기재한 후 1부는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에 송부하며, 1부는 당해 은행에서 보관한다.

#### 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확인번호 부여요령

##### 가. 번호의 구성

지정확인번호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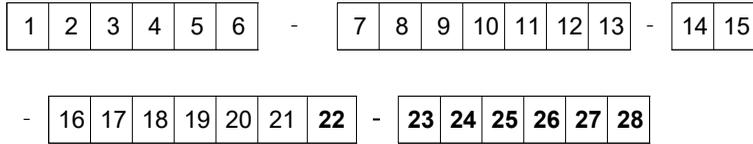
- ①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증번호,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비거주자, 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는 여권번호)

② 거래 항목 번호 : 2자리

③ 당해 거래외국환은행의 은행지로 번호 : 7자리

④ 거래항목별 일련번호 : 2자리(지정연도) + 4자리(일련번호)

나. 번호의 부여방법



(1) ~ (13)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해외이주(예정)자 제외) :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 : 사업자등록증번호,

외국인거주자, 외국인비거주자, 재외동포(해외이주(예정)자 포함) : 여권번호

☞ 첫째란부터 13번째란까지 부여하며 공란이 있을 경우 0으로 매움

(14) ~ (15) : 거래 항목 번호(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함)

(16) ~ (22) : 당해 거래외국환은행의 은행지로 번호

(23) ~ (24) : 거래 지정연도의 끝 두 자리(예: 2002년 → 02로 기재)

(25) ~ (28) : 연도별 일련번호

#### 4.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의 관리기간

가. 거주자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급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당해연도 말일까지 관리하여야 한다(매년 신규 지정하여야 함).

나. 기타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또는 취소시까지 관리한다.

#### 5.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의 취소

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자는 지정 관리기간 내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없으며, 다른 외국환은행으로의 변경만 허용된다.

나. 가목에 불구하고 당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과거 2년 이상 동 지정과 관련된 거래가 없는 자로서 사후관리 종결 등 지정거래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거주자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급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은 제4호가목의 관리기간 만료 익일에 취소한다.

#### 6.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관련 유의사항

가. 규정 제10-11조에 의해 지정이 필요한 항목은 1개의 외국환은행(취급점 단위)을 지정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한도관리 등 사후 관리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어 지정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행 내의 다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나.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은행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은 사후관리상 미결사항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확인)서에 즉시 변경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법인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단위로 하여야 한다(공장, 지점 또는 사업부 단위로 할 수 없음).

라. 연간 금액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의 연간 기준은 매년도 1.1. ~ 12.31.로 한다.

마. 외국인거주자, 외국인비거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는 여권번호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등록하여야 한다.

#### 제 11 절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리)분에 대한 사후관리

##### 1. 사후관리자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리)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당해 취급점이 행한다. 다만, 통합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중점에서 사후관리할 수 있다.

##### 2.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후관리한다.

가. 신고(수리)된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의 여부

나. 신고수리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여부

##### 3. 자료의 제출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국환거래 당사자에게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사후관리결과에의 처리

사후관리외국환은행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위규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본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점은 당해 제재대상자에 대하여 규정 제10-9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외국환거래법령에 의거 외국환거래 사실을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는 경우로서 전산통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통보를 생략함.

제 12 절 외국환거래 관계문서의 보존기간 등

1.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거래신고 관련 문서를 신고일(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일)로부터 2년간 보존(전자문서방식 포함)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요하는 신고관련 문서는 지정취소시 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급신청서와 영수확인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2 장 외국환의 매매 등

제 1 절 외국환의 매입

제 2 절 외국환의 매각

제 3 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

제 4 절 외환증거금거래



제 1 절 외국환의 매입

< 제2장 제1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외국환의 매입 (규정 제2-2조)</p>	<p>1. 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p>	<p>1.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취득경위가 기재된 지급지시서(P/O)를 포함]</p> <p>2. 외국환신고(확인)필증(규정 서식 제6-1호) 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신고필증(규정 제6-2호 서식)(다만, 확인 및 유의사항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p> <p>3.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규정서식 제7-4호)(다만, 확인 및 유의사항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p> <p>4. 영수확인서(지침서식 제4.3호)(외국인거주자 제외)</p>	<p>1.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 확인</p> <p>2.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미화 2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를 기준으로 하며 2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임)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다. 당해 거주자의 거주자계정(거주자외화신탁계정 포함)에 예치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 수출대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3장제1절제11호 및 제5장제1절통칙제2호를 참조할 것</p> <p>3. 미화 1만불 초과 매입시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제청장 및 관세청장앞 통보. 다만, 확인 및 유의사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순수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출대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5장제1절 통칙 제2호를 참조할 것</p> <p>4. 제출서류 “4”는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미화 10만불 초과(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를 기준으로 하며 2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임)의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다만 수취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송금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영수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후 영수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매입 가능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5.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의 경우로서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매입 가능함 (확인 및 유의사항 제6호는 제외)</p> <p>☞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여행자)수표(백지수표 포함)를 휴대 반입한 경우로서 동일자·동일인·동일점포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이 발행하는 외국환 신고(확인)필증 또는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신고필증을 징구하여야 함</p> <p>6. 확인 및 유의사항 제2호가목을 제외하고 외국인거주자가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휴대하고 있던 대외지급수단의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매입을 의뢰하는 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여야 함(규정 제2-2조제3항 참조)</p> <p>7.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외국환 매입증명서·영수증·계산서 등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발행·교부하여야 함</p> <p>8.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의한 외국환 매입의 경우 동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일자, 금액, 매입기관을 기재한 후 교부하여야 함</p> <p>9.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대외지급수단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처분목적 알 수 없는 경우 “해외재산반입자금”으로 간주하여 매입 가능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p>	<p>1.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다만, 비거주자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의화신탁계정 인출 또는 송금방식에 의하여 영수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p> <p>2.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 (규정서식 제7-4호) (다만, 확인 및 유의사항 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p>	<p>1. 내용 “1”의 확인 및 유의사항 1, 2 참조</p> <p>2.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 징구를 면제함</p> <p>가.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를 기준으로 하여 2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임)</p> <p>나.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p> <p>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화 1만불 초과 매입시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 앞 통보</p> <p>4. 확인 및 유의사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휴대하고 있던 대외지급수단의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매입을 의뢰하는 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여야 함(규정 제2-2조제3항 참조)</p> <p>5.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영수증·계산서 등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발행·교부하여야 함</p> <p>6.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의한 외국환 매입의 경우 동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일자, 금액, 매입기관을 기재한 후 교부하여야 함</p> <p>7. 외국으로부터 송금 또는 휴대반입한 대외지급수단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입하는 경우로서 처분목적은 알 수 없는 경우 “해외재산반입자금”으로 간주하여 매입 가능함</p>

제 2 절 외국환의 매각

< 제2장 제2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의 매각 (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p>	<p>거주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p> <p>1. 당해 외국환을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p>	<p>1. 인정된 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환급 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관할 지방국세청장 발급)</p> <p>2. 여권(외국인거주자의 경우)</p> <p>3.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외국환 매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영수증·계산서, 외국환신고(확인) 필증 등)</p>	<p>1. 외국인거주자에게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수증 또는 계산서의 외화 금액 범위 내에서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를 재매각(일부매각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환매입증명서·영수증계산서에 일자, 금액, 매각기관명을 기재한 후 교부하여야 함</p> <p>2. 상기 “1”의 경우로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함</p> <p>가. 휴대수입 금액 범위 내에서 재매각하는 경우 : 상기 “1”의 서류와 관할세관의 장이 발행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p> <p>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재매각하는 경우 : ①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입한 경우 : 동 송금내용을 입증하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수증 또는 계산서 ② 외국통화로 매각한 경우 : 상기 “1”의 서류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p> <p>3. 규정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거주자에게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5-11조제2항에 의거 외국환신고(확인)필증(규정서식 제6-1호)을 발행·교부하여야 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 제3호 :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p> <p>4. 외국인거주자에게 외국환을 매각하여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장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15”를 참조할 것</p> <p>5. 외국인거주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장제1절 공통 확인 및 유의사항 “4”를 참조할 것</p> <p>6. 신용장·무신용장(D/P, D/A)방식 수입대금 지급의 경우에는 L/C 개설신청서, 추심서류 및 수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지급방법을 확인할 것</p> <p>7.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 제4-3조에 의거 대외 지급수단에 의한 지급을 위하여 당해 정부기관의 장(국가재정법에 의한 지출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재정법에 의한 지출권 포함)의 명의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의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에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할 수 있음</p> <p>8. 환전영업자에게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행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p> <p>9.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거주자의 국내 거주기간의 산정은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입국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거주성 여부를 판단할 것</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의 매각 (규정 제2-3조 제1항제2호 )</p>	<p>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p> <p>1.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p> <p>2.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해외지점, 현지법인금융기관 및 규정 제7-48조제1항제8호의 외국금융기관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p> <p>3.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소지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내국통화를 인출한 금액 범위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p> <p>4. 제1호 내지 제3호의 매각실적 등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미화 1만불 이내에서 매각하는 경우</p> <p>5.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한 경우</p> <p>6. 규정 제4-4조에 의한 금액 범위 내</p>	<p>1. 여권</p> <p>2. 외국환매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영수증·계산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등).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 기목 및 나목에서 정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확인서로 같음</p> <p>1. 인정된 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p> <p>1. 취득경위 입증서류</p>	<p>1. 비거주자에게 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수증 또는 계산서의 외화 금액 범위 내에서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를 재매각(일부매각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수증, 계산서에 일자, 금액, 매각기관명을 기재한 후 교부하여야 함</p> <p>2. 상기 “1”의 경우로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함  가. 후대수입 금액 범위 내에서 재매각하는 경우 : 상기 “1”의 서류와 관할세관의 장이 발행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재매각하는 경우 :  ①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입한 경우 : 동 송금내용을 입증하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수증 또는 계산서  ② 외국통화로 매각한 경우 : 상기 “1”의 서류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p> <p>3. 규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에게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5-11조제2항에 의거 외국환신고(확인)필증(규정서식 제6-1호)을 발행·교부하여야 함</p> <p>4.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매각하여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장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15”를 참조할 것</p> <p>5. 내용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에 당해 매각사실을 기재하여야 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3. 한국은행의 대외 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제출대상 매각 (규정 제2-3조 제1항제3호)</p>	<p>1. 국민인비거주자가(재외동포제외)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내국 통화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함에 따른 관련 원리금의 지급 (규정 제7-6조제1항제2호 참조)</p> <p>2.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지급.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담보 제공 또는 보증에 따른 대지급의 경우 및 규정 2-8조제1항5호라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담보·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의 지급</p> <p>4. 규정 제2-6조, 제7-13조제4호, 제7-16조, 제7-17조제9호, 제7-45조제11호 및 제18호 단서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취득한 원화자금의 대외지급</p>	<p>1.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규정서식 제7-4호)</p>	<p>1. 제출서류 “1”에 의한 전체금액을 매각시에는 교부받은 신고필증의 원본을 회수하며 일부금액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 원본의 여백에 매각은행, 일자, 금액 등을 기재하여 원본은 반환함</p> <p>2. 비거주자에게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매각한 경우에는 규정 제6-2조제4항에 의거 규정서식 제6-1호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함</p> <p>3. 내용 “4” 중 재외동포가 규정 제2-6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7-45조제1항제11호, 제18호 단서규정 및 제23호에 의하여 취득한 원화를 대가로 외국환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장제5절의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절차를 따름</p> <p>※ 내용 “4” 관련 조문 내용                  제2-6조 :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제7-13조제4호 :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제7-16조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제7-17조제9호 :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채무의 보증                  제7-45조제1항제11호 : 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제7-45조제1항제18호단서 : 거주자가 내국통화로 지급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                  제7-45조제1항제23호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p>

< 제2장 제2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4.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을 대가로 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의 매각 (규정 제2-3조 제3항)	<p>5.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의한 금액범위를 초과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p> <p>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을 대가로 다른 외국 통화 표시 외국환매각의 경우</p>	<p>1. 인정된 거래로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외국환신고 (확인)필증 등)</p> <p>2.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규정서식 제7-4호) (다만, 확인 및 유의사항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p>	<p>1. 미화 2만불 이하의 매각인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면제함</p> <p>2. 확인 및 유의사항 제1호를 제외하고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휴대하고 있던 대외지급수단의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매입을 의뢰하는 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정 제2-2조제3항 참조)</p>

제 3 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

< 제2장 제3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규정 제2-6조제4항)</p> <p>[ 신 고 ] 자 본</p>	<p>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원화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동일인 기준 10억원 초과하고 300억원 이하 (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인 경우</p> <p>※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p>	<p>1.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지침서식 제7-13호)</p>	<p>1. 개별 외국환은행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동일인 기준 ‘1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p> <p>2. 국민인 비거주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예외사항이므로 본 항목 적용대상에서 제외됨</p> <p>3. 동 대출금액은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 예치 가능함. 다만,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은 대출의 경우에는 제외</p>

제 4 절 외환증거금거래

< 제2장 제4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외국환은행의 외환 증거금거래 (규정 제2-4조의2)</p>	<p>실제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 및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p>		<p>1. 최소 거래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USD/KRW → USD10,000</li> <li>나. EUR/USD → EUR10,000</li> <li>다. USD/JPY → USD10,000</li> <li>라. GBP/USD → GBP10,000</li> <li>마. AUD/USD → AUD10,000</li> <li>바. NZD/USD → NZD10,000</li> <li>사. USD/CHF → USD10,000</li> <li>아. USD/NOK → USD10,000</li> <li>자. USD/SEK → USD10,000</li> <li>차. USD/DKK → USD10,000</li> <li>카. EUR/JPY → EUR10,000</li> <li>타. EUR/GBP → EUR10,000</li> </ul> <p>2. 최소 증거금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SEK, NOK, DKK 통화간 거래 : 2%</li> <li>나. 상기 “가” 이외의 거래 : 5%</li> </ul> <p>3.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p>

## 제 3 장 지급과 영수

(해외여행경비 등은 제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지 급



<p><b>【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규정 제7장 내지 제9장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li> <li>2. 규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라 함은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 영수확인서(지침서식 제4-3호)를 의미함</li> <li>3. 당해 지급 또는 영수의 방법이 규정 제5장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li> <li>4.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로부터 동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하여야 함. 다만 규정 제7-2조제8호에 의하여 제7장의 신고 및 신고예외 자본거래(제9장 제외)를 포함하여 연간 지급 누계액 미화 10만불 이내의 거래로서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상에 지급사유를 기재하고 동 내용을 구두로 확인(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을 포함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연간 지급 누계액 미화 10만불 이내의 거래의 경우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지급함</li> <li>5.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영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로부터 동 영수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하여야 함. 다만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미화 10만불 이하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거래 당사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li> <li>6.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외국에서 송금된 미화 10만불 초과(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를 기준으로 하며 2회 이상 영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임)의</li> </ol>	<p>대외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로서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확인서(지침서식 제4-3호)를 징구하여야 함(FAX 또는 스캔방식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 다만 영수확인서에 기재된 영수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매입하여야 함</p> <p>☞ 수취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송금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영수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후 영수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매입 가능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상기 “5” 및 “6”에 불구하고 규정 제7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 거주자 제외)의 거래건당 영수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10만불 이내이고, 연간 영수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규정 제7-2조제9호에 의한 신고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함.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상기 “5” 또는 상기 “6”에 의한 영수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함</li> <li>☞ 자본거래 연간 영수 누계금액 미화 10만불 이내로서 신고예외적용을 받은 거주자가 동 자본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li> <li>8. 지급등의 제출서류 중 지급신청서를 제외한 기타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함 (사본 보관 불요). 지급신청서 보관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음</li> <li>※ 지급등의 증빙서류는 전자적 방법(FAX, e-mail 또는 스캔방식에 의한 경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li> <li>9.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 또는 영수확인서(지침서식 제4-3호)는 본 지침에서 정한 서식을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li> </ol>
--	--

<p>10.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입대금 지급(송금방식 제외)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제출을 면제함</p> <p>11. 제 4 호 및 제 5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가.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 영수 나.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 지급</p> <p>☞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자로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해당실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동 실적의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등의 증빙서류 제출면제 가능함</p> <p>☞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함</p> <p>다. 사후송금방식 수출(입) 대금의 지급 등으로서 외국환은행이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산정보 포함)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입) 신고금액 범위 내임을 확인한 경우</p> <p>12. 당해 지급 또는 영수의 거래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항목인지 또는 규정 제4장에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상인지 여부</p> <p>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지급등인지 여부 (규정 제4-1조)</p> <p>나.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대상인지 여부 (규정 제4-8조)</p> <p>※ 국세청·관세청 통보대상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보고되는 항목은 규정 제10-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에서 통보)</p>	<p>(1)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또는 영수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 또는 영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또는 영수의 경우에는 제외)</p> <p>①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p> <p>② 해외예금 목적의 송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p> <p>③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p> <p>☞ 신용카드(여행자카드 포함) 등으로 현지에서 지급하거나 외국통화로 인출한 실적을 포함한 연간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임</p> <p>④ “①” 내지 “③”을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 및 영수(송금수표에 의한 지급 및 영수 포함)하는 경우</p> <p>⑤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수로서, 영수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p> <p>⑥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규정 제10-12조)</p>
---	---

<p>(2)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의 경우에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li> <li>②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 또는 영수(&lt;별표1&gt; 예시 참조)</li> <li>③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급</li> <li>④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li> <li>⑤ “①” 내지 “④”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송금수표에 의한 지급 포함) 및 영수하는 경우</li> <li>⑥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수로서, 영수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li> <li>⑦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규정 제10-12조)</li> </ul> <p>(3)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 등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의 경우에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당 미화 5천불 초과하는 거주자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해외예금 목적의 송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li> <li>②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li> <li>③ “①” 및 “②”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 포함)을 하는 경우</li> <li>④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규정 제10-12조)</li> </ul>	<p>13.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한 대외지급수단을 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 또는 거주자계정(거주자와외화신탁계정 포함)에 예치할 경우에는 규정 제2-2조에 의한 확인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함(규정 제2-2조 및 제7-10조)</p> <p>14.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규정 제4-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영수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영수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함</li> <li>나. 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다.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의 경우</li> <li>라.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li> <li>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매각실적 범위 내의 지급</li> <li>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급</li> <li>사. 기타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li> <li>아. 상기 “가” 내지 “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상기 “다”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한 연간 미화 5만불(외국인거주자의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외국에서의 사용 및 현금인출 포함) 범위 이내의 지급(동 항목은 “국내 취업자의 임금” 사유코드를 적용)</li> <li>자. 상기 “가” 내지 “아”에 불구하고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한 미화 1만불 범위 이내의 비거주자의 지급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범위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li> </ul> <p>☞ 여권에 매각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외계정의 예치는 불가함</p>
--	---

<p>15.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외환통계 보고항목 분류표」의 무역외 및 자본거래 항목 분류표의 지급등의 사유코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함</p> <p>16. 규정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가. 당해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 제재기관(금융감독원 포함)에 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등에 해당되는 규정서식에 의하여 보고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신고서 하단에 “규정 제4-2조 제3항에 의한 보고임”이라 기재하고 신고(수리)서 번호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함  나. 가목의 거래 또는 행위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는 은행이 해당항목으로 지정등록을 하여야 함  다. 당해 영수에 앞서 영수의 원인이 되는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수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미신고등의 위반사실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실 보고서(지침서식 제4-4호)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영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p> <p>17. 규정 제10-11조에 의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거래당사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지급등(휴대반출을 위한 환전 포함)을 하여야 함</p>	<p>18. 거주자가 미화 5천만불 이내에서 비거주자와 자금통합관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규정 제7-4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small>☞</small> “자금통합관리”라 함은 거주자가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참여 기업 간에 잉여·부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함</p> <p>19.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대외지급할 수 있음</p> <p>20. 외국환은행은 지급인의 거래횟수, 거래금액, 거래양태 등에 비추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을 강화할 수 있음</p>
--	--

제 2 절 지 급

< 제3장 제2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사전지급(규정 제4-3조제1항 제4호)</p>	<p>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을 하는 경우</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p>	<p>1. 제1절 통칙 참조</p> <p>2.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은 본 항목을 적용할 수 없음                      ※ 적용 예시 : 외국에서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 등을 제작 하거나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p> <p>3. 지급신청서 우측 상단에 “사전지급”임을 표시하여야 함</p> <p>4. 지급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징구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 이내에서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p> <p>5. 제4호에서 정한 정산기간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p> <p>6. 상기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급(규정 제43조 제1항제1호 및 제4-8조)</p> <p>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연간 지급누계금액 미화 10만불 이하의 지급</p>	<p>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의 당해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연간 지급누계금액 미화 10만불 이하의 지급</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p> <p>2.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p>	<p>1. 제1절 통칙 참조</p> <p>2.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3. 건당 미화 5천불 이하의 지급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연간 지급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함</p> <p>4. 지급인별 연간 송금합계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대상임(규정 제4-8조)</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나.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연간 지급누계금액 미화 10만불 초과 의 지급</p>	<p>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의 당해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연간 지급누계금액 미화 10만불 초과 의 지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li> <li>2. 지급확인서 (지침서식 제4-2호)</li> <li>3. 거래 또는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4.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li> <li>5.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확인 및 유의사항 “5”에 의한 지급의 경우는 제외)</li> <li>6. 사업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장 제2절 항목 2 “가”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li> <li>2. 제출서류는 매 지급신청시마다 제출하여야 함(분할지급 불가)</li> <li>3. 상기 “2”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종교단체인 경우 제출서류 “4”는 매년 최초 신청시 1회에 한하여 징구함</li> <li>4.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규정 제7-45조 제21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규정 제7-45조 제22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급확인서에 의한 지급확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또는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이사회 의사록, 거래당사자 일방의 요청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e-mail 증빙 등</li> </ul> </li> <li>5. 거주자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국제단체에 의연금 또는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규정 제7-45조제24호) 본 항목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 국제단체는 UN과 그 산하단체에 준하는 기관 (국제적십자사연맹 포함)에 한함</li> </ul> </li> </ol>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3.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등의 지급 (규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p>	<p>1.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                  2. 여권(또는 그 사본)                  3.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명세표 등 급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국내보수의 경우)                  4.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의 경우)                  5. 보험금·연금수령증 등 취득 경위 입증서류(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등의 경우)</p>	<p>1.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15” 참조                  2.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여권 징구만으로 가능함                  4.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리하여 지급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 근로자 각각의 급여명세표 등 급여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신청인(피고용인)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취인 등 지급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일괄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총칙 제3절제3호라목 참조)                  5. 제출서류 4의 내용 중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규정 제 7-45조제1항제18호단서에 따라 한국은행앞 대외지급수단매매신 고대상으로 본 항목 적용대상이 아님</p> <p>※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 보험 수령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된다</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2. 규정 제4-4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	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  2. 여권(또는 그 사본)	1. 자행이 항목 “3” 내용 “1” 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지급누계금액이 연간(매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5만불 이하인 경우 규정 제4-4조제1항에 의한 취득경위 입증서류 없이 지급 가능함  3.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은 다음 각목의 1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함 가.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외국으로의 송금 또는 대외계정에의 예치 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출하지 않고 미화 2만불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한 외국으로의 송금 또는 대외계정에의 예치 다. 외국인거주자의 경우로서 신용카드등을 통한 대외지급  4. 연간 지급누계금액 미화 5만불 범위 내의 지급은 국내보수 또는 소득 관련 증빙서류 금액 범위 내의 지급과 별도로 추가 지급 가능함  5. 내용 “2”에 의한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은 외국으로의 송금, 대외계정 예치, 또는 신용카드등을 통한 대외지급에 한하며, 휴대수출을 위한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의 환전은 불가함
4. 미화 1만불 이내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규정 제4-4조 제3항)	1. 규정 제4-4조제3항에 의한 미화 1만불 이내의 비거주자의 지급 또는 미화 1만불 이내의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여행경비 지급	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  2. 여권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 항목 “3”과 별도로 최근 입국일 이후 미화 1만불 금액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함 가.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한 비거주자의 지급 나. 미화 1만불 이내의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다. 미화 1만불의 범위는 송금 및 환전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2. 당해 지급의 경우 여권에 매각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5. 기타지급 (규정 제4-3조, 제4-4조)</p>	<p>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p> <p>2.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3. 허가서나 신고(수리)서 등 (타 법령 및 규정 제7장 내지 제9장에 의하여 당해 지급 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p> <p>4. 여권(또는 그 사본)</p> <p>5.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국명령서 또는 출국권고서 등(불법체류자의 경우)</p> <p>6.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규정서식 제7-4호)</p>	<p>1. 제1절 통칙 참조</p> <p>2. 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담보제공, 보증에 따른 대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및 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p> <p>3. 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담보제공, 보증에 따른 대지급시 추가 청구서류 ① 자금공여자의 채무이행 청구서 ② 원리금 및 부대비용 산출 명세서</p> <p>4. 비거주자원화계정의 예금종류 및 지급가능 이자소득의 범위는 &lt;별표 2&gt;를 참조할 것</p> <p>5. 외국환은행의 장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예치 및 처분시 당해 거래의 확인은 거주자에게 할 수 있음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처분은 &lt;별표 3&gt;을 참조할 것</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6.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보유(취득)여부를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규정서식 제6-1호)을 발행·교부하여야 함(규정 제5-1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p> <p>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을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 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당해 수리 또는 검사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p> <p>나.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lt;별표 4&gt;의 운항경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p> <p>다.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p> <p>라.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p> <p>마.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입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p> <p>바.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규정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p> <p>사.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7. 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휴대수출 또는 대외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 제6호의 대외지급 수단매매신고필증을 징구하여야 함</p> <p>8. 법원의 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구체적으로 공인된 중재원의 판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벌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해약금, 경락배당금, 관세법에 따라 외국의 화주에게 지급하는 공매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 등을 확인함</p> <p>9. 비거주자(재외동포 제외)가 규정 제7-45조제1항제23호에 의하여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을 받은 경우 대외지급이 가능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2.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1. 영수관련 증빙서류 (외화매입증명서등) 2. 지출관련 증빙서류	1. 설립자금의 반환은 당초 영수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관련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함 ☞ 동 지급은 지출비용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2. 반환기일 : 설립완료 후 1년 이내 까지 3.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예시 ① 부동산임대차보증금 ② 자본재(동산, 집기류) 구입비용 ③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④ 기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창업관련 비용 등 (설립관련 등기비용, 공증료, 검사인 및 감정인 보수, 기타 설립 준비기간 중에 사업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 동 자금의 영수시 해당 신고필증 또는 설치계획서 등을 징구하여 관련내용을 확인함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6. 수입대금 지급 (규정 제4-2조, 제2-1조의2)</p>	<p>1. 거주자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p>2. 거주자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p> <p>2. 지급등의 증빙서류 (계약서, 송장, offersheet, purchase order, 대금청구서 등)</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p> <p>2. 수입 관련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B/L 등)</p>	<p>1. 제1절 통칙 참조</p> <p>2.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가목 내지 바목의 항목을 확인하여야 함. 가. 거래 상대방 나. 거래금액 다. 거래품목 라. 대금결제방식 마. 무역거래형태 바. 대응수입예정일(선적서류 또는 물품수령 예정일)</p> <p>3. 상기“2”에도 불구하고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대금결제방식’, ‘무역거래형태’와 ‘대응수입예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입업자가 작성한 지급신청서 별지(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를 통해 동 항목을 확인할 수 있음</p> <p>4. 외국환은행은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급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료 예시 : 선적서류, 통관서류, 거래당사자간 e-mail, 수출 관련 서류(중계무역), 창고보관증(외국인수수입), 매출액 정보 등</p> <p>5.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5장(지급등의 방법) 제1절 통칙 제2호를 참조할 것</p> <p>1. 제1절 통칙 참조</p>

<p>&lt;별표 1&gt; 용역대가지급 항목</p> <p>1.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 또는 그에 직접 수반되는 용역대가 지급(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기술습득, 기술자초빙 및 파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에 관한 지급)</p> <p>2.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lt;별표 4&gt;에서 정한 운항경비의 지급</p> <p>① 외항운송업자</p> <p>② 외항선박이나 항공기의 임차계약에 관한 신고등을 받은 자</p> <p>③ 원양어업자</p> <p>3. 원양어업자의 &lt;별표 5&gt;에서 정한 어로경비의 지급</p> <p>4.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거주자가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제비용 지급</p> <p>가. 외국보험사업자와 생명보험계약·수출적화보험계약·수입적화보험계약·항공보험계약·여행보험계약·선박보험계약·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 관련 서류</p> <p>① 계약서 등 보험계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p> <p>나. “가” 이외의 경우로서 국내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3개 이상의 보험사업자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 관련 서류</p> <p>① 당해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국내 3개 이상의 보험사업자의 보험인수 거절을 입증하는 서류</p>	<p>다.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 관련 서류</p> <p>① 보험종목이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확인서(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가 발행한 확인서)</p> <p>라.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p> <p>* 관련 서류</p> <p>① 계약서 등 보험계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p> <p>② 해외체재 및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서류(VISA 사본 또는 해외공관장의 확인서 등)</p> <p>③ 여권 사본</p> <p>마.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재보험금, 보험료, 기타 보험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지급</p> <p>* 관련 서류</p> <p>① 보험료 및 기타 부대비용 지급시 : 지급금액이 명시된 청구서</p> <p>② 보험금 또는 재보험금 지급시</p> <p>- 지급금액이 명시된 원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회사로부터의 송금요청서</p> <p>- 보험사고 발생사실 입증서류</p> <p>바. 거주자가 수출한 물품의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외국의 보험사 대리인을 통하여 가입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생산물책임보험료 지급</p> <p>* 관련 서류</p> <p>① 부보대상품목 및 지역에 대한 부보대상기간 전 1년간의 수출실적, 부보대상기간의 수출계획서</p> <p>② 국내 3개 이상 손해보험사의 당해 보험인수거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	---

<p>사. 선주의 상호보험료 지급</p> <p>* 관련 서류</p> <p>① 상호보험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아. “가” 내지 “사” 이외에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의 지급</p> <p>* 관련 서류</p> <p>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p> <p>5. 상업서류 송달업체의 거주자로부터 영수한 송달료(수수료 공제)의 외국송달업체에 대한 지급</p> <p>6. 거주자 또는 국민인비거주자의 의료비 지급(다만, 해외여행중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본 항목을 적용하지 않음)</p> <p>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세청장(세무서장)이 인정한 과세 조정금액의 지급</p> <p>8. 물품의 수출·수입에 직접 수반하는 다음 각 목 1에 해당되는 각종 수수료의 지급(다만,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p> <p>가. 화물운임, 채선료, 조출료, 보험료</p> <p>나. 국내기업의 해외사무소(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급의 경우를 제외한 대리점 수수료, 중개수수료, 대행지급금(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가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다. 위약금, 해약금, 손해배상금, 보상금</p> <p>라. 공동해손의 공탁금이나 분담금</p>	<p>마. 수출대금 초과영수금(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반환을 포함한다.) 및 수출품 반송에 따른 반환금</p> <p>바. 연지급수입, 분할지급수입, 수출선수금의 이자</p> <p>사. 항만봉사료, 검사료, 통신비</p> <p>아. 수출물품의 해외현지 하역비, 통관비, 창고료, 운반비, 기타 부대비용이나 우발적 비용</p> <p>자. 국내거주자의 수출물품의 해외에서의 위탁가공업</p> <p>차. 기타 물품의 수출·수입에 직접 수반하는 경비</p> <p>9. 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각종 중개, 위탁, 대리, 알선, 대행, 보조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p> <p>10.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관련 용역대가 지급</p> <p>11. 연구 및 개발관련 용역대가 지급</p> <p>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관련 용역대가 지급</p> <p>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무 또는 회계 관련 용역대가 지급</p> <p>나. 시장조사관련 용역(상품의 판매촉진과 신제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잠재력, 생산품의 인지도와 친숙도, 소비자 등의 구매습관 등을 조사하는 용역활동을 말한다.)대가 지급</p> <p>다. 중재 및 공공관계 용역(고객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이미지구축, 여론형성 및 노사 간 또는 사업체 간의 중재, 조정과 관련된 용역활동을 말한다.)대가 지급</p> <p>라. 경영상담(컨설팅) 용역대가 지급</p> <p>13. 광고대행, 광고물기획·작성·제작, 기타 광고물 게시·배포·배치 등 광고관련 용역대가 지급</p>
---	--

<p>14. 폐기물 수집·처리 등 위생 및 환경관련 용역대가 지급</p> <p>15. 대리점계약체결 관련 용역대가 지급</p> <p>16. 신용조사업 관련 용역대가 지급</p> <p>17.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관련 용역대가 지급</p> <p>18.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의 전송 및 중계관련 용역대가 지급</p> <p>19. 연예인 대리업 관련 용역대가 지급</p> <p>20. 상품전시회 및 행사대행업 관련 용역대가 지급</p> <p>21. 여론조사 관련 용역대가 지급</p> <p>22. 기술관련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 물품, 의약품, 시료, 식품 등의 시험, 검사, 평가, 분석 등과 관련한 수수료와 이에 부대하는 비용의 지급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의 외국에서의 검사, 평가, 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부대 비용  나. 외국검증기관 또는 규격협회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지급하는 검사료 또는 수수료 및 이에 수반하는 직접비용의 지급  다. 국내의 거주자가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와 그 부대비용  라. 국내의 거주자가 의약품, 시료, 식품 등의 검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와 그 부대비용  마. 상기 “가”목 내지 “라”목을 제외한 검사, 평가, 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부대비용</p> <p>23. 국내거주자가 제공받는 외국영화 상영권 대가(텔레비전 방영권 대가 및 주사선방식 변환비용 등 제 비용 포함)의 지급</p>	<p>24.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이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신료, 뉴스, 기타 자료에 대한 대가의 지급</p> <p>25. 외국의 정보제공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관련 용역대가의 지급</p> <p>26. 국제통신전용회선, 전자사서함 등 제반통신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대가 지급</p> <p>27. 해저 광케이블 등 국제통신회선의 설치와 관련한 용역대가 지급</p> <p>28. 온라인 정보 검색 및 자료 처리, 데이터 단순전송 등 부가통신관련 용역대가 지급</p> <p>29. 영화제작, 배급, 상영, 기타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대가 지급</p> <p>30.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타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대가 지급</p> <p>31. 연극, 음악, 기타 예술공연, 흥행, 오락, 체육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대가 지급</p> <p>32. 음반, 테이프 및 기타 기록매체 제작, 녹음, 기타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대가 지급</p> <p>33. 산업설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반기계, 소비용품 등의 모든 수선, 유지, 조립, 설치, 가공, 완성,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대가 지급</p> <p>34.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대가 지급</p> <p>35. 거주자의 해외발주 금형제조에 따른 대가 지급</p> <p>36. 기타</p>
---	--

<p>&lt;별표 2&gt; 비거주자원화계정의 예금종류 및 지급가능 이자소득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금종류 :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포함), 기업자유예금</li> <li>2. 지급가능 이자소득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당좌·보통예금에서 발생한 이자</li> <li>나. 정기예금(재신규분 포함)에서 발생한 이자</li> <li>다. 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포함)·기업자유예금 : 입·출금 횟수에 관계없이 신규개설일부터 발생한 이자</li> </ol> </li> <li>3. 지급시기 : 제한 없음</li> <li>4. 추가징구서류 : 계좌번호 및 이자부분이 명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입증서류</li> </ol> <p>&lt;별표 3&gt;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예치·처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금종류 : 비거주자원화예금과 동일함.</li> <li>2. 정기예금 가입 후 만기(중도해지 포함)시 원리금의 대외송금이 가능함</li> </ol> <p>※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의 예치·처분의 경우에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처분을 준용함</p>	<p>&lt;별표 4&gt; 운항경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항공회사 또는 인정된 임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항목의 경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공기 및 그 지원정비에 대한 연료비, 운할유비, 잡유비 및 그 부대비용</li> <li>2) 통행세, 관세, 통관수수료, 제세공과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항제경비</li> <li>3) 기내식비, 기내서비스용품 및 기내용품대</li> <li>4) 항공사고의 구난에 직접 필요한 제경비</li> <li>5) 항공기 및 항공기 지원장비의 정비비(당해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비 포함) 및 그 부대비용</li> <li>6) 승무원의 여비, 교통비, 의료비 및 송환비</li> <li>7) 화객비 및 운임</li> <li>8) 항공기운항지원에 필요한 통신비, 통신설비임차료 및 그 보증금</li> <li>9) 외국인승무원 및 항공기 취항 공항 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의 급여</li> <li>10) 대리점 수수료</li> <li>11) 국제공항운송협회 등 국제협약에 따른 회비 분담금</li> <li>12)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직접 필요한 정상적인 제경비</li> </ol> </li> <li>2. 외항운송업자 또는 인정된 임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원양어업자의 냉동운반선의 외국항로에 필요한 다음 항목의 경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료비, 운할유대금 및 그 부대비용</li> <li>2) 항만시설사용료, 등대사용료, 제세공과금 기타 이에 준하는 항만 제경비</li> <li>3) 선용품대금, 식료품 및 음료수대금과 항해 중의 선용품</li> <li>4) 해난에 관한 제경비</li> </ol> </li> </ol>
--	---

<p>5) 선박수리비          6) 선원의 여비, 상륙비, 의료비 및 송환비          7) 화물취급수수료 및 그 부대비용          8) 환적비용          9) 선박, 선적 및 운임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규약비 및 그 부대비용          10) 운하통과료          11) 부정기선의 화물중개수수료          12) 대리점수수료 및 대리점입체수수료          13) 조출료·반송운임 및 그 부대비용          14) 컨테이너 밴(Container Van) 및 샷시의 임차료          15) 타임차터(Time Charter)의 경우 미화 2,000불 이하의 선원독려비          16) 외국인 선원 및 선박기항 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의 급료          17) 기타 선박운항에 직접 수반하는 정상적인 비용</p> <p>&lt;별표 5&gt; 어로경비</p> <p>1) 연료비, 윤활유대금 및 그 부대비용          2) 톤세, 등대사용료, 기타 공과금, 운하통과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항만 제경비          3) 선용품대금, 식료품 및 음료수대금과 항해 중의 선용비          4) 해난에 관한 제경비          5) 선박수리비, 검사료와 그 부대비용          6) 선원의 여비, 상륙비, 의료비 및 송환비          7) 조업허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과금          8) 매입물품의 통관료, 운반비용 및 그 부대비용          9) 소금, 얼음, 냉동용품 및 사료와 그 운반 및 보관비용          10) 어구·선구의 구입비, 임차료 또는 보수비용과 그 운반 및 보관비용</p>	<p>11) 어획물의 보관비용, 검사료, 하역비용, 세관비용, 판매수수료 등 기타 부대수수료와 그 운반 및 포장비용          12) 대리점수수료 및 대리점입체수수료          13) 운항 및 조업에 따른 벌과금과 그 부대비용          14) 어획물보험료와 그 부대비용          15) 통신비          16) 기타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확인하는 비용</p>
--	---

## 제 4 장 해외여행경비 등의 지급

제 1 절 통 칙

제 2 절 해외여행경비 지급

제 3 절 여행업자등의 단체해외여행(연수)경비 및 법인명의로의 일반해외여행경비 지급

제 4 절 해외이주비의 지급

제 5 절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p><b>【 공통제출서류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  <small>☞</small>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작성불요</li> <li>2. 해외체재자의 경우 : 소속 법인(단체)의 장의 출장·파견증명서</li> <li>3. 해외유학생의 경우 : 당해 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등</li> <li>4. 기술훈련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 : 훈련출장명령서 또는 국외 훈련기관의 훈련초청서 등 여행목적을 입증하는 서류</li> <li>5. 문화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관련 단체의 장, 학교장 또는 소속 종단 등의 해외 여행확인서(지침서식 제4-1호)</li> <li>6. 국외연수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 : 소속단체의 장 또는 국외 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를 입증하는 서류</li> </ol>	<p><b>【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여행자의 거주성구분은 법 제3조제1항제14호, 제15호 및 영 제10조에 의함</li> <li>2. 해외여행자는 규정 제1-2조제40호에 의거 일반해외여행자와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으로 구분하며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해외여행자 :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해외여행자</li> <li>※ 해외체재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체재하는 자로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상용, 문화, 공무 및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li> <li>나. 6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li> <li>다.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li> </ul> </li> <li>※ 해외유학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 또는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인 경우</li> <li>② “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학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li> </ul> </li> </ul> </li> </ol>
--	--

<p>3. 이 장에서 “북한지역 관광객”이라 함은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북한지역 관광사업자”라 함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관련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여행자”라 함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p> <p>4. 외국인거주자에게 실수요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이 장 제2절항목1.가목 참조)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경우 여권상에 기재된 해외여행경비의 환전기록 중 당해 여행자의 최근일자 입국일(신규발급일 경우 발급일) 이후 해외여행경비의 환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외여행경비로 사용될 외국환을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해외여행자의 여권에 매각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단, 1백만원 상당 이하 외국통화를 매각한 경우에는 제외</p> <p>5.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제4호와 관련하여 외국인거주자가 실수요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환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2-3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p> <p>6. 해외여행경비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p> <p>가. 해외여행경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제14호에 의하여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 관광객 및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여행자는 미화 2천불 이내의 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음</p> <p>나. 해외여행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함된 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또는 여행자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현지에서 외국통화 인출을 포함)할 수 있음</p>	<p>다.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규정 제4-4조제2항의 금액범위 이내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규정 제4-4조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p> <p>7.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의 동반가족(동반자녀 포함)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 대상자가 아님</p> <p>8.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 포함)의 해외이주비 지급을 위하여 1개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개별이주를 제외하고 해외이주자의 세대원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 대상자가 아님</p> <p>9.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신청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신청시 여권사본이 기 제출되어 보관 중인 경우에는 재징구를 면제할 수 있음</p> <p>10. 제출서류중 지급신청서 이외의 기타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함. 다만, 제2절(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제4절(해외이주비의 지급) 및 제5절(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음</p> <p>11. 이 장에서 “기술훈련”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기술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산업체 등에서 받는 기술훈련을 말함</p>
--	---

<p>12. 이 장에서 “국외연수”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기술을 연구·연수(기술관련 정규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연수를 말함)하는 것을 말하며 초청 연수를 포함함</p> <p>13. 이 장에서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업체를 말함</p> <p>14.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자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출국당 기준임)</p> <p>가. 해외여행경비의 지급</p> <p>(1) 일반해외여행자</p> <p>(가) 국민인 거주자인 일반해외여행자 :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규정 서식 제6-1호)</p> <p>※ 외국환은행의 장에 의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급대상이 아님</p> <p>(나) 외국인거주자인 일반해외여행자 : 외국인거주자는 실수요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 매매를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여야 하며(규정서식 제7-4호), 당해 매각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외국환신고(확인)필증(규정 서식 제6-1호)을 발행·교부하여야 함(1만불이하 지급의 경우에는 제외)</p> <p>(다) 일반해외여행자(외국인 거주자 제외)에게 실수요증빙서류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매각에 대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규정서식 제6-1호)을 발행·교부하여야 함. 다만, 이 장 제2절 항목1. 나목의 내용1.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경비지급 확인서”에 의하여 휴대수출이 가능함</p>	<p>(2)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 포함)</p> <p>(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거래자가 휴대수출할 대외지급 수단의 보유(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규정서식 제6-1호)을 발행·교부함</p> <p>(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다만,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함)</p> <p>나. 해외이주비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을 위한 지급</p> <p>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해당 대외지급수단의 보유(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규정서식 제6-1호)을 발행·교부함</p> <p>15. 국외연수(6개월 미만)와 해외유학(6개월 이상)은 기간개념으로 구분함</p> <p>16.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의 해외지사 또는 국내항공회사 및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해외체재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는 규정 제7-11조 또는 제9-21조에 의한 현지보유외화자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p> <p>17.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국외에서 국내로 추심함에 따른 결제 및 지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다만, 추심의뢰인당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연간 1천만원 이내로 동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국내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	---

제 2 절 해외여행경비 지급

< 제4장 제2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일반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경비 (규정 제45조 제1항)</p> <p>가. 실수요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휴대수출 가능,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송금 불가)</p> <p>나. 실수요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휴대수출 및 송금 가능)</p>	<p>금액제한 없음. 다만, 외국인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미화 1만불 이내</p> <p>1. 다음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p> <p>가. 정부, 지방자치단체</p> <p>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p> <p>다. 한국은행, 외국환은행</p> <p>라.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언론기관(국내신문사, 통신사, 방송국에 한함)·대한체육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p>	<p>1. 여권(외국인거주자에 한함)</p> <p>2.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규정서식 제7-4호)</p> <p>1. 제1절 공통제출서류</p> <p>2. 당해기관의 경비지급확인서</p>	<p>1.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만을 휴대수출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에 매각사실을 표시 (단, 1백만원상당 이하 외국통화를 매각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대수출 또는 해외송금할 수 있음</p> <p>3. 외국인거주자에게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 “2”를 징구하여야 함</p> <p>1.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당해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 이내인지의 여부</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수출, 해외건설 등 외화 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p> <p>3. 기술훈련생·연수생 등이 외국의 학교 또는 수탁교육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 등 교육관련 경비</p> <p>4. 외국에서의 치료비</p>	<p>1. 제1절 공통제출서류</p> <p>2.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의 추천서(추천 금액 표시요)</p> <p>1. 제1절 공통 제출서류</p> <p>2. 수탁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등 해외여행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3.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기간 및 등록금실비에 관한 서류 또는 경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1. 제1절 공통제출서류</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추천서(금액표시요), 외국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질병진단서(금액표시요) 또는 치료비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p>	<p>1.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는 주무부장관이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지도·감독기관인 하부기관에 동 추천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기관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음</p> <p>1.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1.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해외체제자(해외유학생 포함)의 해외여행경비(규정 제4-5조 제2항)</p>	<p>5. 외국에 소재한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지급</p> <p>해외체제자(해외유학생 포함)가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금액제한 없음)</p>	<p>나. 치료비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의료기관의 장, 외국 행정관서의 장 또는 현지공관장등의 전문 (긴급을 요하는 치료비 지급의 경우)</p> <p>1. 제1절 공통제출서류</p> <p>2. 외국의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가 발행한 해외여행경비임을 입증하는 서류</p> <p>1. 제1절 공통제출서류</p> <p>2. 해외체제자(유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북한지역 해외체제자 : 통일부장관 발행 ‘방문증명서’(사본)</p> <p>3. 주민등록등본 등(부 또는 모가 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4.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3. 해외유학생은 공통제출서류 제3호에서 정한 유학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도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록금 관련 서류 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p>4. 해외체제자 및 해외유학생의 연간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송금액과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행금액의 합계)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 ※ 국세청장 통보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여행자카드를 통하여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외국통화로 인출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임</p>

< 제4장 제2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5.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해외유학생 지정이 가능함  6. 제출서류 “3” 및 “4”는 상기 “5”에 한하여 최초 지정등록시 징구함

**제 3 절 여행업자들의 단체해외여행(연수)경비 및 법인명의로 일반해외여행경비 지급**

< 제4장 제3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1. 여행업자들의 단체 해외여행경비  가. 여행업자를 통한 단체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 경비 지급 (규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	여행업자가 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단체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국의 숙박업자나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해외여행경비	1.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  2. 사업자등록증  3.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여행업자가 확인한 단체 해외여행자 명단 및 단체 해외여행 필요 외화소요 경비확인서 등)  4. 여권(외국인거주자에 한함)	1. 여행업자를 통한 단체해외여행경비의 지급은 1인의 해외여행경비도 가능함  2. 여행업자는 단체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의 숙박업자나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지급할 수 있음  3. 여행업자가 단체해외여행경비를 환전하는 경우 환전금액은 단체 해외여행자별 필요외화소요경비 범위 내이어야 하며 외국인거주자에 한하여 해당 해외여행자별 여권에 환전한 사실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함 ☞ 외국인거주자의 외국통화 환전신청금액이 1백만원상당 이하인 경우 여권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3”의 서류에는 단체해외여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명시되어야 함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나. 교육기관 등을 통한 단체해외연수경비 지급 (규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p>	<p>교육기관 등이 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단체해외연수를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게 지급하는 해외여행경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li> <li>2. 사업자등록증</li> <li>3.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교육기관 등이 확인한 단체 해외연수자 명단 및 단체 해외연수 필요 외화 소요 경비확인서 등)</li> <li>4. 여권(외국인거주자에 한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기관등을 통한 단체해외연수를 위한 지급인지의 여부</li> <li>2. 교육기관 등은 단체해외연수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게 지급하거나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지급할 수 있음</li> <li>3. 교육기관 등이 단체해외연수경비를 환전하는 경우 환전금액은 단체해외연수자별 필요외화소요경비 범위 내이어야 하며 외국인 거주자에 한하여 해당 해외연수자별 여권에 환전한 사실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함                      ☞ 외국인거주자의 외국통화 환전신청금액이 1백만원 상당 이하인 경우 여권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li> <li>4. 제출서류 “3”의 서류에는 단체해외연수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명시되어야 함</li> <li>5. 교육기관등이라 함은 학교, 학원, 유학알선업체등 기타 교육관련 기관을 말함</li> </ol>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다. 북한지역 관광 객이 북한지역 관광사업자를 통하여 북한에 지급하는 기타 경비(재경부 고시 외관 41271-270, '98.11.12)</p>	<p>북한지역 관광사업자가 북한지역 관광객 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에 지급 하는 경우</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p> <p>2.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지역 관광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p> <p>3. 북한지역 관광자별 필요 소요 경비확인서</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 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음</p>
<p>2. 법인명의로 일반 해외여행경비 (규정 제4-5조제 7항 및 제5-11조 제1항제11호)</p>	<p>법인소속 해외여행자를 위한 법인명의로 일반해외여행경비 지급</p>	<p>1. 당해 법인이 확인한 해외 여행자 명단</p> <p>2. 여권(외국인거주자에 한함)</p> <p>3. 외국의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가 발행한 해외여행 경비임을 입증하는 서류</p>	<p>1. 법인명의로 환전한 일반해외여행경비는 당해 법인 소속의 일반 해외여행자가 휴대수출하여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지급할 수 있음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p> <p>2. 제출서류 “3”을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명의로 송금할 수 있음</p> <p>3. 외국인거주자에 한하여 해당 해외여행자별 여권에 환전한 사실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함(단, 1백만원상당 이하 외국통화를 매각한 경우는 제외)</p> <p>4. 본 항목에 의거 일반해외여행경비를 매각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하지 아니함</p>

제 4 절 해외이주비의 지급

< 제4장 제4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 포함)의 해외이주비 (규정 제4-6조)</p>	<p>1.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자에 대한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p> <p>2. 여권 또는 여권사본 (인적사항 부분)</p> <p>3. VISA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p> <p>4. 해외이주신고확인서(금융기관 제출용) : 국내로부터 이주 또는 현지 이주하는 경우</p> <p>5.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 확인서 (내용 “2”에 의한 이주 예정자의 해외이주비를 포함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원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주자 중 1인의 여권번호로 등록할 것</p> <p>2. 현지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해외이주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VISA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VISA사본을 사후 보완할 수 있음</p> <p>3. 전가족 이주로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에 명단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해외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음</p> <p>4. 해외이주비는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휴대 반출할 수 있음</p> <p>5. 해외이주자(현지이주 등 포함)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로 인정받은 날(확인 및 유의사항 제6호 참조)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함. 단,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 절차 지연 상황 소명 시 3년 이내에서 대외송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이며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상 출입국사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6. 해외이주자로 “인정받은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함</p> <p>가.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p> <p>나. 해외이주예정자 :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한 날</p> <p>7.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시 제출서류 “4” 원본을 징구함</p> <p>8. 내용 “2”에 의한 해외이주비를 포함하여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신청의 합계액(분할지급신청하는 경우 포함)이 미화 10만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p> <p>9. 해외이주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p> <p>10. 해외이주비의 지급은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해외이주예정자가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p> <p>※ “영주권등”이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말함(규정 제1-2조제15-1호)</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p> <p>2. 여권 또는 여권사본 (인적사항 부분)</p> <p>3.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등의 취득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이주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4. 해외이주예정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 확인서(내용 “1”에 의한 해외이주비를 포함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p> <p>5. 주민등록등본</p>	<p>1. 자행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해외이주예정자에 대한 사후 관리 :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후 1년 이내에 당해 국가에서 발급된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또는 은퇴비자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동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다만, 영주권 등을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외이주예정자는 매년 영주권 등 취득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3. 해외이주비는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휴대 반출할 수 있음</p> <p>4. 내용 “1”에 의한 해외이주비를 포함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신청의 합계액(분할지급신청하는 경우 포함)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p> <p>5. 해외이주예정자가 상기 “2”에 의한 사후관리서류를 기일 내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이주예정자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해외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음</p> <p>6.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p>

제 5 절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 제4장 제5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해외이주자 중 외국 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의 국내재산 반출 (규정 제47조)</p>	<p>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 및 본인 명의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권 (또는 그 사본)</li> <li>2.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li> <li>3.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발행)</li> <li>4.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을 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li> <li>5.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부동산 이외의 본인명의 국내재산 지급의 경우)</li> <li>6. 제3장 제2절 항목 3 내용 1의 제출서류 “3,4,5”(규정 제47조 제2항제2호 단서의 경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li> <li>2.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li> <li>나. 부동산 처분대금 이외의 국내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li> <li>②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li> <li>③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li> <li>④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은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등</li> </ul> </li> </ul> </li> <li>3.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는 당해 취득국가 (한국대사관, 영사관 포함) 관공서에서 확인한 국적취득확인서, 국적 취득국에서 발행한 여권(출생지는 대한민국) 또는 가족관계등록 폐쇄로 인한 폐쇄등록부 등으로 가능함</li> <li>4.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대한민국 관공서가 발행한 영주권취득확인서 등에 의하거나, 영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VISA사본, 영주권사본 등으로 가능함</li> </ol>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5. 본 항목에 의한 반출대상 재산중 부동산처분대금은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본인명의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매각(해외이주 전에 매각한 경우 포함)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되 반출금액은 당초 부동산매각대금에 한함</p> <p>6. 이 절에 의한 신청을 한 자는 신청금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담보활용이 가능함</p> <p>7. 재외동포의 국내재산은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휴대반출할 수 있음</p> <p>8. 재외동포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반출로서 부동산 취득시점이 외국국적 취득시점 이후인 경우에는 제9장 제5절의 지침에 따른 신고등의 절차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small>다만, 규정 제9-4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매각대금 지급은 본절의 지침을 적용함</small></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9. 부동산 이외의 본인 명의 국내 재산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체 지급누계금액(2006년 1월이후 지급부터 적용)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p> <p>☞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재원이 부동산매각대금인 경우에는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다만, 원리금의 재원이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 매각대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10. 제출서류 ‘6’은 확인 및 유의사항 "9"에도 불구하고 반출월로부터 과거 3월간 취득한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른 국내 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 대하여는 제출서류 “6”을 자금출처확인서 제출에 갈음함</p> <p>☞ 취득후 3월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국내보수 등은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대상임</p>

## 제 5 장 지급 등의 방법

제 1 절 통 칙

제 2 절 상계신고(보고)

제 3 절 상호계산

제 4 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



<p><b>【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b></p> <p>1.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규정 제5장제2절)</p> <p>가. 상계에 대한 신고 또는 사후보고는 규정 제5-4조제1항(신고예외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나. 상호계산 신고시 제출받은 서류는 은행에서 보관함</p> <p>다.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거 상호계산 계정의 대차기 잔액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결산보고서(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 잔액이 건별로 명시되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p> <p>2. 대응수출입 이행의무 등 (규정 제5-8조 및 제5-9조)</p> <p>가. 수출입대금을 영수(지급)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수출입을 이행하거나 동 대금을 반환하여야(받아야) 함(대응수출입 이행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p> <p>①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영수한 경우</p> <p>②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에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p>	<p>나. 대응수출입 이행(예정)기간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하여 1년을 초과(연장할 경우 포함)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본지사간 3년 초과 D/A수출, 외상수출채권매입(O/A) 및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은행 신고대상임), 규정 제5-8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중 불가피한 사유(원료수급 차질 발생 또는 노사분규 등)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p> <p>다. 대응수출입 이행비율이 90%(FOB기준) 이상인 때에는 전액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p> <p>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규정 제5-11조)</p> <p>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외국환신고(확인)필증(규정서식 제6-1호)을 발행·교부하는 경우</p> <p>① 제3장제2절 항목 “5”의 확인 및 유의사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교부함</p> <p>② 제4장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교부함</p> <p>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분실하여 그 사실을 신고해왔을 경우 당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이를 재발급할 수 있으며, 재발급시에는 그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우측상단 여백에 “재발급”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p> <p>다.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사항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함</p>
--	---

제 2 절 상계신고(보고)

< 제5장 제2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상계신고(보고) (규정 제5-4조제2항)</p> <p>[신 고 계 산</p>	<p>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p>	<p>1.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보고서 (규정서식 제5-1호)</p> <p>2. 상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서 또는 상계통지서(채권 및 채무의 금액이 각각 표시 되어야 함)</p> <p>3. 상계대상 채권·채무 입증서류 (해당거래별 계약서 등)</p>	<p>1. 상계대상 채권·채무가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등의 대상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p> <p>2. 본 항목에 의한 상계의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신고 또는 사후보고사실을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상계의 신고 또는 사후보고는 지급 또는 영수를 한 외국환은행 앞으로 하여야 한다.</p> <p>3. 상계를 통한 차액의 지급 및 영수시에는 해당 신고/보고서에 금액, 일자, 취급외국환은행을 표기하여야 함</p> <p>4. 상계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상계대상 채권·채무 입증서류(해당 거래별 계약서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p> <p>5. 무역관련 상계의 경우 제출서류 “3”은 원계약서를 제외한 클레임 관련 서류 제출시 거래당사자간 fax, e-mail을 통해 교환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p> <p>※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은행 신고대상</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신고(보고)내용의 변경</p> <p>[신 고 계 산]</p>		<p>1.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보고서 (규정서식 제5-1호)</p> <p>2. 변경사실 입증서류</p> <p>3. 당초 신고/보고서 사본</p>	<p>1. 상계에 대한 신고 또는 사후보고내용의 변경은 해당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하여야 함</p> <p>2. 변경신고 내용을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p>

제 3 절 상호계산

< 제5장 제3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1. 상호계산 신고 (규정 제5-5조)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동 계정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1. 상호계산신고서 (규정서식 제5-2호)  2.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3. 상호계산계정폐쇄신고서 (지침서식 제5-2호)	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신고사실을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상호계산계정잔액의 처분 (규정 제5-7조)	상호계산계정의 결산대기잔액의 송금	1. 상호계산계정결산대(차)기잔액 처분(변경)신고서(지침서식 제5-1호)	1.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  2.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결산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산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3. 지급시기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  4. 계정잔액의 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앞 통보함  5.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 그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기타의 경우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확정 후 30일 이내에 상호계산계정에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제 4 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

< 제5장 제4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1. 제3자지급등 신고 등(규정 제5-10 조제2항)  [ 신 고 ] 3 자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1.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보고서 (규정서식 제5-1호) 2.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3. 제3자지급등을 입증하는 서류(당사자간 합의서 등)	1. 제출서류 “2”에 제3자지급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 “3”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3”은 e-mail 또는 fax 형태의 것도 가능함 3. 거주자와 다국적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초 신고 기관에 사후보고 할 수 있음 4.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 지급(규정 제 5-10조제1항 제1호)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	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	1. 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3.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규정 제5-10 조제1항 제7호)	인정된 거래에 따라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비거주자 간의 외화채권의 매매·양도 및 상속·유증 등 이전을 포함함)	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 2. 채권의 매매·양도계약서 3. 채무자에 대한 통지서	
4.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의 지급(규정 제 5-10조제1항제 14호)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 2. 수입대행업체와 수출자 간의 수입 계약서 3. 수입대행업체와 수입위탁업체 간의 수입대행계약서	

<p>5.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지급(규정 제5-10조제1항 제15호)</p>	<p>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li> <li>2. 국내 구매대행업체와 수출자 간의 대행계약서</li> <li>3. 인터넷으로 물품수입을 한 거주자의 수입대금 입금 내역</li> <li>4. 국내 구매대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서류 “3”호에는 물품수입을 한 수입자(거주자)명, 수입물품명, 수입금액이 명시되어야 함</li> <li>2. 구매대행업체가 단순 결제대행업체 이거나 수출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적용할 수 없음</li> </ol>
<p>6. 비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국내구매대행업체의 지급(규정 제5-10조제1항 제16호)</p>	<p>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li> <li>2. 국내 구매대행업체와 판매자 간의 대행계약서</li> <li>3. 판매대금 거래 및 입금 내역</li> <li>4. 국내 구매대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서류 “3”호에는 구매를 한 구매자명(비거주자), 판매물품명, 판매금액이 명시되어야 함</li> </ol>

## 제 6 장 지급수단의 수출입

### 제 1 절 지급수단의 취득 확인



제 1 절 지급수단의 취득 확인

< 제6장 제1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비거주자의 대외 지급수단 취득 확인 (규정 제6-2조제3항제1호)</p>	<p>1.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 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은 제외)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함                      가. 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영수한 경우                      나. 규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p> <p>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 또는 자유업영위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취득하는 경우</p>	<p>1. 취득경위 입증서류(외국환신고(확인)필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수증, 계산서 등)</p> <p>1. 취득경위 입증서류(제3장 제2절 항목 “3”의 제출서류 참조)</p>	<p>1.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통하여 내용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규정서식 제6-1호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당해 비거주자에게 발행·교부하여야 함</p> <p>2. 비거주자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분실하여 그 사실을 신고해왔을 경우 당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교부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이를 재발급할 수 있으며, 재발급시는 그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우측상단 여백에 “재발급”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p> <p>3.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에 신고하여야 함</p> <p>4. 취득경위입증서류 중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수증, 계산서의 경우는 송금을 영수한 경우에 한함</p> <p>1. 상기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제3장제2절 항목 “3”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3. 동 사실을 확인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금액에 불구하고 규정서식 제6-1호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당해 비거주자에게 발행·교부하여야 함</p> <p>※ 규정 제6장(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서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내국지급수단의 환산율은 거래 또는 행위 발생 시점의 매매기준율로 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외국인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 취득 확인(규정 제6-2조 제3항제2호)</p>	<p>1. 외국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은 제외)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가. 항목 “1”의 내용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나. 일반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p> <p>2.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 또는 자유업영위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취득하는 경우</p>	<p>1. 취득경위 입증서류(외국환 신고(확인)필증, 외국환매입 증명서, 영수증, 계산서 등)</p> <p>2. 내용 나목의 경우에는 제4장 제2절 항목 “1”의 제출서류를 참조</p> <p>1. 취득경위 입증서류(제3장 제2절항목 “3”의 제출서류 참조)</p>	<p>1. 항목 “1”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내용 나목의 경우에는 제4장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제14호가목 (1)의 (나) 참조</p> <p>1. 항목 “1”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제3장제2절항목 “3”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3. 동 사실을 확인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금액에 불구하고 규정서식 제6-1호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당해 외국인거주자에게 발행·교부하여야 함</p> <p>※ 규정 제6장(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서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내국지급수단의 환산율은 거래 또는 행위 발생시점의 매매 기준율로 함</p>

<p>&lt; 별표 1 &gt;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주요 발급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인 거주자와 재외동포(미화 1만불 초과시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유학경비</li> <li>(2) 해외체재비</li> <li>(3)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및 해외이주비</li> <li>(4) 여행업자의 단체해외여행경비, 교육기관등의 단체해외연수경비</li> </ol> </li> <li>2. 외국인, 비거주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 급여소득(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발급)</li> <li>(2) 대외계정에서의 인출(미화 1만불 초과)</li> <li>(3)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에 의한 환전(금액에 관계없이 발급)</li> <li>(4) 재환전(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미화 1만불 초과하는 금액)</li> </ol> </li> <li>3. 기타(금액에 관계없이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수요증빙 서류가 있는 여행경비(치료비, 교육관련경비, 주무부장관·한국 무역협회장 추천 금액)</li> <li>(2)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 제작 관련 경비</li> <li>(3)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국제학술대회 등과 관련한 상금</li> <li>(4)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운항경비</li> <li>(5) 원양어업자가 상대국 감독관 등에게 지급할 경비</li> <li>(6)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수출입승인 면제품)에 대한 검사·수리비</li> <li>(7) 해운대리점·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해상 운항경비</li> </ol> </li> </ol>	
---	--

## 제 7 장 자본거래

- 제 1 절 통 칙
- 제 2 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과의 예금거래
- 제 3 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과의 신탁거래
- 제 4 절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외화예금 및 신탁거래
- 제 5 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제 6 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제 7 절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시설물 이용에 관한 권리(회원권 등) 취득
- 제 8 절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
- 제 9 절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
- 제 10 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 제 11 절 현지금융

<p><b>【 적용범위 】</b></p> <p>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등에 관하여는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p> <p><b>【 자본거래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b></p> <p>1.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사전에 신고 또는 거래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고하여야 함. 사후보고가 가능한 거래 유형은 아래와 같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사후보고 대상 자본거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의 미화 5천만불 이하 외화자금 차입(증권발행 포함) (제7-14조제1항, 제7-22조)</li> <li>- 현지금융(제7-14조제1항, 제7-14조제5항, 제7-14조의2, 제7-18조제1항제4호, 제7-18조제1항제5호)</li> <li>- 현지법인에 대한 1년 미만의 금전대여(제7-16조)</li> <li>-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제7-18조제2항, 제7-18조제3항)</li> <li>-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시설물 이용에 관한 권리 취득(제7-21조)</li> <li>-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임대차계약(제7-46조)</li> </ul> </div> <p>2. 사전신고 대상 자본거래유형(지급등과 사후보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제1장 총칙을 준용함.</p> <p>3. 사후보고 대상 자본거래유형에 관하여 지급등과 사후보고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업무처리절차를 따르며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제1장 총칙을 준용함.</p>	<p><b>【 확인 및 유의사항 】</b></p> <p>1. 지급등을 하고자하는 자는 지급등의 시점에 지급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거래규정 제4-2조) 및 자본거래 사후보고 확인서(지침서식 7-24호)를 제출하여야하며, 지정거래 대상인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함.</p> <p>2. 지급등을 분할하여 하고자하는 경우 최초 지급등의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대상금액은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보고 후 6개월 이내에 분할지급이 완료되어야 함</p> <p>3. 자본거래 사후보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수리)보고서(지침서식 제7-21호) 및 변경사유입증서류를 사후보고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하며, 세부내용은 개별 항목의 절차를 따름</p> <p>4.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지급등의 시점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사후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보고의 이행을 안내하여야 하며, 보고기한 만료에도 사후보고를 이행되지 않는 경우 당해 위반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절차를 완료한 후에 지급등을 할 수 있음</p>
--	---

제 2 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과의 예금거래

< 제7장 제2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거주자계정(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한함) 예치(규정 제7-8조 제항 및 제7-10조 제1항)</p>	<p>거주자로부터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예수하는 경우(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예수하는 경우 제외)</p> <p>※ 개인사업자인 외국인거주자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순수 개인자격의 경우에는 대외계정으로 개설하여야 함 (규정 제2-6조의2 참조)</p>	<p>1.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환신고(확인)필증, 계약서 등]</p> <p>2. 영수확인서(지침서식 제4-3호)</p>	<p>1.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 확인</p> <p>2.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가.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를 기준으로 하며 2회 이상 예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임)</p> <p>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로부터 예수하는 경우</p> <p>다. 다른 거주자계정 또는 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오는 경우</p> <p>3. 제출서류 “2”는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미화 5만불 초과(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를 기준으로 하며 2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임)의 대외지급수단을 예치하는 경우로서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p> <p>☞ 다만 수취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송금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영수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후 영수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예치가 가능함</p> <p>4.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의 경우로서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예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확인서 징구 대상이 아님</p> <p>5. 외국인거주자 개인사업자 자격의 거주자계정은 개인사업자의 회사명 부기 등을 통하여 순수 개인자격의 대외계정과 구분하여야 한다.</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거주자계정 처분 (규정제79조제1항)</p> <p>3. 대외계정(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장적금에 한함) 예치 (규정 제 7-8 조 제2항제2호)</p>	<p>1. 대외지급(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의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p> <p>2.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출하는 경우</p> <p>인정된 거래에 따라 대외지급이 허용된 대외지급수단을 예수하는 경우</p>	<p>1. 지침 제3장 및 제4장의 제출 서류 참조</p> <p>1. 취득경위입증서류, 외국환 신고(확인)필증(규정서식 제6-1호) 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신고서(규정서식 제6-2호)</p>	<p>1. 지침 제3장 및 제4장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 거주자계정에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의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인 경우에 한함</p> <p>1. 신분증명서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p> <p>2.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규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외지급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예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3. 미화 2만불 초과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를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징구하여야 함</p> <p>※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징구한 경우 동 신고(확인)필증 금액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예치가 가능함. 다만, 동일자 동일인기준 미화 2만불 이하의 경우로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징구없이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여행자)수표를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4조제2항에 의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만 예치가 가능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4. 대외계정 처분 (제 7-9조 제 2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7-10조 제 1항 제 2호, 제 6-2조 제 3항)</p>	<p>1.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p> <p>2.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계정을 처분하는 경우</p>		<p>1.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 수단으로의 인출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함(지침 제6장제1절 참조) 다만, 영 제 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1. 당해 외국환의 처분이 신고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를 기준으로 하며 2회 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임)  나.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게 처분하는 경우</p> <p>2. 상기 “1”에 불구하고 당해 외국환의 처분목적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계정의 처분을 요청받은 경우 외국인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재산반입자금”으로 간주하여 처리가 가능함</p> <p>※ (참고사항)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원화 대가로 매각한 자금을 부동산이나 증권의 취득 등 자본 거래로 사용한 후 동 투자수익 등의 처분자금을 대외지급하고자 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관련 기관의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p> <p>3.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처분시 외국환은행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영수증·계산서 1부를 발행·교부하여야 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5. 해외이주자계정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에 한함) 예치(규정 제7-8조 제3항)</p>	<p>1. 해외이주(예정)자가 자기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예수하고자 하는 경우</p> <p>2. 재외동포가 자기명의 부동산 및 국내예금·신탁계정 원리금 등 국내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예수하고자 하는 경우</p>	<p>1. 지침 제4장제4절 항목 “1”의 제출서류 참조</p> <p>1. 지침 제4장제5절 항목 “1”의 제출서류 참조</p>	<p>1. 제4장제4절 항목 1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해외이주자계정개설인의 다른 외화예금계정과 구분계리하여야 함</p> <p>3. 세대별 해외이주비 예치금액 합계(분할예치하는 경우 포함)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기 지급금액 포함) 전체에 대하여 이주자(이주예정자 포함)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대외지급을 위한 해외이주자계정 처분시에 징구할 수 있음)</p> <p>1. 제4장제5절 항목 “1”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해외이주자계정개설인의 다른 외화예금계정과 구분 계리하여야 함</p> <p>3. 제출서류 중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및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는 대외지급을 위한 해외이주자 계정 처분시에 징구할 수 있음</p>
<p>6. 해외이주자계정처분 (규정 제7-9조제3항)</p>	<p>1. 해외이주(예정)자의 자기명의 재산처분대전을 송금(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 인출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p> <p>2. 재외동포의 자기명의 부동산처분대금 및 국내예금·신탁계정 원리금 등 국내재산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p>	<p>1. 지침 제4장제4절 항목 “1”의 제출서류 참조</p> <p>1. 지침 제4장제5절 항목 “1”의 제출서류 참조</p>	<p>1. 제4장제4절 항목 “1”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시 자기명의 재산처분대전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p> <p>1. 제4장제5절 항목 “1”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시 자기명의 부동산처분대금 및 국내예금·신탁계정 원리금 등 국내재산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p>

제 3 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과의 신탁거래

< 제7장 제3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1. 거주자의외신탁계정 예치 및 처분(규정 제 7-8조제1항제1호 및 제7-9조제1항)	거주자로부터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탁하는 경우 및 거주자의외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1. 제1절 항목 “1” 및 “2”의 제출서류 참조	1. 제1절 항목 “1” 및 항목 “2”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 2. 거주자가 신탁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규정에서 취득에 따른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함
2. 비거주자의외신탁계정 예치 및 처분 (규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탁하는 경우 및 비거주자의외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1. 제1절 항목 “3”의 제출서류 참조	1. 제1절 항목 “3” 및 항목 “4”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 2.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탁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규정에서 취득에 따른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함

제 4 절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외화예금 및 신탁거래

< 제7장 제4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1. 거주자의 해외예금 (규정 제7장제2절 제2관)  [ 신 고 ] 계 정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1. 예금거래신고서(규정서식 제7-1호) 및 동 서식 첨부서류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기관투자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2. 예금채원, 예치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인정된 거래에 따른 처분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3.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4.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예금거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p> <p>가. 기관투자가  나.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라.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마. 원양어업자</p> <p>5.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규정 제7-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거주자(기관투자가 제외)로부터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예금입금보고서(지침서식 제7-2호)를 제출받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자(기관투자가 제외)로부터 해외예금및신탁잔액보고서(지침서식 제7-3호)를 제출받은 경우 동 내용을 다음 연도 첫재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p> <p>가. 법인 :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 이외의 자 : 연간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p> <p>※ 상기 해외예금입금보고서(지침서식 제7-2호)는 해외에서 입금(예치)한 경우에 한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입금하는 경우는 제출 대상이 아님</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거주자의 해외신탁 (규정 제7장제2절 제2관)</p>	<p>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p>	<p>1. 신탁거래신고필증(규정서식 제7-1호)</p>	<p>1.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에 따른 예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정된 거래에 따른 처분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p> <p>2. 신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 등을 하여야 함</p> <p>※ 해외신탁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대상이 아님</p> <p>3. 규정제7-12조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로부터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내용을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p>

제 5 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제7장 제5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외화증권 발행 포함) 및 차입자금의 용도전환 (규정 제7-14조)</p> <p>[ 신 고 ] 자 본</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p> <p>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p> <p>나.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가목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p> <p>다. 영리법인</p>	<p>1.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3호) 또는 증권발행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7-15호)</p> <p>2. 외화자금차입계약서 또는 융자 의향서(증권발행의 경우 생략 가능)</p> <p>3. 증권발행계획서등(증권발행의 경우)</p> <p>4. 금융기관보증서(금융기관 보증 시에 한함)</p> <p>5. 보증계약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7-14호) : 이 장 제5절 항목 “4”의 확인 및 유의사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p> <p>2. 외화자금 차입신고(사후보고 포함)를 하는 자는 차입신고시에 차입자금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함</p> <p>3. 차입자금은 차입신고시 명기한 사용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함</p> <p>4. 외화자금을 차입한 자는 차입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인출·사용하여야 함. 다만, 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예치 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외화증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음</p> <p>5. 외국환은행의 장은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상환현황(지침서식 제7-6호) 및 거주자의 해외증권발행 및 상환현황(지침서식 제7-7호)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째달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p> <p>6.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경우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차입이 불가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일반제조업체”라 함)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고도기술업체”라 함)가 비거주자로부터 1년(자금인출 일부부터 기산하여 1년) 이하의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p> <p>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1. 내용 “1” 제출서류 “1” 내지 “5”</p> <p>2.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 사본 (고도기술업체에 한함)</p> <p>3.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동 인가서) 사본</p> <p>1. ( )변경신고(수리)/보고서 (지침서식 제7-21호)</p> <p>2. 내용변경 입증서류(변경계약서 등)</p> <p>3. 내용 “1”에 의거 신고한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p>	<p>7. 외화자금의 차입규모가 미화 5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내용 “1”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p> <p>1. 내용 “1” 확인 및 유의사항 “1” 내지 “6” 참조</p> <p>2. 단기차입의 정의는 항목 “2”의 확인 및 유의사항 “3” 참조</p> <p>3. 차입한도금액이 다음 각 호의 범위이내인지 여부</p> <p>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외화금액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 이내(다만, 고도 기술업체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분의 75이내)</p> <p>나.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p> <p>1. 자행이 차입신고(사후보고 포함)를 받은 외국환은행인지 여부</p> <p>2. 내용변경 신고대상 : 차입기간, 차입금리, 상환방법, 차입용도, 신고 금액의 감액, 합병으로 인한 차주 변경, 채권 인수로 인한 대주 변경 ↳ 증액 또는 차주(합병으로 인한 차주 변경 제외) 및 대주의 변경 (채권인수로 인한 대주변경은 제외)은 신규 절차에 따름</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자금차입 (규정 제7-14조 제3항)</p> <p>[ 신 고 ] 자 본</p>	<p>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 불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p>	<p>1. 금전의 대차계약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3호)</p> <p>2. 외화자금 차입계약서 또는 용자의향서(L/I)</p> <p>3. 수입계약서 또는 신용장 사본</p>	<p>1. 정유회사 이외의 자가 수입한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정유회사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정유회사 등에 공여하는 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2.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입이 아닐 것</p> <p>3.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화자금차입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함</p> <p>가. L/C방식인 경우 : L/C 개설은행 나. D/P·D/A방식인 경우 : 수입환어음추심은행 다. 사후송금방식인 경우 : 수입대금결제를 위한 송금은행</p> <p>※ 단기외화자금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하인 외화자금차입(증권 발행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을 말하며, 주식예탁증서는 제외한다)</li> <li>-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 중 자금인출일부터 1년 이내에 분할·중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차입(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li> <li>· 평균차입기간 : 분할(조기)상환 조건부 차입의 경우 총차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한 차입기간을 말함</li> </ul> <p>4. 원리금 상환시에는 자금공여자의 원리금상환청구서(전문 포함) 및 원리금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3.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 차입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말함) (규정 제7-15조)</p> <p>[ 신 고 ] 자 본</p>	<p>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0억원 (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함) 이하의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에 한함)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p> <p>2.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1.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3호)</p> <p>2. 원화자금차입계약서 또는 융자의향서</p> <p>3. 금융기관보증서(금융기관 보증서에 한함)</p> <p>1. ( )변경신고(수리)/보고서 (지침서식 제7-21호)</p> <p>2. 내용변경 입증서류(변경계약서 등)</p> <p>3. 내용 “1”에 의거 신고한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p> <p>2. 원화자금차입 신고를 하는 자는 차입신고시에 차입자금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함</p> <p>3. 차입자금은 차입신고시 명기한 사용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함</p> <p>4.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주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서만 차입하여야 함</p> <p>5. 차주별 차입금액(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p> <p>※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경우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차입이 불가함</p> <p>1. 자행이 차입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인지 여부</p> <p>2. 내용변경 신고대상 : 차입기간, 차입금리, 상환방법, 차입용도, 신고금액의 감액, 합병으로 인한 차주 변경, 채권인수로 인한 대주 변경 ↳ 증액 또는 차주(합병으로 인한 차주 변경 제외) 및 대주의 변경 (채권인수로 인한 대주변경은 제외)은 신규 신고대상임</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4.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규정 제 7-16조제1항)</p>	<p>1. 거주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 기간 1년미만의 대출</p> <p>2. 거주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 기간 1년미만의 대출을 신고한 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1.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3호)</p> <p>2. 금전대차계약서 등</p> <p>3.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등</p> <p>1. ( )변경신고(수리)/보고서 (지침서식 제7-21호)</p> <p>2. 내용변경 입증서류(변경 계약서 등)</p> <p>3. 내용 "1"에 의거 신고한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p>	<p>1. 자행이 해외직접투자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의 경우에만 해당</p> <p>1. 자행이 거주자의 비거주자(현지법인)에 대한 대출 사후보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인지 여부</p> <p>2. 내용변경 신고대상 :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대출용도, 신고금액의 감액, 합병으로 인한 차주 혹은 대주 변경 등 ☞ 다만,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을 따름</p>

제 6 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제7장 제6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투자매매·중개업자 현지차입에 대한 보증(규정 제7-18조 제1항제1호)</p> <p>[ 신 고 ] 자 본</p>	<p>국내에 본점을 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당해 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보증금액은 당해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출자금액의 300%이내에 한함</p>	<p>1. 보증계약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4호)</p> <p>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 신고수리서</p> <p>3. 현지 여신공여기관과의 금융 계약서 또는 L/I</p>	<p>1. 대지급을 할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p> <p>가. 채무이행 청구서(원리금 및 부대비용 포함)</p> <p>나. 지급보증서 사본</p> <p>2.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보증에 한함</p> <p>※ L/I : 용자의향서</p>
<p>2. 거주자의 현지법인의 해외리스에 대한 국내본사 등의 보증 (규정 제7-18조 제1항제2호)</p> <p>[ 신 고 ] 자 본</p>	<p>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을 하는 경우</p>	<p>1. 보증계약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4호)</p> <p>2. 거주자의 현지법인임을 입증 하는 서류</p> <p>3. 원인행위에 대한 계약서(리스 계약서)</p>	<p>1. 항목 “1”의 확인 및 유의사항 제1호 참조</p> <p>※ 해외직접투자신고필증</p>
<p>3. 국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의 보증(규정 제7-18조 제1항제3호)</p> <p>[ 신 고 ] 자 본</p>	<p>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동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다만, 보증금액은 당해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 내에 한함</p>	<p>1. 보증계약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4호)</p> <p>2. 국내 시설대여회사의 현지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p> <p>3. 차입계약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은 확인 후 반환함)</p>	<p>1. 항목 “1”의 확인 및 유의사항 제1호 참조</p> <p>※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신고수리서</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4.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차입에 대한 보증(제7-18조 제2항)</p> <p>[ 신 고 ] 자 본</p>	<p>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1년 초과 장기외화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는 경우</p>	<p>1. 보증계약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4호)</p> <p>2. 차입계약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은 확인후 반환함)</p>	<p>1. 보증대상 차입과 관련하여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항목 “1”의 확인 및 유의사항 제1호 참조</p> <p>3. 제5절 항목 “1”에 의거 차입에 관한 신고(사후보고 포함)를 하는 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사후보고 가능</p> <p>4.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침서식 제7-6호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및 상환현황 보고서 또는 지침서식 제7-7호 거주자의 해외증권발행 및 상환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보증신고현황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째달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p> <p>☞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단기외화차입에 관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는 경우(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포함)에는 한국은행총재의 신고를 받아야 함</p>
<p>5. 해외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원리금 상환보증 등 (제7-18조제3항)</p> <p>[ 신 고 ] 자 본</p>	<p>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금융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국민인 거주자(일반여행자는 제외), 국민인 비거주자 또는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p> <p>가. 당해 여신을 받는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국내에 있는 재산(부동산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p>	<p>1. 보증계약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4호) : 원리금 상환 보증의 경우</p> <p>2. 담보제공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6호) : 담보제공의 경우</p> <p>3. 당해 여신취급기관의 장의 담보취득 및 관리의뢰사실 입증서류</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p> <p>2. 본 항목과 관련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당해 여신을 받는 자의 명의로 함</p> <p>☞ 당해 여신을 받는 자가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시 대표자의 여권 번호 끝자리에 “Z”를 첨가하여 번호를 등록할 것</p> <p>3. 담보취득기관의 장의 담보취득 및 관리승낙 여부</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나.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국내금융기관에 그 원리금상환의 보증 또는 담보(부동산 포함)를 제공하는 경우</p> <p>2. 내용 '1'에 해당하는 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4. 당해 여신을 받는 국민인비 거주자 등의 여권번호 또는 납세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지 여신취급 해외지점 등이 확인한 서류에 의함)</p> <p>1. ( )변경신고(수리)/보고서 (지침서식 제7-21호)</p> <p>2. 내용변경 입증서류 (변경계약서, 융자의향서 등)</p> <p>3. 당초 신고서 사본</p>	<p>4. 본 항목 관련된 여신은 여신수혜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사후 보고 포함)하는 하나의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동 법인이 투자한 자회사·손회사를 포함함)에서만 취급하여야 함</p> <p>5. 외국환은행이 동여신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당해 여신의 원리금을 회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 등을 취급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가능함</p> <p>6.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본 항목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당 미화 50만불 이내에서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을 할 수 있음(규정 제2-8조제1항제4호)</p> <p>7. 외국환은행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미화 50만불을 초과하여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규정 제2-8조제2항)  <small>단, 2000. 12. 31. 현재 외국환은행이 보증한 경우로서 만기가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19호 부칙 제2조제2항 참조)</small></p> <p>8.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미화 50만불을 초과하여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규정 제2-8조제2항)</p> <p>1. 내용변경 신고대상 : 담보종류, 상환방법, 대출금리, 기한연장 등 차주 또는 보증인(담보제공자) 변경, 증액 등은 신규절차에 따름</p>

**제 7 절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시설물 이용에 관한 권리(회원권 등) 취득**

〈 제7장 제7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1. 회원권 등의 취득 (제7-21조 제2항)  [ 신 고 ] 자 본	1.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상기 “1”에 의하여 취득한 거주자로부터 다른 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	1. ( )매매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1호) 2.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3. 매매대상물 증빙서류  1. ( )매매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7-11호) 2. 거주자간(양수도)계약서 등 3. 매매대상물 취득 증빙서류 4. 양도인의 매매신고필증	1. 본 항목에 대하여 사후보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익월 10일까지 회원권 등의 매매내용을 통보(전산통보)  2. 최초 분양인 경우에는 매매대상물 증빙서류를 사후에 보완 가능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취득에 관한 규정(제9-38조 및 제9-39조)에 의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 사항임  1.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내용 “1”에 의하여 취득한 거주자가 매매 사후보고를 하였는지 여부

**제 8 절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

〈 제7장 제8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1. 증권발행에 따른 비거주자유원계정 (규정 제 7-8조, 7-9조, 7-24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발행으로 조달·예치한 자금을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1. 증권발행신고서 사본(최초 계좌 개설시, 규정서식 제7-5호) 2. 인정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고서 등	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2.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기 위한 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이 당해 비거주자 명의의 대외계정에 예치되어야 함
2. 증권발행에 따른 대외계정 (규정 제7-8조, 7-9조, 7-24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발행으로 조달·예치한 자금을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1. 증권발행신고서 사본(최초 계좌 개설시, 규정서식 제7-5호) 2. 인정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고서 등	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제 9 절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

< 제7장 제9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투자전용대외계정 (규정 제7-37조, 제7-42조)</p>	<p>1. 외국인투자자로부터 규정 제7-36조에 의한 국내증권(선물, 옵션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투자를 하기 위하여 투자전용대외계정의 개설 및 규정 제7-37조제2항 및 제7-42조에서 정하는 외화자금을 동 계정에 예수하는 경우</p> <p>2. 내용 “1”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다음 각목의 1의 용도로 처분을 하는 경우</p> <p>가. 증권취득을 위하여 내국지급 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p> <p>나. 취득증권에 관련한 유상청약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납부액 포함) 및 증권취득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한 내국지급 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p>	<p>1. 취득자의 실명확인증표(투자 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당해 국가에 설립 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p> <p>2. 위임장[상임대리인이 최초 계좌를 개설할 경우. 전문 (Telex)도 가능함]</p> <p>3. 외국환신고(확인)필증 (투자 자금을 휴대 반입한 경우)</p>	<p>1. 투자전용대외계정은 투자자의 다른 대외계정과 구분 계리하여야 함</p> <p>2. 외국환은행의 장은 투자전용대외계정 현황을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p> <p>※ 비거주자(국민인 비거주자 제외)로서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앞 투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p> <p>1.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예탁결제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인지 여부(외국인투자자의 대외계정 개설 외국환은행이 동시에 상임대리인인 경우 및 증권을 외국환은행이 보관하고 있어 직접청약 등을 하는 경우 제외)</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비거주자의 비상장·비등록 주식(지분) 취득 및 처분(규정제7-32조제2항)</p> <p>[ 신고 ] 자 본</p>	<p>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채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2. 비거주자의 비상장·비등록 주식(지분) 처분대금 지급</p>	<p>1. 증권취득신고서 (지침서식 제7-10호)</p> <p>2. 재원증빙서류</p> <p>3. 주식(지분)취득 입증 서류 (주식매매계약서 또는 발행계획서 등)</p> <p>4. 취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당해 국가에 설립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5. 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p> <p>6. 지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p> <p>2. 증권취득신고필증</p> <p>3. 양수도계약서 등 매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1.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하여 본 항목을 적용함</p> <p>※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동 시행령 제2조)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이상)으로서, 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라도 당해 법인 또는 기업에 임원을 파견 또는 선임하는 경우</p> <p>2. 제출서류 “2”의 재원증빙서류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외화예치증명서 등을 말함(사후보완 가능)</p> <p>※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불요사항으로 본 항목 적용대상이 아니나,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고받을 수 있음</p> <p>1. 주식(지분) 취득자금이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되었거나 송금된 대외지급수단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이었는지의 여부</p> <p>※ 증권취득 당시의 거주성이 처분시에 전환된 경우 및 국민인 비거주자가 내용 “1”에 의해 증권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식(지분) 처분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p>

제 10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 제7장 제10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임대차계약 (규정 제7-46조)</p> <p>[ 신 고 ] 자 본</p>	<p>비거주자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p> <p>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계약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p> <p>나.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항공기엔진 및 관련 주요부품 포함)를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화 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1. 임대차계약신고서 (규정서식 제7-9호)</p> <p>2.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동 사본 (원본은 확인 후 반환함)</p>	<p>1. 임대차계약은 계약상의 목적물의 현재가격과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이자부담액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되어야 함 ※ 임대차물 및 임대차사유 증빙서류는 제출 제외</p> <p>2. 임차료 및 임대료는 운송비, 수수료 등 기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p>

**제 11 절 현지금융**  
**제 1 관 통 칙**

< 제7장 제11절 제1관 >

<p><b>【 현지금융에 대한 사후보고 등 】</b></p> <p>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사후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함.</p> <p>가. 거주자의 현지금융 : 당해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의 현지금융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보고</p> <p>나.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현지금융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보고</p> <p>다.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 방식에 의한 현지금융 : 거주자의 현지금융관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보고. 다만,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함</p> <p><b>【 사후보고 의무자 】</b></p> <p>1. 거주자의 현지금융</p> <p>가.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제7-14조제1항)하거나 다른 거주자(외국환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가 보증 및 담보(이하 이장에서 “보증 등”이라 한다)를 제공(제7-18조제1항제4호)하는 경우 : 보증 등을 제공하는 거주자</p> <p>나. 이외의 경우 : 당해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제7-14조제1항)</p> <p>※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현지법인은 이 절에 의한 현지금융을 수혜할 수 없음</p>	<p>2. 거주자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등”이라 한다)의 현지금융</p> <p>가.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 :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제7-18조 제1항제5호, 제2-8조제1항제5호가목)</p> <p>나.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보증 등이 있는 경우 : 보증 등의 제공자(제7-18조제1항제5호)</p> <p>※ 이 장에서 “거주자의 해외지점”은 규정 제9-19조에서 정한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의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의 현지법인”은 당해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함</p> <p>※ 현지법인등이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금융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 장을 적용함</p> <p><b>【 공통제출서류 】</b></p> <p>1. 금전의 대차계약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7-13호) :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 포함)</p> <p>2. 보증계약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7-14호) :  ①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로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외국환은행 포함)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로 다른 거주자(외국환은행 제외)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p>
---	---

<p>3. 담보제공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7-16호) :</p> <p>①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로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p> <p>②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로 다른 거주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p> <p>4. 현지 여신공여자와의 금융계약서 또는 용자의향서 (L/I)</p> <p>5. 해외지점 설치신고필증 사본 및 영업활동 입증서류(주기·주석사항이 명시된 재무제표 포함) : 해외지점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p> <p>6. 해외직접투자신고필증 사본 및 영업활동입증서류(주기·주석사항이 명시된 재무제표 포함) :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p> <p>※ 제출서류 “5” 및 “6”의 해외지점 설치신고필증 및 해외직접투자신고필증은 해당 외국환은행에서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별로 최초 신고시에만 제출하며 그 이후에는 해외지점설치신고 및 해외직접투자신고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하고, 영업활동 입증서류인 재무제표 등은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별로 동일 회계연도분이 기 제출된 경우 및 전년도 결산자료가 없는 신설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p> <p><b>【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b></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현지금융관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p>	<p>2. 현지금융을 받은 자는 차입한 자금을 신고 또는 사후보고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제외</p> <p>가. 현지법인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유입의 경우</p> <p>나. 거주자의 현지금융 변경 보고(감액 또는 종결) 및 외화자금차입 신규 신고(국내사용목적)를 통해 거주자계정에 예치하는 경우</p> <p>3. 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보고를 요하지 아니함. 다만, 해외지점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현지법인의 경우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거주자로부터 “현지금융 차입·상환·보증 등 한도 운영현황 보고서”(지침서식 제7-23호)를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함</p> <p>가.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현지법인</p> <p>나. 가목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p> <p>4. 이 장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상황을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제출받아 다음 반기 둘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p> <p>5. 거주자가 경상거래의 대외지급,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신고대상임</p>
--	---

제 2 관 현지금융에 대한 사후보고

< 제7장 제11절 제2관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거주자 및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에 대한 사후보고(규정 제7-14조, 7-14조의2)</p> <p>[ 신 고 ] 금 용</p>	<p>1. 거주자 및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금융기관,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비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제외)</p> <p>2. 거주자 및 현지법인 등이 당초 현지금융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1. 제1관 공통제출서류</p> <p>2.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 (지침서식 제9-26호) :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의 경우</p> <p>3. 항공기 또는 선박도입계약서 및 착수금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도입에 따른 착수금의 경우</p> <p>4. 자본거래 사후보고 확인서 (지침서식 제7-24호)</p> <p>1. ( )변경신고(수리)/보고서 (지침서식 제7-21호)</p> <p>2. 내용변경 입증서류 (변경계약서, 융자의향서 등)</p> <p>3. 당초 보고서 사본</p>	<p>1. 제1관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제7장 제1절 통칙 확인 및 유의사항 1 참조</p> <p>1. 내용변경 신고 대상 : 담보종류, 상환방법, 대출금리, 합병으로 인한 차주 또는 보증인(담보제공자) 변경, 기한연장 등</p> <p>합병 이외의 차주 또는 보증인(담보제공자) 변경, 증액 등은 신규 절차에 따름</p>

제 3 관 현지금융 원리금 상환

< 제7장 제11절 제3관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현지금융의 원리금 상환(규정 제 7-14조의2)</p>	<p>규정에 의해 현지금융에 관한 사후보고를 한 자가 그 보고를 한 바에 따라 현지금융의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p>1.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                      2. 현지금융을 수혜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금전의 대차 계약신고필증 또는 보증계약신고필증 등)                      3. 자금공여자의 채무이행 청구서 (대지급의 경우)                      4. 제공된 지급보증서 사본(지급 보증의 경우) 또는 차입계약서 사본(신용차입의 경우)</p>	<p>1. 자행이 현지금융에 대한 사후보고를 받은 은행인지 여부 확인                      * 외국환은행이 보증과 관련하여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은행이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현지금융의 원리금상환 및 대지급의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 대상은 제3장 제1절을 참조</p>

## 제 9 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취득

- 제 1 절 해외직접투자
- 제 2 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 제 3 절 외국기업 국내지사
- 제 4 절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제 5 절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제 1 절 해외직접투자  
제1관 통칙**

〈제9장 제1절 제1관〉

<p><b>【 공통제출서류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규정서식 제9-1호)</li> <li>2.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li> <li>3.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li> <li>-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li> <li>-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li> </ul> </li> </ol> <p>※ 상기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사본은 최근 1년 이내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징구를 생략할 수 있음</p> <p><b>【 추가제출서류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li> <li>2. 외국자본과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li> <li>3. 현물투자명세표 2부(현물투자의 경우)</li> <li>4.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에 대한 관련 서류를 추가 징구  <small>☞ 제재조치 완료 후 신규에 준하여 사후신고</small></li> <li>5.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등의 의견(평가서, 의견서)을 제출받아야 함  <small>☞ 다만 인수하고자 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으로 동 취득가액이 거래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 거래시세 관련 자료 첨부로 갈음 가능</small></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해외직접투자관련 매 송금시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1부  <small>☞ 다만 기 징구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징구 생략</small></li> <li>7. 금전의 대차계약신고필증(규정 제7-16조제1항의 경우)</li> <li>8.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b>【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 및 조세채납자인지 여부를 신고 및 송금시점에서 당사자의 신용정보 출력과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징구에 의해 확인하여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그 등록사유가 해제된 경우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채권자협의회 포함)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체 및 동 기업체의 대표자 단, 납세증명서의 경우 기업체의 대표자는 징구생략하며 고용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신용정보 출력 생략가능</li> <li>②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동 개인</li> </ol> </li> </ul> </li> </ol>
---	--

<p>나. 투자자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p> <p>① 해외이주 수속중인지의 여부 확인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당해 투자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해외이주 수속 중인 자에 한함</p> <p>②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자</p> <p>다. 투자비율이 10% 이상인지(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경우 제외) 또는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제관계 수립여부 확인할 것</p> <p>2.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 분실시 원본은 재발급할 수 없으며 사본(원본대조필 날인)발급만 가능함</p> <p>3.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은행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p> <p>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p> <p>나.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p> <p>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p>	<p>※ “여신”이란 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지급보증을 말하며 여신최다은행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장에 의하여 집중된 여신 규모(한도기준)가 최다인 은행을 말함</p> <p>※ 여신최다은행은 거주자의 최초투자시 여신이 최다인 은행을 말함. 즉,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여신최다은행이 변경될 경우에도 최초 지정한 은행에서 계속 신고함. 다만, 거주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p> <p>4.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1부를 신고수리서에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할 것(세관 통관시 사용)</p> <p>☞ 현물투자명세표상의 원화표시 현물가액을 외화로 환산할 때에는 신고서 접수일의 시장평균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할 것</p> <p>5. 투자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를 받은 날(장기투자를 요하는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명시된 예정투자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내용에 따라 당해 지급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당해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고하여야 함</p> <p>6. 비영리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사업의 표시가 있고,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함</p> <p>☞ 해외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해외직접투자는 불가함</p> <p>7.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투자에 대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p>
---	---

<p>8.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투자업종이 부동산 관련업일 경우 현지법인 형태의 투자에 한함          ※ 부동산 관련업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골프장 운영업을 말함(규정 제1-2조제10호)</p> <p>9. 규정 제7-31조제2항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앞 증권취득 신고 후 증액투자 등으로 해외직접투자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p> <p>10. 해외직접투자자가 신고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투자자금을 규정 제4-3조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경우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대외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에 한함.          ※ 자본금 납입없이 설립한 해외법인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최초 지분 또는 주식 취득을 위한 자본금 납입 이전까지 할 수 있음</p> <p>11. 해외직접투자 최초 신고시 경영에 참가할 수 없는 지분(예:우선주 등)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절의 적용대상이 아님</p> <p>12. 규정 제7-16조제1항에 의거 거주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미만의 대출을 사후보고한 자가 당초 보고한 상환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금전의 대차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p> <p><b>【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고서 등의 제출 】</b></p> <p>1. 신고기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지침서식 제9-18호)을 작성해야 함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같음함</p> <p>2.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목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정한 기일 내에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규정 제9-9조제1항)</p>	<p>가.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를 포함)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후 6월 이내. 다만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함          ※ 다만,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투자 신고시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지침서식 제9-10호)를 제출해야 함</p> <p>나.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 신고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경우 송금 cable 등으로 송금(투자)보고서에 같음할 수 있음</p> <p>다. 연간사업실적 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는 제외함)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다만,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2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3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지침서식 제9-16호)로 같음할 수 있음</p> <p>라.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내용 포함) :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 회수 후 즉시          ※ 해외에서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에 청산보고 할 것          ※ 비거주자에의 전액 지분매각은 청산에 준함</p> <p>마.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청산시 회수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누적 투자금액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바. 기타 신고기관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p>
--	--

<p>3. 보고서 제출 등</p> <p>가. 해외직접투자(신규 및 증액투자)신고 또는 내용변경 보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동 신고서(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즉시 본점앞 보고하여야 하며, 본점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 사본, 내용변경보고서 사본,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투자실적 보고서(월보, 지침서식 제9-17호) 등을 매 익월 15일 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 앞 보고하여야 함</p> <p>☞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장 앞 통보하여야 함</p> <p>나. 신고기관의 장은 규정 제9-9조제1항제5호에 의거 투자자로부터 연간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즉시 동 사본을 한국수출입은행장 앞 보고하여야 함. 다만,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신규 및 증액투자의 합계금액)이 미화 200만불 초과 미화 3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투자현황표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보고하여야 함</p> <p>☞ 해당 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현지의 재난·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기관의 장이 투자자로부터 관련 보고서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휴·폐업, 현지의 재난·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제출 곤란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의무면제보고서(지침서식 제9-24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함(규정 제9-9조제2항)</p>	<p>※ 불가피한 사유의 예시 : 휴·폐업, 소재불명, 지진·화재 등의 재난, 현지 법인과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 현지 신용평가상 파산상태 등</p> <p>다. 개인투자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규정 제9-4조(투자금 회수), 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및 제9-9조(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함</p> <p>※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투자자가 이후 국내에 체재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계속 사후관리하여야 함</p> <p>☞ 다만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사후관리의무면제보고서(지침서식 제9-24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규정 제9-9조제2항)</p>
---	---

제 2 관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 제9장 제1절 제2관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규정 제9-5조)</p> <p>[ 신고 ] 해 투</p>	<p>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p>	<p>1. 제1절 공통제출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p>	<p>1.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3.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투자사업별이 아닌 투자자별로 함</p> <p>4. 제3호에 불구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비율이 가장 많은 거주자(투자비율이 같은 경우 자본금 규모가 큰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함. 단, 투자자 각각의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고하고, 신고서는 투자자별로 작성하여야 함</p> <p>5. 규정 제7-16조제1항에 의거 거주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미만의 대출을 사후보고한 자가 당초 보고한 상환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p>
<p>2.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등 (규정제9-5조제1항 및 제2항)</p>	<p>1. 거주자간 투자지분을 양·수도하는 경우</p>	<p>1. 거주자 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9-8호)</p> <p>2. 양수도계약서(거주자의 투자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3. 당초 신고(보고)서 사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지 여부</p> <p>2.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3.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하여야 함. 양도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당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이관하여야 함(일부 양도인 경우 사본 송부)</p> <p>4. 투자자의 합병·분할의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하여야 함</p> <p>5. 제출서류 “2”의 경우 양수도계약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표(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 단, 고용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 생략가능)                      -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개인에 한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거주자간 양수도가 아닌 내용 변경인 경우(비거주자 앞 지분 일부 양도,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설립·투자금액변경 등)</p>	<p>1. 해외직접투자내용변경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9-6호)</p> <p>2. 당초 신고서</p> <p>3. 자(손자)회사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7호)</p>	<p>- 양수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서류 “1”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별지제9-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small>☞</small> 양도인의 신청 시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함</p> <p>※ 해외직접투자 유효기간 연장, 대부투자기한 연장, 대부투자 상환 방법·금리변경 등의 경우에는 내용변경 보고가 아닌 내용변경 신고대상임</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지 여부</p> <p>2.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3.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내용변경 사유 예시          가.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현지법인명·현지법인의 소재지 변경          나.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다. 현지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경영상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라. 대부투자신고후 1년 이내 자금 회수</p> <p><small>☞</small> 다만, 규정 제9-5조 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의 투자금 변동 없이 발생한 지분율 변동의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님</p> <p>4. 투자지분의 일부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점의 순자산액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p> <p>5.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는 본 항목 적용대상이 아님  <small>☞</small>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규절차에 의거 처리(항목1)</p> <p>6. 자(손자)회사 청산 시에는 제출서류 “1”를 징구하여야 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3. 사후보고 방식에 의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규정 제9-5조제2항)</p> <p>[ 신 고 ] 해 투</p>	<p>1.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 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p> <p>2. 누적 투자금액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p> <p>※ 누적 투자금액은 투자자별 2015.1.1. 이후 누계 기준임</p>	<p>1. 제1절 공통제출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p> <p>2. 자본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지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등)</p> <p>[투자금 지급시 제출서류]</p> <p>1. 제1절 공통제출서류 중 제3호</p> <p>2. 규정 제9-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p> <p>[사후보고 시 제출서류]</p> <p>1. 제1절 공통제출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단, 투자금 지급시 제출서류 제외)</p>	<p>7. 비거주자에의 전액 지분매각은 규정 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에 의함</p> <p>1.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하여야 함.</p> <p>1.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3.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투자사업별이 아닌 투자자별로 함</p> <p>4. 본 항목의 투자자금은 대외지급수단의 송금방식에 한함</p> <p>5. 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2호 및 제4-3호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사전에 송금할 수 있음</p> <p>6.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는 투자금지급시에는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사후보고시에는 제출하여야 함</p> <p>7.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하여야 함.</p> <p>※ 본 항목은 증액투자 및 대부투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p>

제 2 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제1관 해외지사의 설치·변경

< 제9장 제2절 제1관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비 금융 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규정 제9-18조)</p> <p>[ 신 고 ] 해 투</p>	<p>1. 비금융기관인 거주자의 해외지점 설치</p> <p>2. 비금융기관인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설치</p>	<p>1. 해외지점설치(변경)신고서 (지침서식 제9-19호)</p> <p>2. 지점설치자격요건확인서류 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확인 및 유의사항 “가목의①”의 경우) 나. 주무부장관,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확인 및 유의사항 “가목의②”의 경우)</p> <p>1. 해외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지침서식 제9-20호)</p> <p>2. 사무소설치자격요건확인서류 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과거 1년간)(확인 및 유의사항 “나목③, ⑤”의 경우) 나. 주무부장관,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 (확인 및 유의사항 “나목⑩”의 경우)</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해외지사를 설치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가. 지점설치 자격요건 ①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② 기타 주무부장관,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사무소설치 자격요건 ① 공공기관 ② 금융감독원 ③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④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③ 또는 ④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⑥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의 법인 ⑦ 중소기업협동조합 ⑧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 ⑨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⑩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 ⑪ 기타 주무부장관,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 포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다. 기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확인 및 유의사항 “나목④⑥⑨⑩”의 경우)</p>	<p>3. 해외지사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4. 해외지사설치신고서 이면 사후관리 유의사항의 이행여부를 해외지사종합관리카드(지침서식 제9-23호)에 기록하고 사후관리 할 것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같음함</p> <p>5. 한국수출입은행장앞 보고</p> <p>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한국은행총재 신고내역을 포함한다)은 해외지점 설치(변경)신고서(지침서식 제9-19호) 및 해외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지침서식 제9-20호) 사본, 해외지사별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 현황 및 부동산 취득·처분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외지사 설치·현황보고서(지침서식 제9-25호)를 본점앞 보고하여야 하며 본점은 동 서류를 매 분기후 20일 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앞 보고하여야 함</p> <p>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한국은행총재 신고내역을 포함한다)은 규정 제9-25조 제3항에 의거 신고인으로부터 영업활동보고서(지침서식 제9-22호)를 제출받은 후 본점앞 보고하여야 하며 본점은 매 익년도 8월 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앞 보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사무소와 독립채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지점(비독립채산제)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장앞 제출 생략</p> <p>다. 신고기관의 장은 휴·폐업,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의무면제보고서(지침서식 제9-24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함(규정 제9-25조제5항)</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비금융기관 해외지사 신고내용의 변경(규정제9-24조)</p> <p>[ 신 고 ] 해 투</p>	<p>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1. 해외지점의 경우 : 해외지점 설치(변경)신고서(지침서식 제9-19호)</p> <p>2. 해외사무소의 경우 : 해외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지침서식 제9-20호)</p> <p>3. 해외지사설치신고필증 사본</p>	<p>6.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설치자금을 규정 제4-3조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경우 지사를 설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에 한함.</p> <p>7.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휴폐업 등의 상태에 있어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영업활동보고서(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1.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p>2.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의 상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음</p>

제 2 관 해외지사의 영업기금 및 설치비 지급

< 제9장 제2절 제2관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비금융기관 해외 지점의 영업기금 지급(규정 제9-19조)</p> <p>[ 신 고 ] 해 투</p>	<p>해외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 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함)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의 지급은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음</p>	<p>1. 해외지사경비지급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9-21호)</p> <p>2. 해외지점 설치사실 입증서류 (해외지점설치신고필증)</p> <p>3. 자본거래 사후보고 확인서 (지침서식 7-24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비독립채산제)의 경우에는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수리를 받은 건에 한하여 독립채산제 적용 및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있음  <small>☞ 이 경우 신고인(본사)은 매 분기마다 해외지점으로서의 지급내역 등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small>                      &lt;대상&gt; 가.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나.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p> <p>3. 영업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앞 통보대상은 제3장제1절을 참조</p> <p>4. 해외지점 설치신고와 동시에 영업기금지급신고를 할 경우 일괄 신고할 수 있음  <small>☞ 독립채산제지점 설치경비는 영업기금에 포함하여 지급함</small></p> <p>5. 제7장 제1절 통칙 확인 및 유의사항 1 참조</p>
<p>2. 해외지사의 설치비 지급(규정 제9-19조 제3항 단서, 제 9-20조)</p> <p>[ 신 고 ] 해 투</p>	<p>해외사무소 및 비금융기관의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른 경비 지급. 다만, 해외지사설치 신고시 신고한 설치비지급은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음</p>	<p>1. 해외지사경비지급신고(보고서) (지침서식 제9-21호)</p> <p>2. 해외지사 입증서류                      가. 해외사무소설치신고필증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 필증</p> <p>3. 자본거래 사후보고 확인서 (지침서식 7-24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해외지사 설치신고와 동시에 설치비지급신고를 할 경우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설치비 항목 예]  <small>☞ 해외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또는 동산 구입비(임차보증금 포함), 수리비, 통신 및 전산관련 설치비 등</small></p> <p>3. 제7장 제1절 통칙 확인 및 유의사항 1 참조</p>

제 3 관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 지급

< 제9장 제2절 제3관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 지급 (규정 제9-19조 제3항 단서, 제9-20조)</p>	<p>해외사무소 및 비금융기관의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의 활동 및 유지운영(현지 채용인력에 대한 급여 포함)에 필요한 제 경비의 지급</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유지활동비로 전용된 경우에는 그 전용금액을 포함할 것</p> <p>3.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앞 통보대상은 제3장제1절을 참조</p> <p>4.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설치한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현지보유 외화자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p>
<p>2. 국내항공·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제9-21조)</p>	<p>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이 주재원 급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전 해외지점의 당해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p>	<p>1. 매연도별로 각 해외지점의 현지수입금 명세</p> <p>2. 소요경비 명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p> <p>2. 동일 국가 내에 수개 지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 사용액 산정에 있어서 당해 국가의 모든 지사 수지상황을 1개 지사분으로 통합계산할 수 있음</p> <p>3. 주재원에 대한 체제비는 본 항목의 현지보유 외화자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p>

제 3 절 외국기업 국내지사

< 제9장 제3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국내지사 설치 (규정 제9-33조)</p> <p>[ 신 고 ] 지 사</p>	<p>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 (이하 이 절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p> <p>*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이외의 금융관련업무와 증권, 보험관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p> <p>* 국내지점·사무소의 구분 지 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 사무소 :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 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p>	<p>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신고서 (규정서식 제9-8호)</p> <p>2. 국내지사장 임명장</p> <p>3.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등(당해 국가에 설립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4. 위임장(지사설치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국내지사장 실명번호에 의거 지정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을 징구하여 변경지정할 것)</p> <p>2. 제3호의 제출서류는 사본으로 제출받을 수 있음</p> <p>3.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지사를 설치할 수 없음</p> <p>가. 국내지점의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 ↳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별표1, 별표2 참조 [ 예 : 정부행정, 교육기관, (신설)공공성격 관련업(방송업 등)]</p> <p>나. 국내사무소의 경우 : 당해 사무소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유학알선업, 고용알선업 등)</p> <p>※ 국내지사 설치시의 “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신고내용의 변경 (규정 제9-33조)</p> <p>[ 신 고 ] 지 사</p>	<p>국내지사를 설치한 자가 신고한 내용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가. 지사의 경우 : 대표자, 소재지, 영위업무내용, 지사명 나. 본사의 경우 : 본사상호 및 국적</p>	<p>1.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규정서식 제9-9호)</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3. 영업기금 도입 (규정 제9-34조)</p>	<p>외국기업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 부터 영업기금을 도입하는 경우</p>	<p>2. 변경사실 입증서류 가. 대표자 변경시 : 임명장 나. 소재지 변경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다른 기업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다. 업무내용 변경시 : 사업 계획서 및 본사의 이사회 결의서</p> <p>3. 기타 변경사유 관련서류</p> <p>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다음의 방법으로 영수한 자금은 영업기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한 경우 나. 휴대수입한 자금인 경우 다. 원화자금인 경우 라. 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다만, 본사를 대신하여 자금집중 센터 등이 송금한 자금 제외) 마. 자금용도가 영업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물품대금, 용역 대가, 법인세 등과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거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등)</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4.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규정 제9-35조)</p> <p>[ 신 고 ] 지 사</p>	<p>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앞 설치신고를 한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p> <p>※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대본점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p> <p>※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감액된 영업기금(규정 제9-36조)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 가능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규정서식 제9-10호)</li> <li>2.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li> <li>3. 납세증명서 (관할세무서장 발행)</li> <li>4.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li> <li>2. 영업기금도입액은 규정 제9-34조에 의거 당해 국내지점이 도입한 영업기금으로 결산시점까지의 도입누계액을 말함</li> </ol>
	<p>5. 국내지사의 폐쇄 신고(규정 제9-37조)</p> <p>외국기업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규정서식 제9-11호)</li> <li>2. 폐쇄입증서류(본사 발행)</li> <li>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li> <li>2. 본사의 파산 등으로 “폐쇄입증서류”를 본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발행 “폐업증명서”를 징구할 수 있음</li> <li>3.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국내지사의 경우에는 본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님</li> </ol>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6. 청산대금의 회수	외국기업국내지사를 폐쇄신고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사본</li> <li>2. 공인회계사감사필 청산보고서 등(사무소의 경우에는 국내 보유자산의 처분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3. 납세증명서 (관할세무서장 발급)</li> <li>4. 영업기금도입액(국내지점에 한함),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명세표</li> <li>5. 예금잔액 증명서</li> <li>6. 청산종결등기부등본 (미등기 지사의 경우, 폐업 증명서 등 청산종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행이 지침서석 제1-2호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li> </ol>

**제 4 절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제 1관 통 칙**

< 제9장 제4절 제1관 >

<p><b>【 신고대상 등 】</b></p> <p>1. 신고대상 부동산(권리 취득 포함) :  가.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하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 규정 제9-39조제2항제1호)  ※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 예시 : 건물, 상가, 토지, 주택 등  나.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의 주거용 주택(이하 ‘주거용 주택’, 규정 제9-39조제2항제2호)  다. 부동산 임차권(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미화 1만불 이하의 임차권 취득인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이며 이 경우 무역외거래의부동산 임차료 항목으로 지급하여야 함</p> <p>2. 신고인 : 거주자(외국인 거주자 및 영주권자 제외)  가.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 :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주거용 주택  (1)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해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하여야 함  (2) 거주자가 ‘해외에 체재하는 배우자’ 명의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취득자금 보유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는 동 주택에서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인이 될 수 없음  ※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해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고 해당자금을 반출하여 취득(부동산취득신고 대상 아님)하여야 함  다. 부동산 임차권 :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p> <p>3. 부동산 취득명의인  가.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 : 신고인 본인  나. 주거용 주택 : 신고인 본인 또는 신고인의 배우자(비거주자 포함, 영주권·시민권자 제외)</p>	<p>☞ 신고인과 주택 취득 명의인이 다른 경우 신고인이 사후관리자료 제출, 주택 처분 및 매각대금 국내회수 등의 의무자임  다. 부동산 임차권 : 신고인 본인</p> <p>4. 신고수리기관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p> <p><b>【 공통제출서류 】</b></p> <p>1.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서(지침서식 제9- 26호) 2부  2. 신고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  3.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포함) 또는 분양 계약서 등 분양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거래상대방의 실체 확인서류 각 1부(단,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거래 상대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징구생략 가능)  5. 부동산 감정평가서(현지의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부동산가격정보 사이트의 자료도 인정) 또는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동산임차권 취득의 경우는 제외함)  ☞ 주거 목적의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에 한하며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되지 않음  6. 납세증명서 1부(관할 세무서장 발행)  7. 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에 한함)</p>
---	--

<p><b>【 추가제출서류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주거용 주택 취득의 경우로서 신고인과 거주예정자가 상이한 경우)</li> <li>2. 체재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외장기체류비자 등) 1부. 다만, 부득이하게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약서(지침서식 제9-27호) 1부 : 주거용 주택 취득에 한함</li> <li>3.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서류(취득자금의 일부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li> <li>4. 해외에서 인정된 거래에 따른 자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li> <li>5. 부동산 매매계약서(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말함)</li> <li>6. 배우자의 납세증명서 1부 : 주거목적 부동산 취득으로서 배우자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li> <li>7. 기타 신고수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b>【 공통 확인 및 유의사항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자 및 취득명의인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li> <li>2. 조세채납자인지 여부</li> <li>3. 해외이주 수속 중인 자 여부 - 해외이주 수속 중인지의 여부 확인은 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당해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함</li> <li>4. 취득가액의 일부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또는 현지 소득으로 충당 가능</li> <li>5. 신고수리금액은 국내송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절에 의한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시 현지의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금전대차 신고는 불요함. 다만,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할 것 ※ 국내송금액이라 함은 외국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기자금과 모기지론 상환원리금 및 부동산취득시점에서 발생하는 제 부대비용 등 국내에서의 송금총액을 말함</li> <li>6.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외국주택 취득 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동 은행을 통해 송금하여 상환하여야 함</li> <li>7. 기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신고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취득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다만,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li> </ol>
--	---

<p>8. 부동산 취득 명의인 변경</p> <p>가.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취득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증여, 상속, 유증 포함) 하는 경우, 양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신규로 신고수리 절차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함</p> <p>나. 신고인이 신고서상 취득명의인(배우자)으로부터 거주자인 신고인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p>※ 취득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기타자본거래 신고 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p> <p>9.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목적물이 변경된 경우 신규 신고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p> <p>10.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 취득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불가  <small>☞ 예 : 전매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부동산 취득</small></p> <p>11.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투자자금을 규정 제4-3조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다만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에 한함</p>	<p>【 보고서 등 사후관리 】</p> <p>1. 보고서</p> <p>가.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지침서식 제9-28호) :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다만, 분할하여 송금하는 경우 최종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p> <p>나.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지침서식 제9-29호) : 부동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 후 3월 이내(다만, 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p> <p>다.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 제출  <small>☞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보고서 '다' 제외</small></p> <p>※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또는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전산 통보하여야 함. 다만, 현지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상기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제청장·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현지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의 사실을 통보(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사후관리의무면제 보고서, 지침서식 제 9-24호)하여야 함  <small>☞ 불가피한 사유 등 : 소재불명,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투자자(법인)의 휴·폐업, 현지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small></p>
--	--

제2관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 제9장 제4절 제2관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소유권 취득(규정 제9-39조제2항)</p> <p>[신고수리] 자본</p>	<p>1. 거주자가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p> <p>2.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p>	<p>1. 제1관 공통제출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p>	<p>1. 제1관 통칙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외국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임차권 이외의 물권-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 단, 외국인에 대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경우로서 특정기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장기 사용권을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취득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 임차권이 아닌 소유권 취득으로 신고하여야 함(예 : 중국 등)</p> <p>3. 분양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주거 이외 목적에 한함</p> <p>4. 외국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외지급은 신고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함                      ※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원리금 상환 및 부동산취득시점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외환수급통계상 지급사유는 이 절의 부동산거래 항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함.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취득이후 발생하는 비용(예: 수리비, 관리비, 세금, 수수료 등)은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필증 및 지급증빙서류를 장구하여 무역외용역대가로 처리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외국부동산 취득자금은 모기지론 상환 및 부동산취득시점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모두 포함함</p> <p>5.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인 경우                      가. 주거목적 취득 : 신고인과 그의 배우자 공동명의로만 가능                      나. 주거 이외 목적 취득 : 공동 명의 취득이 불가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신고수리(규정 제9-39조제3항)</p> <p>[신고수리] 자본</p>	<p>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내신고수리 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p>1. 제1관 공통제출서류 “1” “2” , “5” 내지 “7” 및 추가 제출서류</p>	<p>6. 거주자(또는 거주자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의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불가함</p> <p>7. 국세청·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대상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전산통보)  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또는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전산통보하여야 함</p> <p>1. 내신고수리 대상은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한함  가. 분양과 관련한 청약대금을 사전에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  나. 매매물건이 확정되었으나, 계약금 등의 사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p> <p>2. 내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목 “1”에 의하여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지급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p> <p>3. 신고인이 제출하는 제1관 공통제출서류 “5”에 의하여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함</p> <p>4. 내신고수리와 관련된 지급은 분할지급이 불가함</p> <p>5. 내신고수리시 제출받은 서류는 본 신고수리시 징구 생략할 수 있으며, 해외부동산취득의 본신고(수리)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내신고(수리)서는 회수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3.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용 변경(규정 제9-1조 제3항)</p> <p>[신고수리] 자본</p>	<p>신고수리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1. ( )변경신고(수리)/보고서 (지침서식 제7-21호)</p> <p>2. 당초 신고(수리)서 사본</p> <p>3. 매매계약서 등 입증서류</p>	<p>1. 내용변경 신고(수리)대상 가. 부동산 취득 또는 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한 금액 변경 나. 토지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금액 변경 다. 모기지론 상환 등 국내송금액 변경 라. 주거용의 부동산 취득 후 이를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 취득으로의 내용변경 마. 주거 이외 목적의 부동산 취득 후 이를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의 내용변경 위 ‘마’의 경우 통칙 추가제출서류 “2” 호를 징구하여야 함</p> <p>2.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 내용변경 신고수리 후 해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3개월 이내(소유권 추가 취득일 기준)에 부동산 취득(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p> <p>3. 투자대상 부동산의 목적물의 변경은 내용변경 신고수리사항이 아님</p>
<p>4.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임차권 취득 (규정 제9-39조 제2항)</p> <p>[신고수리] 자본</p>	<p>1.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 하는 경우</p>	<p>1. 제1관 공통제출서류</p>	<p>1. 제1관 통칙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참조</p> <p>2.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3. 본 항목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부동산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임차권 취득의 경우에 한함</p>

제 5 절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제9장 제5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취득 (규정 제9-42조 제2항)</p> <p>[ 신 고 ] 자 본</p>	<p>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동산취득신고서(규정서식 제9-12호) 및 동 서식 첨부 서류</li> <li>2. 임대차계약신고서(임대차인 경우)(규정서식 제7-9호)</li> <li>3. 담보제공신고(보고)서(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담보제공시) (지침서식 제7-16호)</li> <li>4. 부동산매매계약서 등</li> <li>5. 담보취득의 경우로서 원인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국내부동산등”이라 하며 이하 같다)의 취득자금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에 한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규정 제9-42조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li> <li>나.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 포함)으로 국내부동산등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li> <li>다. 비거주자가 규정 제9-4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의거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li> </ul> </li> <li>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등의 취득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취득신고필증,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담보제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li> <li>3.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담보권 취득의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취득신고(제출서류 “1”)를 하거나, 담보제공자인 당해 거주자가 담보제공신고(제출서류 “3”)를 할 수 있음</li> <li>4.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등을 취득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국내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담보권 취득은 제외한다)에는 확인 및 유의사항 제2호의 부동산취득신고필증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당해 부동산의 권리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 부동산등의 취득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신고를 하여야 함</li> </ol>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 지급 (규정 제9-43조)</p>	<p>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등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p>1. 지급신청서 (지침서식 제3-1 호)</p> <p>2.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부동산취득 신고필증 등)</p> <p>3. 매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매매계약서 등)</p> <p>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신청서 (관할세무서장 발행))</p>	<p>5. 권리이전 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부동산취득신고필증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의 원본 우측하단에 “권리이전 신고필” 문언을 주기표시하고 이면에 권리이전 신고사실(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의 성명, 권리이전 금액, 신고일자)을 기재하여 확인인 날인 후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은 보관함</p> <p>1. 국내부동산등의 취득자금이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하거나 송금된 자금인지 여부</p> <p>2.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실행에 따라 취득한 국내 부동산등의 매각대금인지 여부. 다만, 비거주자가 규정 제7-13조 제4호에 의하여 취득한 국내부동산등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규정 제7-21조제3항)</p> <p>3. 재외동포 재산반출의 경우에는 제4장제5절의 내용을 적용함</p> <p>4. 비거주자가 규정 제9-4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국내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거나, 규정 제9-42조 제3항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후 취득한 국내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항목에 의거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송금할 수 있음</p>

## 제 10 장 대북투자 등

- 제 1 절 통 칙
- 제 2 절 대북투자
- 제 3 절 북한지사
- 제 4 절 현지금융



<p>1. 본 장(대북투자)에 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거래지침」에 의거 취급하되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의 다른 장 및 「남북 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관한지침」등을 참조하여 처리할 것</p> <p>※ 신고의무자가 대북투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투자한 후 자진신고를 통해 관련기관의 확인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투자자에 대하여 사후 신고를 받을 수 있음</p> <p>2. 대북투자관련 제출서류</p> <p>가. 대북투자(변경)신고서(지침서식 제10-1호)</p> <p>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신고수리서 사본</p> <p>다.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외국환은행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함)</p> <p>라.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대북투자사업계획서(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지침서식 제10-2호) 다만, 협력사업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는 협력사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마. 사업자등록증사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li> <li>-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관할세무서장 발행)</li> <li>-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li> </ul> <p>※ 상기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사본은 최근 1년 이내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장구를 생략할 수 있음</p>	<p>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 및 조세채납자인지 여부를 신고수리 및 송금시점에서 당사자의 신용정보 출력과 납세증명서 징구에 의해 확인하여야 함.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희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채권자협의회 포함)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1)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체 및 동 기업체의 대표자. 단, 납세증명서의 경우 기업체의 대표자는 징구 생략하며 고용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신용정보출력 생략 가능</p> <p>(2)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동 개인</p> <p>사. 금전대차계약서 (상환기간 1년 이상인 대부투자인 경우)</p> <p>아. 현물명세표 2부 (현물투자의 경우)</p> <p>(1)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1부를 신고수리서에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할 것</p> <p>※ 세관통관시 사용되며, 통관시 남북교역(M:개성공단/금강산, I:기타) 및 해외투자수출(수출거래구분코드 61)로 신고하여야 함</p> <p>(2) 현물투자명세표상의 원화표시 현물가액을 외화로 환산할 때에는 신고서 접수일의 시장평균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할 것</p>
--	--

<p>3. 대북투자(제2절) 사후관리</p> <p>가. 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p> <p>(1) 증권(채권)취득보고서(지침서식 제10-5호)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 자금 제공 후 6월 이내</p> <p>(2) 송금(투자)보고서(지침서식 제10-4호)</p> <p>① 송금(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p> <p>② 대북투자자금의 국내지급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 입금과 지급, 각 거래시점. 다만 동일자 입금과 지급이 동시 처리되는 경우 1회 보고로 같음함</p> <p>(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지침서식 제10-6호)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다만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약식보고서(지침서식 제10-7호)를 제출할 수 있음</p> <p>(4) 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내용 포함)(지침서식 제10-8호) :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 회수</p> <p>(5)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p> <p>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과 관련하여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거래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것</p>	<p>4. 북한지사(제3절) 사후관리</p> <p>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 종합관리카드(지침서식 제10-12호)를 각 지사별로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함</p> <p>나. 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p> <p>(1)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제19조의 결산보고 :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p> <p>(2)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제21조제1항의 지사 설치보고(지침서식 제10-3호) : 지사 설치 완료 후 20일 이내</p> <p>(3)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제21조제3항의 반기별 영업활동 상황 보고(지침서식 제10-11호) : 반기종료 후 20일 이내</p> <p>※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제21조제2항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내용 보고 :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p>
--	---

<p>5. 현지금융(제4절) 사후관리</p> <p>가. 기획재정부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p> <p>나. 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4절에서 정한 인증을 하거나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것</p> <p>다. 승인 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현지금융은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p> <p>6. 한국수출입은행앞 보고서 등 제출</p> <p>가. 대북투자(신규 및 증액투자)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신고서 사본, 대북투자관련 신고 및 투자실적 보고서(월보, 지침서식 제10-13호 및 제10-14호)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익월 15일 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앞 보고하여야 함</p> <p>① 대북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 보고서(지침서식 제10-13호) 관련 : 대북투자 (변경)신고서, 증권(채권)취득보고서, 송금(투자)보고서, 청산보고서 (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내용 포함)</p> <p>② 북한지사 설치·현황 보고서(지침서식 제10-14호)관련 : 북한지사설치 (변경)신고서, 북한지점경비지급신고서, 북한사무소경비지급신고서, 지사 설치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내역</p>	<p>나. 대북투자자 및 북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침서식 제9-24호에 의거 사후관리의무면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p> <p>다. 기타</p> <p>①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1월 이내</p> <p>② 북한지점(비독립채산지점 제외)의 결산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순 이익금의 처분내역을 제출한 경우 : 1월 이내</p> <p>③ 반기별 영업활동상황 보고를 제출한 경우 : 1월 이내</p> <p>④ 현지금융의 인증,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의 제출, 현지금융에 따른 원금 및 이자, 부대비용의 지급에 대한 인증의 경우 : 1월 이내</p> <p>⑤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p> <p>7. 외국환은행 북한지점 대외계정 예치 및 처분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및 제7-9조를 적용함</p>
---	---

제 2 절 대북투자

< 제10장 제2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대북투자 신고 (대북투자등에관 한외국환거래지 침 제7조)</p> <p>[ 신 고 ] 경 협</p>	<p>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받은 거주자(현지법인이 투자 하는 경우 포함)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p>	<p>1. 제1절 대북투자관련 제출서류</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신고내용이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또는 신고수리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p> <p>※ 특구지역 투자자가 통일부 협력사업승인 이전에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취득관련 분양대금을 지급한 경우 동 분양대금에 한하여 사전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대북투자 신고시점에 신고할 수 있다.</p> <p>3. 비거주자원화계정 설치를 통한 대북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 투자자인지 여부</p> <p>※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 투자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여 북한 현지법인 명의로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대북투자를 위한 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가. 북한현지법인이 건설공사비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나. 기타 북한 현지법인이 시설계약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국내 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p>☞ 대북투자관련 비거주자원화계정의 입금 및 지급은 대북투자에 한하며, 각 거래시마다 송금(투자)보고하여야 함(제1절 통칙 대북투자 사후관리 참조)</p> <p>☞ 특구지역 현지법인의 상기 계정개설시 실명확인증표는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신고수리서(위임장 겸용)로 갈음함</p> <p>4. 제1절 통칙 “1” 내지 “3” 참조</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대북투자 신고내용의 변경 투자금액 감액 신고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7조, 제10조)</p> <p>[ 신 고 ] 경 협</p>	<p>대북투자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투자자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p>	<p>1. 대북투자(변경)신고서 (지침서식 제10-1호)</p> <p>2.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또는 변경신고수리서 사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신고내용이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또는 변경신고수리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p> <p>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투자자금 감액신고를 받은 즉시 그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p>4. 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한 투자금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함</p> <p>5. 제1절 통칙 “1” 및 “3” 참조</p>
<p>3. 투자금 송금(투자) 확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9조)</p>	<p>대북투자 신고를 한 자가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바에 따라 북한에 송금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p>	<p>1.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또는 신고수리서 원본(송금 실행 후 반환)</p>	<p>1. 자행에 대북투자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p> <p>2.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또는 신고수리서 원본 뒷면에 지급은행,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p> <p>3. 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한 투자금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함</p>
<p>4. 재투자신고(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제10조제1항)</p> <p>[ 신 고 ] 경 협</p>	<p>대북투자자가 당해 투자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p>	<p>1. 대북투자(변경)신고서 (지침서식 제10-1호)</p> <p>2.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또는 변경신고수리서 사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재투자 내용이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또는 변경신고수리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p> <p>3. 제1절 통칙 “1” 및 “3” 참고</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5. 대북투자 청산신고 (대북투자등에관한 외국환거래지침 제10조제2항)</p> <p>[ 신 고 ] 경 험</p>	<p>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p>	<p>1. 대북투자(변경)신고서 (지침서식 제10-1호)</p> <p>2. 청산 사유서</p> <p>3. 잔여재산 회수 계획서</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잔여재산 회수금액 및 회수시기의 적정성 여부</p> <p>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청산신고를 받은 즉시 그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p>4. 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 등으로 협력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함</p> <p>5. 대북투자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함</p> <p>가. 사업기간의 종료</p> <p>나.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 등으로 협력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p> <p>다. 증권, 지분 및 사업 등의 양도</p> <p>라.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거래지침 제4조제4호 (개인 사업영위 등)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 등</p> <p>마.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p> <p>6. 제1절 통칙 “1” 및 “3” 참조</p>

제 3 절 북한지사

< 제10장 제3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북한지사 설치 신고 (대북투자등에 관한외국환거래지침 제15조 제2항)</p> <p>[ 신 고 ] 경 협</p>	<p>통일부장관의 북한지사 설치 승인을 받은 거주자(현지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포함)가 북한지역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p>	<p>1. 북한지사설치(변경)신고서 (지침서식 제10-3호)</p> <p>2.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지점) 또는 사무소설치승인증 사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신고내용이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지점) 또는 사무소설치승인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p> <p>3. 제1절 통칙 “1” 및 “4” 참조</p>
<p>2. 북한지점 설치내용의 변경신고(대북투자 등에관한외국환거 래지침 제15조제2항)</p> <p>[ 신 고 ] 경 협</p>	<p>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1. 북한지사설치(변경)신고서 (지침서식 제10-3호)</p> <p>2.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또는 변경신고수리서 사본</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신고내용이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또는 변경신고수리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p> <p>3. 제1절 통칙 “1” 및 “4” 참조</p>
<p>3. 북한지점의 영업기 금(대북투자등에 관한외국환거래 지침 제16조)</p> <p>[ 신 고 ] 경 협</p>	<p>북한지점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협력 사업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p>1. 북한지점 경비지급신고서 (지침서식 제10-9호)</p> <p>2.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원본(송금실행 후 반환)</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에 명시된 영업기금 범위 이내인지 여부</p> <p>3.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원본 뒷면에 지급은행,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p> <p>4. 영업기금에는 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 차입에 의한 자금은 제외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4. 북한지사의 설치비 지급(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6조 제2항, 제17조)</p> <p>[ 신 고 ] 경 협</p>	<p>북한사무소 및 비독립채산제 북한지점의 설치 및 확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p> <p>가. 사무소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 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p> <p>나. 동산집기류(자동차 포함)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p> <p>다.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 포함)</p> <p>라. 전화, 텔렉스 통신관계 설치비</p> <p>마.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p>	<p>1. 북한사무소경비지급신고서 (지침서식 제10-10호) : 북한 사무소의 경우에 한함</p> <p>2. 북한지점경비지급신고서 (지침서식 제10-9호) : 비독립 채산제 북한지점에 한함</p> <p>3.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지점) 또는 사무소설치승인증 사본</p> <p>4. 설치비 사용계획서 또는 설치비 사용명세서 및 계약서 등</p>	<p>5.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항목 4의 북한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p> <p>6. 제1절 통칙 “1” 및 “4” 참조</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신고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함</p> <p>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 정산 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항목 5의 북한사무소 유지활동비로 전용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시 이를 차감하여야 함</p> <p>4.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일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p>5. 제1절 통칙 “1” 및 “4” 참조</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5. 북한지사의 유지 활동비 지급(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제 16조 제 2 항, 제18조)</p> <p>가. 기본경비</p> <p>[ 신 고 ] 경 협</p> <p>나. 기타경비</p> <p>[ 신 고 ] 경 협</p>	<p>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 전액</p> <p>가. 가스 및 수도료</p> <p>나. 전신전화료</p> <p>다.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p> <p>라. 제세공과금</p> <p>마.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p> <p>바.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p> <p>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 한도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함. 다만, 동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p>	<p>1. 북한사무소경비지급신고서 (지침서식 제10-10호) : 북한 사무소에 한함</p> <p>2. 북한지점 경비지급신고서 (지침서식 제10-9호) : 비독립 재산 북한지점에 한함</p> <p>3. 소요경비명세서, 청구서, 계약서 등 제증빙서류</p> <p>1. 북한사무소경비지급신고서 (지침서식 제10-10호)</p> <p>2. 북한지점 경비지급신고서 (지침서식 제10-9호) : 비독립 재산제 북한지점에 한함</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정기적,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바”의 경우)</p> <p>3. 사후관리 지급신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함</p> <p>4. 제1절 통칙 “1” 및 “4” 참조</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북한사무소 주재원 수 내에서의 지급인지 여부</p> <p>3. 지급사유와 금액의 타당성 여부</p> <p>4.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리 사항임</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6. 북한지사 폐지, 명칭 또는 위치 변경 신고 (대북투자등에 관한외국환거래지침 제22조)</p> <p>[ 신 고 ] 경 험</p>	<p>북한지사를 설치한 자가 동 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3. 북한사무소 주재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현지 채용직원 포함)</p> <p>가. 본국 파견직원 : 주재원 파견명령서 등</p> <p>나. 현지 채용직원인 경우 : 고용계약서 사본</p> <p>4. 기타경비 명세 및 지급사유서 (한도초과 지급시)</p> <p>1. 대북투자(변경)신고서 (지침서식 제10-1호)</p> <p>2. 통일부장관의 폐지(변경) 승인서 사본</p> <p>3. 잔여재산 회수계획서</p>	<p>5. 사후관리</p> <p>가. 사무소 및 주재원 1인당 정액한도 범위 내에서의 기타경비 지급에 있어 당해 경비 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함</p> <p>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경비 전액(사후관리 불요분 포함)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함 (지급 신고수리일부 180일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함)</p> <p>6. 기타경비 한도초과 지급신고수리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p>7. 제1절 통칙 “1” 및 “4” 참조</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잔여재산 회수금액 및 회수시기의 적정성 여부</p> <p>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 폐지 및 명칭(위치)변경신고를 받은 즉시 그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4.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 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내용을 1월 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제 4 절 현지금융

< 제10장 제4절 >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1. 대북투자자들의 현지금융(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3조)</p> <p>[ 신 고 ] 경 협</p>	<p>거주자 또는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함) 및 북한지점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북한 및 해외에서 다음 각목의 용도로 현지 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p> <p>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이라 함)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p> <p>가. 거주자의 대북투자자금</p>	<p>1. 금전의 대차계약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7-13호) :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p> <p>2. 보증계약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7-14호) : 계열기업의 보증이 있는 경우</p> <p>3. 담보제공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7-16호) : 계열기업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p> <p>4.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p> <p>5. 당해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서</p> <p>6. 현지 여신공여은행과의 금융계약서 또는 융자의향서</p>	<p>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p> <p>2.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또는 신고수리서 내용에 합당한지 여부</p> <p>3. 제1절 통칙 “1” 및 “5” 참조</p>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나. 북한 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증계약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7-14호) :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현지법인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 그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 이하 “본사”라 함) 또는 본사의 계열기업이 보증하는 경우</li> <li>2. 담보제공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7-16호) : 본사 또는 본사의 계열기업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li> <li>3. 북한 현지법인 등의 설치관련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또는 신고수리서 (최초 신고시)</li> <li>4. 현지 여신공여은행과의 금융계약서 또는 융자의향서 (L/I)</li> <li>5. 북한 현지법인 등의 최근 회계년도 영업활동 입증서류 (주기·주석사항이 명시된 재무제표 포함)</li> <li>6. 손익계산서 등 매출실적 입증서류(사업초년도의 경우 사업계획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해 본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li> <li>2. 신고금액이 전년도 매출실적(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 이내인지 여부</li> <li>3.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li> <li>4. 본사의 계열기업이 보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이 본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li> <li>5. 제1절 통칙 “1” 및 “5” 참조</li> </ol>

항 목	내 용	제 출 서 류	확 인 및 유 의 사 항
<p>2. 현지금융 원리금 상환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23조 제7항)</p>	<p>현지금융의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를 한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 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li> <li>2. 금전의 대차계약신고(보고)서, 보증계약신고(보고)서 또는 담보제공신고(보고)서</li> <li>3. 자금공여자의 채무이행 청구서</li> <li>4. 제공된 지급보증서 사본(지급 보증의 경우) 또는 차입계약서 사본 (신용차입의 경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li> <li>2. 자행이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신고를 한 은행(보증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은행)인지 여부</li> <li>3. 북한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인 경우 재고재산 처분 등 대지급금액의 최소화 가능 여부</li> <li>4. 제1절 통칙 “1” 및 “5” 참조</li> </ol>

## 제 11 장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신고수리 분류표



구 분	항목번호	신고(수리)항목	항 목 내 용	
지급등의 방법	계산(신고)	상계	○ 상계신고 및 결산잔액의 처분(규정 제5-4조제2항)	
		상호계산	○ 상호계산신고, 폐쇄(제5-5조) ○ 상호계산계정의 결산 잔액의 처분(제5-7조)	
	3자(신고)	제3자지급등	○ 거주자의 제3자지급등(제5-10조제2항)	
예금거래	계정(신고)	예금신탁거래	○ 거주자의 해외예금(제7-11조)	
자본거래	자본(신고)	금전의 대차에 따른 자본거래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 및 차입자금의 용도전환(제7-14조제1항) ○ 정유회사 등의 1년 이하의 단기 외화자금차입(제7-14조제3항) ○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차입 및 차입자금의 용도변경(제7-14조제2항) ○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제2-6조제4항)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제7-16조제1항)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보증(제7-18조제1항제1호) ○ 거주자의 현지법인의 해외리스에 대한 국내 본사 등의 보증(제7-18조제1항제2호)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제7-18조제1항제3호) ○ 주채무계열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 외화자금차입에 대한 동계열소속 다른 기업체의 보증(제7-18조제2항)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원리금 상환보증 등(제1-2조제3호, 제7-18조제3항, 제7-43조제2항, 제7-44조제2항)	
		회원권등 취득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시설물 이용에 관한 권리 취득(제7-21조제1항)	
		증권취득	○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제7-32조제2항)	
		부동산취득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제9-42조제2항)	
		기타 자본거래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임대차계약(제7-46조)	
		자본(신고수리)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	○ 거주자의 투자용 외국 부동산 및 체재할 목적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9-39조제2항)

구 분	항목번호	신고(수리)항목	항 목 내 용
국내지사	지사(신고)	외국기업국내지사	○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제9-33조, 제9-37조)
현지금융	금융(신고)	현지금융	○ 현지금융의 신고(제7-14조, 제7-14조의2, 제7-18조)
해외투자	해투(신고)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제9-5조)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 해외직접투자 내용의 변경(제9-9조제1항)
	해투(신고)	해외지사 설치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제9-18조)
		해외지사의 영업기금 등	○ 비금융기관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지급(제9-19조제2항) ○ 해외지사의 설치비 지급(제9-19조제3항 단서, 제9-20조제2항, 제9-31조)
		해외지사 신고내용 변경	○ 비금융기관 해외지사 신고내용 변경(제9-24조제1항)
대북투자	경협(신고)	대북투자	○ 거주자(현지법인 포함)가 대북투자를 하는 경우(대북투자지침 제7조) ○ 대북투자의 내용 변경, 감액(대북투자지침 제7조, 제10조) ○ 대북투자 청산(대북투자지침 제10조제2항) ○ 재투자(대북투자지침 제10조제1항)
		북한지사	○ 북한지사 설치(대북투자지침 제15조제2항) ○ 지사설치내용 변경(대북투자지침 제15조제2항) ○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송금(대북투자지침 제16조) ○ 북한지사의 설치비 지급(대북투자지침 제16조제2항, 제17조) ○ 북한지사의 유지활동비 지급(대북투자지침 제16조제2항, 제18조) ○ 북한지사 폐지, 명칭, 위치 변경(대북투자지침 제22조)
	현지금융	○ 대북투자자의 현지금융(대북투자지침 제23조)	



## 제 12 장 지 침 서 식



【 지 침 서 식 】

서식 제1-1호 <삭 제> ('17.07.18.)  
 서식 제1-2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개정 '23.7.28.)  
 서식 제1-3호 외국환거래 관련자료 제출집계표  
 서식 제3-1호 지급신청서 (개정 '23.7.28.)  
 서식 제3-2호 <삭 제> ('03.11.20)  
 서식 제4-1호 해외여행확인서 (개정 '08.6.2.)  
 서식 제4-2호 지급확인서 (개정 '23.7.28.)  
 서식 제4-3호 영수확인서 (신설 '07.12.17.)  
 서식 제4-4호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실 보고서 (신설 '07.12.17.)  
 서식 제5-1호 상호계산계정 결산대차기잔액처분(변경)신고서  
 서식 제5-2호 상호계산계정 폐쇄신고서  
 서식 제7-1호 <삭 제> ('17.07.18.)  
 서식 제7-2호 해외예금 입금보고서 (신설 '07.12.17., 개정 '22.1.20.)  
 서식 제7-3호 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 보고서 (신설 '07.12.17., 개정 '22.1.20.)  
 서식 제7-4호 <삭 제> ('07.12.17.)  
 서식 제7-5호 <삭 제> ('17.07.18.)  
 서식 제7-6호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상환 현황보고서  
 서식 제7-7호 거주자의 해외 증권발행 및 상환 현황보고서  
 서식 제7-8호 <삭 제> ('07.12.17.)  
 서식 제7-9호 <삭 제> ('05.7.1)  
 서식 제7-10호 증권취득신고서  
 서식 제7-11호 ( )매매 신고(보고)서(개정 '23.7.28.)  
 서식 제7-12호 <삭 제> ('07.12.17.)  
 서식 제7-13호 금전의 대차계약신고(보고)서 (개정 '23.7.28.)

서식 제7-14호 보증계약신고(보고)서 (개정 '23.7.28.)  
 서식 제7-15호 증권발행신고(보고)서 (개정 '23.7.28.)  
 서식 제7-16호 담보제공신고(보고)서 (개정 '23.7.28.)  
 서식 제7-17호 <삭 제> ('07.12.17.)  
 서식 제7-18호 <삭 제> ('07.12.17.)  
 서식 제7-19호 <삭 제> ('07.12.17.)  
 서식 제7-20호 <삭 제> ('07.12.17.)  
 서식 제7-21호 ( )변경신고(수리)/보고서(신설 '06.11.13., 개정 '20.8.18.)  
 서식 제7-22호 <삭 제> ('07.12.17.)  
 서식 제7-23호 현지금융 차입·상환·보증 등 한도운영현황보고서(개정 '23.7.28.)  
 서식 제7-24호 자본거래 사후보고 확인서(신설 '23.7.28.)  
 서식 제8-1호 <삭 제> ('17.07.18.)  
 서식 제8-2호 <삭 제> (제7-23호로 이동, '23.7.28.)  
 서식 제8-3호 <삭 제> ('07.12.17.)  
 서식 제8-4호 <삭 제> ('07.12.17.)  
 서식 제8-5호 <삭 제> ('07.12.17.)  
 서식 제9-1호 사업계획서 (개정 '14.5.1., 개정 '22.1.20.)  
 서식 제9-1-1호 <삭 제> ('19.1.1.)  
 서식 제9-2호 <삭 제> ('07.2.26.)  
 서식 제9-3호 <삭 제> ('07.2.26.)  
 서식 제9-4호 <삭 제> ('07.2.26.)  
 서식 제9-5호 <삭 제> ('07.2.26.)  
 서식 제9-6호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보고)서 (개정 '19.1.1., 개정 '20.8.18.)  
 서식 제9-7호 자(손자)회사 사업계획서 (개정 '18.1.1.)  
 서식 제9-8호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신고(보고)서 (개정 '18.1.1.)

서식 제9-9호 송금(투자)보고서 (개정 '07.12.17.)  
 서식 제9-10호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설립보고서포함) (개정 '15.1.1., 개정 '22.1.20.)  
 서식 제9-11호 <삭 제> ('07.2.26.)  
 서식 제9-12호 <삭 제> ('07.2.26.)  
 서식 제9-13호 <삭 제> ('07.2.26.)  
 서식 제9-14호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개정 '14.5.1., 개정 '22.1.20.)  
 서식 제9-15호 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잔액 1,000만불 초과 기업) (개정 '14.1.1., 개정 '22.1.20.)  
 서식 제9-15-1호 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잔액 3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기업) (개정 '19.1.1., 개정 '22.1.20.)  
 서식 제9-16호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개정 '19.1.1., 개정 '22.1.20.)  
 서식 제9-17호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 보고서 (개정 '14.1.1.)  
 서식 제9-18호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개정 '07.2.26.)  
 서식 제9-19호 해외지점 설치(변경) 신고(보고)서 (개정 '19.1.1.)  
 서식 제9-20호 해외사무소 설치(변경) 신고(보고)서(개정 '19.1.1.)  
 서식 제9-21호 해외지사 경비지급신고(보고)서 (개정 '23.7.28.)  
 서식 제9-22호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보고서 (개정 '14.1.1.)  
 서식 제9-23호 해외지사 종합관리카드  
 서식 제9-24호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사후관리의무면제 보고서 (개정 '15.1.1., 개정 '22.1.20.)  
 서식 제9-25호 해외지사 설치·현황 보고서 (개정 '08.1.14.)  
 서식 제9-26호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서 (개정 '15.1.1.)

서식 제9-27호 서약서 (개정 '19.1.1.)  
 서식 제9-28호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 (개정 '15.1.1.)  
 서식 제9-29호 해외 부동산 처분(변경) 보고서 (개정 '15.1.1., 개정 '22.1.20.)  
 서식 제9-30호 <삭 제> ('09.2.4.)  
 서식 제10-1호 대북투자(변경)신고서 (개정 '14.2.7.)  
 서식 제10-2호 대북투자 사업계획서 (개정 '08.1.14.)  
 서식 제10-3호 북한지사 설치(변경)신고서 (개정 '14.2.7.)  
 서식 제10-4호 송금(투자)보고서 (개정 '14.2.7.)  
 서식 제10-5호 증권(채권)취득보고서 (개정 '14.2.7.)  
 서식 제10-6호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개정 '08.1.14.)  
 서식 제10-7호 연간사업실적보고서(약식, 소액투자자용) (개정 '08.1.14.)  
 서식 제10-8호 대북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개정 '14.2.7.)  
 서식 제10-9호 북한지점 경비지급신고서 (신설 '07.12.17.)  
 서식 제10-10호 북한사무소 경비지급신고서 (신설 '07.12.17.)  
 서식 제10-11호 북한지사 등의 영업활동보고서 (개정 '08.1.14.)  
 서식 제10-12호 북한지사 종합관리카드 (신설 '07.12.17.)  
 서식 제10-13호 대북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 보고서 (개정 '14.1.1.)  
 서식 제10-14호 북한지사 설치·현황 보고서 (개정 '08.1.14.)  
 서식 제10-15호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한 송금(투자)보고서 (개정 '14.2.7.)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지정인 성명(상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외교포여신취급국외금융기관명: )

아래 항목에 대하여 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변경)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래 항 목	거 래 항 목
( ) 1.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예외 포함) (제4-3조제1항제1호, 제7-2조제8호) - 금년 중 송금누계액(변경전 거래외 국환은행의 확인) : US\$ ( ) 2. 해외체재비(제4-5조제2항) ( ) 8.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5만불 이하의 지급(제4-4조제1항 제3호, 제2항) ( ) 9. 거주자 등의 대북투자 (재경원고시 1995-23. 95.6.28) ( ) 13. 현지금융(제7-14조, 제7-14조의2, 제7-18조) ( ) 14. 해외지사 설치, 영업자금, 설치비, 유지 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제9장제2절) ( ) 16. 환전영업자(제3-2조제4항) ( ) 32.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 대외송금(제9장 제3절) ( ) 33. 상호계산 실시업체(제5-5조) ( ) 53.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제7-22조제2항)	( ) 57.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 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 담보제공 등(제7-18조제3항) ( ) 59.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지(제9-5조) ( ) 61. 거주자의 해외예금(제7-11조제2항) ( ) 62.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제7장 제5절 제2관) ( ) 63.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제4-7조) ( ) 71. 거주자의 외화자금(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포함) 차입 및 처분(제7-14조) ( ) 72.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재경부 고시 외관 41271-270.98.11.12) ( ) 75. 해외이주비(제4-6조) ( ) 76.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제7-2조) ( ) 77.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제7-15조) ( ) 78.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제9-39조제2항) ( ) 79. 거주자의 연간 미화 10만불 이하 자본거래 영수(제7-2조제9호)

변경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은행 장(인)  
 경유확인:

위 신청을 지정(변경지정) 확인함 지정확인번호  
 은행부(점)장(인) 지 정 일 자 20 .

<지침서식 제1-3호>

외국환거래관련자료 제출 집계표						
제출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			제출 년월일		
	은행명	( )은행 ( )지점·부		제출처	국세청 관세청	
	취급기관 코드					
	전화번호					
제출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제 항				
매 수		천	백	십	일	매
합계금액						

※ 외국환거래규정 또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 한도관리대장이나 신고(수리)서  
사본 등을 제출토록 한 경우에는 동 사본을 첨부함

## 지 급 신 청 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겸용]

신	상 호 또 는 성 명 (Applicant)	한 글(KOREAN)		
		영 문(ENGLISH)		
청	사 업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내 국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인	외 국 인(해외교포)	여 권 번 호		
	주 소	Tel:		
신	송 금 방 법(Send By)	<input type="checkbox"/> 전신송금(TT) <input type="checkbox"/> 전신송금(CRS) <input type="checkbox"/> 전신송금(DD) <input type="checkbox"/> 전신송금(MT)		
	송 금 액(Amount)	(US\$ )		
청	수 취 인 (Beneficiary)	성 명 (Name)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Address)		
내	수취인거래은행 (BNF'S Bank)	(Tel)		
		국 적		
용	지 급 사 유	은행명 · 주소(Bank Name & Address)		
		수취인계좌번호(BNF'S A/C No)		
		국외수수료부담 (Charge)	<input type="checkbox"/> 수취인 (Beneficiary)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Applicant)
	해 외 여 행 경 비 등 의 경 우 기 재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input type="checkbox"/> 귀행을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에 외 포함)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 후 본 서식 상단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할 것).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귀행 영업점에 비치된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따른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지급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이 신청서는 외국환통계자료로 활용하며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함		지 정 확 인 번 호		
		지 정 일 자		
		년	월	일
		은행장		(인)

※ 본 신청서는 대외지급수단의 휴대반출에 따른 근거서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여행 확인서

은행장 귀하

년 월 일

외국환거래규정 제 4-5조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4장 제1절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외 여행을 확인합니다.

1. 여행자명 :

2.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3. 여행지역 :

4. 여행목적 :

5. 여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장(인)

<지침서식 제4-2호>

## 지 급 확 인 서

(연간 지급누계 10만불 초과 선교·구호·기부금 등 송금용)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20 . . . . .

신청인 : \_\_\_\_\_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 급 금 액	(USD상당금액: _____ )	수 취 인	
		수취인과의관계	
지 급 사 유	※ 송금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것		
<p>본인은 신청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동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에 의거 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 등에 통보됨과 신청내용이 허위기재로 판명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이에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_____ (인)</p>			

위 신청을 확인함

년      월      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_\_\_\_\_ (인)

- <첨부서류>
1. 거래 또는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3.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침서식 제4-3호>

## 영 수 확 인 서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20 . . . . .

영수인 : \_\_\_\_\_ (인)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영 수 금 액	(USD상당금액 : _____ )			송 금 인	
				송금인과의관계	
영 수 사유	구분	무역	용역 및 서비스	증여	기타
	※ 영수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것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상기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동 내용은 외국환거래 규정 제4-8조에 의거 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 등에 통보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이 허위기재로 판명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응분의 제재를 받겠습니다.</p>					

년      월      일

영 수 인 \_\_\_\_\_ (인)

※ 규정 제7-2조제9호에 의한 자본거래신고 면제를 하기 위하여 영수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하여야 함

※ 동 확인서는 Fax. 또는 스캔방식에 의한 E-mail로 제출이 가능함

<지침서식 제4-4호>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실 보고서			
위반자	성 명		실 명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위반 거래 내용	거 래 종 류		
	거 래 일 자		
	거 래 금 액		미 화 환 산 ( 천 미 달 러 )
	거 래 상 대 방		국 적
	거 래 내 용		
위반자 확인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반자: (인)		
위 반 사 항 및 관 련 규 정		보 고 번 호	
		확 인 자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동 규정 제4-2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인)			

210mm×297mm

- <첨부서류> 1. 실명증표(주민등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경위서(위반거래관련 사실관계 및 법규위반 경위를 자유롭게 기술)  
 3.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송금내역 등)

<지침서식 제5-1호>

상호계산계정 결산대차기잔액처분(변경) 신고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및 상호  
성 명 (인) 전화번호

아래와 같이 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잔액 송금(영수)을 신고합니다.

처 분 방 법	송 금 · 영 수	금 액	
		송 금 처	
		송 금 방 법	
		송 금 은 행	

위와 같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함

신고번호	
유효기간	

년 월 일

은행장(인)

<지침서식 제5-2호>

상호계산계정 폐쇄 신고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및 상호  
성 명 (인) 전화번호

아래와 같이 상호계산계정의 폐쇄를 신고합니다.

계 정 상 대 방	
대 차 기 잔 고	
폐 쇄 사 유	
기 타	

위와 같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은행장(인)

<지침서식 제7-2호>

## 해 외 예 금 입 금 보 고 서

보고인 상 호 : \_\_\_\_\_ 주 소 : \_\_\_\_\_  
대표자 성명<sup>1)</sup>                      ① 보고자(직위·성명) : \_\_\_\_\_ 전화번호 \_\_\_\_\_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천미불)

개설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금 일자	예금 종류 <sup>2)</sup>	예금 기관명	계좌 번호	입금액 <sup>3)</sup>	입금 재원 <sup>4)</sup>	국가명 <sup>5)</sup>

- 주 : 1) 개인인 경우 대표자란에 성명을 기재할 것  
2) 정기예금, 보통예금(당좌예금 포함), 기타로 구분 기재할 것  
3) 미화 이외의 통화로 입금할 경우에는 미화금액을 병기할 것  
4) 수출대금, 용역대금, 부동산처분대금, 외화증권처분대금, 예금(신탁)처분대금, 기타로 구분 기재할 것  
5) 예금기관 소재 국가명을 기재할 것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 보고서

(                    년 중)

보고기관	개설인명			
	주 소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보 고 자	직위·성명		전화번호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은행			부(점)

예금종류 <sup>1)</sup>	예금기관명 <sup>2)</sup>	계좌번호	국가명 <sup>3)</sup>

- 주 : 1) 정기예금, 보통예금(당좌예금 포함), 기타로 구분 기재할 것  
 2) 모든 해외예금 기관 및 계좌에 대하여 작성할 것  
 3) 예금기관 소재 국가명을 기재할 것

(단위 : 천미분)

전년말잔액 (A)	연중 입금액(B)		연중 출금액(C)			연중이자 (D)	금년말잔액 (A+B-C+D)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국내송금	(    )	(    )	국내회수	(    )	(    )	(            )
	해외입금			해외처분			
	수출대금			수입대금			
	외화증권 처 분			지 급 외 화 증 권 취 득			
	예금·신탁 처 분			예 금·신탁 예 처			
	기 타			기 타			
	계	(    )	(    )	계	(    )	(    )	

주: 해외예금 거래내역을 표기하되 해외신탁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    ) 안에 해외신탁 거래내역을 통합하여 표기할 것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한국은행총재 귀하

년    월    일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상환 현황보고서

(      년      분기 중 )

제출자: \_\_\_\_\_

(단위 : 해당통화)

[차주정보]				[대주정보]	
차 주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 주 명	대주소재국

[차입내용]										
차입 근거법 <sup>1)</sup>	신고번호	지 정 거 래 외국환은행 지점명	자금용도	계약 통화	계약금액 (A)	최초차입일자	만기일자	기차입액 (B)	당 월 차입일자	당월차입액 (국내예치액) (C)

[차입내용]							[해외외화 보유내역]				
차입누계 (D=B+C+L)	미차입액 (E=A-D)	기원금상환액 (F)	당 월 상환일자	당월원금상환액 (해외송금분)(G)	당월원금상환액 (기타상환)(H)	상환잔액 (I=D-F-G-H)	당월이자 상 환 액	해 외 예치일자	해 외 예치은행명	해외예치은 행 BIC코드	전 월 말 예치잔액(J)

[해외외화 보유내역]						[차입조건]						
당 월 예치액 (K=L+M)	당 월 차입액(L)	당 월 예치이자 (M)	당 월 인출액 (N=O+P)	국내입금액 (O)	해외사용액 (P)	당월예치 잔액 (Q=J+K-N)	이자 유형 <sup>2)</sup>	변동금리 구분 <sup>3)</sup>	금리 통화	금리 수준 <sup>4)</sup>	금리스프레드 (변동금리) <sup>5)</sup>	이자 지급주기 <sup>6)</sup>

[차입조건]			[지급보증]		
Option 종류 <sup>7)</sup>	Option 행사일	상환방법	지급보증 기관 <sup>8)</sup>	지급보증기관 본점국적국	지급보증기관명

- 주: 1) 1:외국환거래규정, 2:공공자차관도입에 관한 법률, 3:외국인투자촉진법  
 2) 1:고정, 2:변동  
 3) 이자유형이 “2:변동”인 경우 반드시 입력, 1:LIBOR, 2:SIBOR, 3:TIBOR, 4:HIBOR, 5:EURIBOR, 6:EURO-LIBOR, 7:JPY LIBOR,  
 8:USLIBOR, 10:SOFR, 11:SOFR Term Rate, 12:SOFR average, 13:SONIA, 14:ESTR, 15:SARON, 16:TONA, 99:기타  
 4) 연 %, 확정금리인 경우에만 입력  
 5) 변동금리는 스프레드(bp)를 별도 기재  
 6) 월단위로 숫자만 기재  
 7) 1:Call Option, 2:Put Option  
 8) 1:국내은행, 2:수출보험공사, 3:정부, 4:해외금융기관, 5:본사, 6:공기업, 7:외은지점, 8:관계회사, 9:국내기업, 10:해외기업, 99:기타

## 거주자의 해외 증권발행 및 상환 현황보고서

(    년    분기 중 )

제출자: \_\_\_\_\_

(단위 : 해당통화)

[차주정보]				[대주정보]	
발행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	담당자전화번호	대주명	대주소재국

[발행내용]										
신고번호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지점명	발행일자	발행시장 소재국	자금용도	증권종류 <sup>1)</sup>	발행 통화	발행금액(A)	만기일자	당월국내 예치일자	당월 국내예치액

[발행비용]								[해외외화 보유내역]			
기원금상 환액(B)	당월 상환일자	당월원금상환액 (해외송금분)(C)	당월원금상환액 (기타상환)(D)	상환잔액 (E=A-B-C-D)	당월이자 상환액	당월주식 전환액 <sup>2)</sup>	당월말주식 전환누계액 <sup>3)</sup>	해 외 예 치 일 자	해 외 예 치 은 행 명	해 외 예 치 은 행 BIC 코 드	전 월 말 예 치 잔 액 (F)

[해외외화 보유내역]							[발행조건]					
당월 예치액 (G=H+I)	당월 발행대금 (H)	당월 예치이자 (I)	당월 인출액 (J=K+L)	국내입금액(K)	해외사용액 (L)	당월말 예치잔액 (M=F+G-J)	표면 금리	발행비용 (%)	이자 유형 <sup>4)</sup>	변동금리 구분 <sup>5)</sup>	금리 통화	금리 수준 <sup>6)</sup>

[발행조건]							[지급보증]		
금리스프레드 (변동금리) <sup>7)</sup>	이자지급 주기 <sup>8)</sup>	Option 종류 <sup>9)</sup>	Option 행사일 <sup>10)</sup>	SWAP 종류 <sup>11)</sup>	권리행사일 (CB, BW) <sup>12)</sup>	상환방법	지급보증 기관 <sup>13)</sup>	지급보증기관 본점국적국	지급보증기관명

- 주: 1) 11:주식, 21:DR, 22:CB, 23:BW, 24:EB, 25:주식형수익증권, 31:Straight Bond, 32:FRN, 33:CD, 34:FRCD, 35:Structured Note, 36:CP, 37:채권형수익  
증권, 38:Bill of Exchange, 39:Banker's Acceptance, 40:Promissory Note, 41:회전금융증서, 51:환율연계형채권, 52:주가지수연계형채권, 53:신용  
연계형채권, 54:기타연계형채권, 61:내국수입USANCE, 71:국내 외화대출채권, 72:역외펀드지분, 99:기타
- 2), 3) 발행증권이 CB, BW인 경우 기재
- 4) 1:고정, 2:변동
- 5) 이자유형이 “2:변동”인 경우 반드시 입력, 1:LIBOR, 2:SIBOR, 3:TIBOR, 4:HIBOR, 5:EURIBOR, 6:EURO-LIBOR, 7:JPY LIBOR,  
8:USLIBOR, 10:SOFR, 11:SOFR Term Rate, 12:SOFR average, 13:SONIA, 14:ESTR, 15:SARON, 16:TONA, 99:기타
- 6) 연 %, 확정금리인 경우에만 입력
- 7) 변동금리는 스프레드(bp)를 별도 기재
- 8) 월단위로 숫자만 기재
- 9) 1:Call Option, 2:Put Option
- 10) Option이 2개인 경우 계속하여 행사일을 기재(예:19990229-19990309)
- 11) 1:금리스왑, 2:통화스왑, 3:기타
- 12) 차입형태가 CB로 실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한 경우 상환보고를 하면서 “당월주식전환액”을 반드시 입력
- 13) 1:국내은행, 2:수출보험공사, 3:정부, 4:해외금융기관, 5:본사, 6:공기업, 7:외은지점, 8:관계회사, 9:국내기업, 10:해외기업, 99:기타



<지침서식 제7-11호>

(            )매 매 신 고 ( 보 고 )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직 업)	
신청내역	매 각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매 입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매 매 대 상 물 종 류	
	매 매 금 액	(미불화 상당액)
	원 화 금 액	(원 화 환 율)
	매 매 사 유	
<p>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외국환은행의 장 귀하</p>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고기관 :		은행장(인)

210mm×297mm

-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2. 매매대상물 취득 증빙서류

<b>금 전 의 대 차 계 약 신 고 ( 보 고 ) 서</b>		처리기간
신청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 )
	업 종(직 업)	
신청내역	차 주	
	대 주	
	통 화 및 금 액	
	차 입 / 대 출 일	
	적 용 금 리	(All-in Cost : )
	대 차 기 간	
	사 용 용 도	<input type="checkbox"/> 국내사용 <input type="checkbox"/> 현지사용
상 환 방 법		
<p>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외국환은행의 장 귀하</p>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필함 신고조건 :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 고 기 관 :		인

210mm×297mm

- <첨부서류> 1. 차입(대출)계약서  
 2. 금융기관보증서(보증시에 한함)

<b>보 증 계 약 신 고 ( 보 고 ) 서</b>		처리기간
신 청 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 )
	업 종(직 업)	
신 청 내 역	보 증 채 권 자	
	보 증 채 무 자	
	보 증 수 혜 자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보 증 용 도	<input type="checkbox"/>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원리금상환 보증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input type="checkbox"/>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보증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현지법인의 해외리스에 대한 국내본사등의 보증 <input type="checkbox"/> 국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의 보증 <input type="checkbox"/> 주채무계열 소속 30대계열기업체의 장기차입에 대한 보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 환 방 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div>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청인 귀하	신 고 번 호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필함 신고조건 :	신 고 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 고 기 관 : (인)		

210mm×297mm

- <첨부서류> 1. 보증사유 증빙서류  
2. 보증계약서

<b>증 권 발 행 신 고 ( 보 고 ) 서</b>			처리기간
신청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직 업)		
대리인	상 호 기 타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증 권 종 류	액면 금액 및 수량	
	발 행 금 액	발 행 방 법	(공모, 사모)
	계약 체결 시기 및 장소	발행 시기 및 장소	
	상 장 여 부	(상장시: 증권거래소)	
	표 면 금 리	발 행 가 격	
	만 기	해 외 판 매 여 부	
	배 당 금 지 급 시 기 및 방 법		
	원 리 금 상 환 방 법		
	발 행 비 용	(All-in Cost: )	
	자 금 용 도		
발 행 관 련 기 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필함 신고조건 :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 고 기 관 :	인

210mm×297mm

<첨부서류> 1. 발행계획서 등



<지침서식 제7-21호>

( ) 변경 [ 신고(수리)보고서 ]

외국환은행장 귀하

신고인 상호 또는 성명 : (인)
주소 또는 소재지 :
전화번호 :

아래와 같이 ( ) 변경신고(수리)를 신청합니다.

1. 기 신고(수리)사항 :
가. 신고(수리)번호 : (20 . . .)
나. 금 액 :
2. 변경내용
3. 변경사유(요약)

붙임서류 : 1. 당초 신고(수리)서 2. 변경사유 입증서류
3. 기타 내용변경 신고(수리)시 필요서류

위의 ( ) 변경을 다음과 같이 신고(수리)함

Table with 2 columns: Item, Value. Rows: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유효기간

년 월 일

외국환은행의 장 (인)

## 현지금융 차입·상환·보증등 한도 운영현황 보고서

(20 . 월말 현재)

제출자 :

(단위 : 천미분)

보고업체명 <sup>1)</sup> (본사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차주 <sup>2)</sup>	대 주 <sup>3)</sup>		차입구분 <sup>4)</sup>		차입잔액 <sup>6)</sup>	금리 <sup>7)</sup> (bp)	차입일 <sup>8)</sup>	만기일 <sup>8)</sup>	보증 <sup>9)</sup>	용도 <sup>10)</sup>	신규· 연장내역 <sup>11)</sup>
			대주지역	외화증권 <sup>5)</sup>	외화증권 <sup>5)</sup>	외화증권 <sup>5)</sup>							
계													

- 1) 보고업체명 : 한글 6자 이내 기재
- 2) 차주 : 1(국내기업), 2(현지법인)
- 3) 대주 : 1(한국계), 2(미국계), 3(일본계), 4(유럽계), 5(기타계)      대주지역 : 점포소재 국가명(한글 5자 이내) 기재
- 4) 차입구분 : 1(현지금융), 2(역외금융), 3(외화증권)      <국내외화대출은 제외, 역외금융의 경우 대주지역은 “한국”으로 표기>
- 5) 외화증권 : 21(DR), 22(CB), 23(BW), 31(SB), 32(FRN), 36(CP), 99(기타)      <위 4) 항목(차입구분)에 “3”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 6) 차입잔액 :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차입잔액(자기신용분 포함)을 기재하며 이중통화의 경우 보고당시 송금환율로 환산된 미달러화를 기재
- 7) 금리 : 고정금리인 경우 금리수준(%), 변동금리인 경우 기준금리+스프레드(bp) 형태로 기재(예: EURIBOR + 280)
- 8) 일자 : 일자단위로 8자리 숫자를 기재(예 : 2002.01.01)
- 9) 보증 : 1(외국환은행), 2(본사), 3(계열사), 4(자기신용), 5(기타보증)      <차주(국내기업, 현지법인) 본인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은 자기신용으로 분류>
- 10) 국내기업 용도 : 01(해외건설), 02(원양어로), 03(경상운항), 05(해외직접투자), 99(기타 : 항공기등 도입착수금, 해외 광고선전비, 기존차입금 상환 등)      현지법인 용도 : 21(무역관련), 22(건설관련), 23(원양어로), 24(경상운항), 25(운영자금), 26(시설관련), 27(자회사투자관련), 39(기타)
- 11) 해당 연도 신규 또는 연장(일부연장 포함)된 내역을 기재 : 1(신규), 2(연장), 3(만기미도래), 4(연체)
- 12) 외은지점의 경우 역외금융 취급분 및 현지금융 보증취급분의 경우에는 동 수혜업체의 국내본사가 각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보고하는 바 국내업체 중 외은지점을 현지금융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 한 경우에만 보고대상이 됨
- 13)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의2 제3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임



# 사업계획서

증권투자(1.신규투자 2.증액투자)  대부투자  제재기관 보고후 사후신고

## 1. 투자자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설립연월일	
소재지(주소)			
투자자 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비영리단체 등)		
투자자 법인성격	<input type="checkbox"/> 실제영업법인 <input type="checkbox"/> 특수목적회사(SPC) <sup>1)</sup>		
외국인투자기업 <sup>2)</sup> 여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 최대주주명: (지분율: %) <sup>3)</sup> - 최대주주 소속 국가 :	
총 자산	백만원	자기자본(자본금)	( )백만원
업종 (제품)		담당자 및 연락처	

- 주) 1. SPC는 고용, 생산활동 및 물적 실체가 거의 없으며, 자산·부채는 타국에 대한 또는 타국으로부터의 투자로 구성되고 해외직접투자자에 의해 관리되는 법인임  
 2.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출자한 기업임  
 3.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소속국가: \_\_\_\_\_  
 및 최대주주명: \_\_\_\_\_ (지분율: %)

## 2. 현지법인 현황

법인명		대표자	
법인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외자원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법인설립 <input type="checkbox"/> 법인미설립	설립(예정)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자본금 미납입
총자본금		종업원수	한국인: 명, 현지인: 명
투자형태 <sup>1)</sup>	<input type="checkbox"/> 단독투자 <input type="checkbox"/> 공동투자 <input type="checkbox"/> 합작투자(지분율: %)		
주투자자 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성격	<input type="checkbox"/> 실제 영업법인 <input type="checkbox"/> 특수목적회사(SPC) -최종 투자목적국: -최종 투자업종:	설립형태	<input type="checkbox"/> 신설법인 설립 <input type="checkbox"/> 기존법인 지분인수 -지분인수비율: % (구주: %, 신주: %) <sup>2)</sup>
지배구조	<input type="checkbox"/> 비지주회사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자회사수: 개, 주된 매출 자회사 업종: )		
투자목적 (택일)	<input type="checkbox"/> 자원개발 <input type="checkbox"/> 수출촉진 <input type="checkbox"/> 보호무역타개 <input type="checkbox"/> 저임활용 <input type="checkbox"/> 선진기술 도입 <input type="checkbox"/> 현지시장 진출 <input type="checkbox"/> 제3국 진출		

- 주) 1. “공동투자”는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작투자”는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함  
 2. 구주 및 신주 비율의 합은 지분인수비율임

### 3. 투자방법

#### ① 지분투자

취득증권	증권종류	주수	액면		취득가액	
			주당액면	합계	주당가액	합계
	취득가액이 액면과 상이할 경우 그 산출근거 <sup>1)</sup>					

주) 관련 증빙서류 필수 첨부

출자형태	①현금		②현물	
	③주식		④이익잉여금	
	⑤기술투자		⑥기타( )	
합 계	(①+②+③+④+⑤+⑥)			

출자자명		출 자 전		금회출자		출 자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국 측 (①)							
현지 측 (②)							
제3국 (③)							
합 계(①+②+③)			100.0		100.0		100.0

#### ② 대부투자

대 부 액		자금용도	
이 율		기 간	
원금상환방법		이자징수방법	
대부자금 조달방법	자기자금	차 입 금	

4. 사업 개요 및 투자 필요성

5. 현지법인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단위 : 미불)

자 금 운 용		자 금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토 지 건 물 기계설비 운영자금		차 입 금  자 본 금	

※ 자금운용금액과 자금조달금액의 합은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총자본금(2. 현지법인 현황 中) : 현지법인의 납입(예정)자본금 총액을 기재
2. 취득증권(3. 투자방법-① 지분투자 中)
  - 1) 현지법인이 발행할 증권 중 신고인이 취득하게 될 증권의 내용을 기재
  - 2) 증권의 종류 : 신고인이 취득하게 될 증권의 종류 (예 : 보통주, 우선주, 출자증명서 등 기재)  
→ 중국, 베트남 등 주식회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인 경우 출자증명서로 기재
  - 3) 주수 : 신고인이 취득하게 될 증권의 수량
  - 4) 액면(주당액면, 합계) : 취득예정 증권의 1주당 주당액면가와 액면가액 총액을 기재  
→ 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 합계란만 기재
  - 5) 취득가액(주당가액, 합계) : 증권의 실제 취득가액 (1주당 가액과 총 취득가액)
  - 6) 취득가액이 액면과 상이할 경우 그 산출근거 → 전문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등의 의견(평가서 등)서를 첨부
3. 출자형태(3. 투자방법-① 지분투자 中) : 현금, 현물, 주식, 이익잉여금, 기술투자, 기타로 구분
  - 1) 현금 : 신고인이 현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 2) 현물 : 신고인이 기계장치, 집기 등을 투자하는 경우
  - 3) 주식 :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 4) 이익잉여금 :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 5) 기술투자 : 신고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자지분을 인정받는 경우
4. 출자자명(3. 투자방법-① 지분투자 中)
  - 1) 출자자명 : 한국 측과 현지 측의 투자자 상호(개인인 경우 개인성명)를 기재하되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투자자 별로 기재
  - 2) 출자 전 금액 및 비율 : 기존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기 설립된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신규법인 설립시 생략
  - 3) 금회출자 금액 및 비율 : 금번 투자할 출자금액과 비율을 기재하여 기존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인 측의 투자금액만큼 양도인 측의  
투자금액이 감소하게 됨
  - 4) 출자금액 및 비율 : 출자 전과 금회 출자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자본금의  
구성내역을 기재

※ 2.현지법인현황의 “총자본금”은 3.투자방법의 “출자 후 합계금액” 및 해투신고서상  
“자본금”과 일치해야 함
5. 현지법인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 1) 자금운용 : 국내 투자자의 출자 전과 금회출자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자본  
금으로서, 현지법인에서 운용할 항목(토지, 건물, 기계설비, 운영자금)을 각각 금  
액으로 기재
  - 2) 자금조달 : 국내 투자자가 차입금과 자본금 등으로 조달할 금액을 기재

※ 자금운용금액과 자금조달금액의 합은 일치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보고) 관련 유의사항**

1.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지정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2. 현지법인의 지분을 변경 또는 자(손자)회사의 설립 투자금액변경 내용변경 보고대상에 포함됨
3. 해외직접투자 유효기간 연장, 대부투자기한 연장, 대부투자 상환방법·금리변경 등의 경우에는 내용변경 보고가 아닌 내용변경 신고대상임
4. 증액투자는 내용변경보고대상이 아닌 신규신고 대상임
5. 신고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내용변경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자(손자) 회 사 사 업 계 획 서

자회사 설립     손자회사 설립     기타

(담당자명 : \_\_\_\_\_)

전화번호 : \_\_\_\_\_ )

### 1. 현지법인 현황

현 지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주 소)			
총 자 산		자 본 금	
업 종(제 품)		설 립 등 기 일	

### 2. 자(손자)회사 현황

자(손자)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주 소)	설 립 (예 정) 일		
자 본 금		종 업 원 수	한국인 명, 현지인 명
투 자 형 태	<input type="checkbox"/> 단독투자 <input type="checkbox"/> 합작투자(지분율 : %)	업 종(제 품)	
법 인 성 격	<input type="checkbox"/> 실제 영업법인 <input type="checkbox"/> 특수 목적회사(SPC) - 최종 투자 목적국 : _____ - 최종 투자 업종 : _____	설 립 형 태	<input type="checkbox"/> 신설법인 설립 <input type="checkbox"/> 기존법인 지분인수 - 지분인수비율: _____%
투 자 목 적 (택 일)	1. 자원개발    2. 수출촉진    3. 보호무역타개    4. 저임활용 5. 선진기술 도입    6. 현지시장진출    7. 제3국 진출		

### 3. 투자 내용

취 득 증 권	증권종류	주수	액면		취득가액	
			주당액면	합계	주당가액	합계
	취득가액이 액면과 상이할 경우 그 산출근거					

출 자 형 태	① 현 금		② 현 물	
	③ 주 식		④ 이 익 잉 여 금	
	⑤ 기 술 투 자		⑥ 기 타( )	
합 계	(①+②+③+④+⑤+⑥)			

출 자 자 명		출 자 전		금 회 출 자		출 자 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한국 측							
	소 계(①)						
현지 측 (②)							
제3국 (③)							
합 계(①+②+③)			100.0		100.0		100.0

#### 4. 사업의 개요 및 투자의 필요성

#### 5. 자(손자)회사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단위 : 미불)

자 금 운 용		자 금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토지		차입금	
건물			
기계설비		자본금	
운영자금			

##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보고)서

### 1. 양도인

상 호 또는 성 명	(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주 소)			
투 자 자 규 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개인		

### 2. 양수인

상 호 또는 성 명	(인)	대 표 자 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담당자 및 연락처	(Tel.)		
소 재 지(주 소)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은행	지점	
투 자 자 규 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개인		

### 3. 양수도 현지법인 현황

법 인 명		설립등기일	
소 재 지(주 소)			
신 고 일 자		신 고 번 호	
투 자 내 역	<input type="checkbox"/> 투자금액 : <input type="checkbox"/> 투자비율 :                      %		

### 4. 양수도 내역 ( 전액양수도 부분양수도 )

투자지분 양도내역	<input type="checkbox"/> 투자금액 : <input type="checkbox"/> 투자비율 :                      %		
양 수 도 일 자		양 수 도 가 액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보고)합니다.

년    월    일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 고 기 관 :

(인)

#### 【첨부서류】

- 가. 양수도계약서
- 나.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다.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표(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 라.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개인에 한함)

##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보고) 관련 유의사항**

1. 양수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동 신고(보고)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별지 제9-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2.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보고) 후 양도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당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으로 이관해야 함(부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본 송부)
3. 양수인은 자신의 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고 적정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4. 비거주자에의 전액지분 매각은 규정 제9- 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에 따름
5. 양수도 당사자가 해외직접투자 양수도에 따른 신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주요항목 기재 요령**

-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 건이 다수인 경우 최초의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기재
- 투자지분 양도내역 : 계약서상 표시된 양도금액과 지분율을 정확히 기재
- 양수도내역 : 계약서상의 실제 양수도일자(잔금일자/대금결제일자) 및 양수도가액 기재

## 송 금 (투 자) 보 고 서

1. 투자자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2. 투자내용

가.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

나. 투자국명 :

다. 투자업종 :

라. 현지법인명 :

3. 송금상대방

가. 수 취 인 :

나. 계좌번호 :

4. 투자(송금)내용

가. 투자신고액

(1) 증권투자 : US\$ (현지화 : )

(2) 대부투자 : US\$ (현지화 : )

(3) 기타( ) : US\$ (현지화 : )

나.투자(송금)내용

자금조달재원	일 자	투자(송금)액 (US\$환산액)	투자방법	비 고 (현지화)
현 금				
현 물				
주 식				
이 익 잉 여 금				
기 술 투 자				
기타( )				

5. 첨부서류

가. 수출신고필증(현물출자인 경우) 등

1) 본 보고서는 투자(송금)후 즉시 제출할 것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경우 송금 CABLE(전신문) 등으로 송금(투자) 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음



##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 관련 유의사항**

1.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의 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취득일, 법인명, 액면가액 등 일치 여부 확인할 것)
2. 해외투자자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회사설립 내용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중국의 경우 공증서)과 해외투자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내용을 나타내는 증권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현지법 상 증권발행이 없는 경우(중국, 베트남, 독일 등)에는 증권사본 대신에 해외투자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 중국의 경우, 협자보고서 등
3. 투자금액 또는 대여자금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주요항목 기재 요령**

- 납입자본금 : 본 보고금액 포함한 보고시점까지의 현지법인의 납입 총 자본금을 기재
- 증권종류 : 보통주, 우선주 등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아님
- 액면가액 :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가×수량
- 취득가액 : 계약상 취득한 증권의 주당 가격×수량, 혹은 계약상 취득가액  
※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
- 증권발행 여부 : 증권발행과 증권미발행 중 선택하며, 증권미발행인 경우 출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채권취득일 : 차주에게 자금이 입금된 날짜
- 대부원금 : 신고금액이 아닌 채권취득 보고대상금액(송금액) 기재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청산       대부채권 회수

1. 투자자 현황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상 호 또는 성 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주 소)	

2.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현 지 법 인 명			
소 재 지(주 소)			
법 인 형 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외자원개발사업	납 입 자 본 금	
투 자 형 태 <sup>주1)</sup>	<input type="checkbox"/> 단독투자 <input type="checkbox"/> 공동투자 <input type="checkbox"/> 합작투자(한국 측 투자비율 :      %)		

주1) “공동투자”라 함은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합작투자”라 함은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3. 대부금 회수 내역

		일자	원금
대부금액			
회수 금액	기 회수금액		
	금회 회수금액		
잔액			

4. 잔여자산 회수 내역

가. 해산개시일(해산등기일) :

청산종료일 :

나. 청산등기일 현재의 재산상황

(단위 :      )

자 산	금 액	부 채 및 자본	금 액
유 동 자 산 투 자 및 기 타 자 산 고 정 자 산 이 연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이 연 본 금 자 인 여 금	
계	(US\$                      )	계	(US\$                      )

\* 환산율 : US\$ 1=

다. 청산손익(해산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손익) :

라. 회수되어야 할 재산[("나"의 순재산액±"다")×한국측 투자비율] :

마. 회수재산 내역

(단위 : )

회수일자 \ 구분	회수재산의 종류	금 액	비 고
계			

주)금액단위가 US\$이외인 경우는 US\$에 의한 환산액을 비교란에 기입할 것

바.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

## 5. 첨부서류

가. 청산인 경우

-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전의 대차대조표
- 잔여재산(증권의 전부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 증명서(송금처 명기),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나. 대부채권 회수인 경우

- 외환매입 또는 예치증명서(송금처 명기)

※ 1) 본 보고서는 국내회수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에 보고할 것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 관련 유의사항**

1. 청산 즉시 잔여재산 또는 원리금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 즉시 신고기관의 장에게 청산보고를 해야 함
2. 비거주자에게 지분 전액 매각은 청산절차에 준하여 보고해야 함
3. 청산보고서 내용과 첨부서류 내용이 일치해야 함
4.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청산시 회수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5. 청산 후 분배잔여재산을 외국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청산 보고를 한 후 해외에서 운용 가능함
6. 잔여재산을 회수하지 않거나 청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주요항목 기재 요령

- 해산개시일 : 현지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현지국의 법원에 해산등기를 한 날
- 청산종료일 :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현금화하여 투자 지분율에 따라 현금 수취를 종료한 날
- 청산등기일 현재의 재산상황 : 해산등기일 현재의 요약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
- 청산손익 : 해산개시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손익
- 회수되어야 할 재산 : 요약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청산손익)×한국 측 투자비율
- 회수재산내역 : 회수일자 별 회수재산의 종류 및 금액

투자잔액 1,000만불 초과 기업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결산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 1. 한국투자자(모기업) 개요

투자자명		계열명	
담당자	소속부서:	직성명:	전화:
업종(중분류) <sup>1)</sup>	자기자본	백만원 사후관리은행	
투자자 법인성격	<input type="checkbox"/> 실제영업법인	<input type="checkbox"/> 특수목적회사(SPC)	
외국인투자기업 <sup>2)</sup>	<input type="checkbox"/> 예		
여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최대주주명 :	(지분율 :    %) <sup>3)</sup>
		- 최대주주 소속 국가 :	

- 주) 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 병기(예 : 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  
 2.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출자한 기업을 말함  
 3.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소속국가: \_\_\_\_\_  
 및 최대주주명: \_\_\_\_\_ (지분율:    %)

## 2. 현지법인 개요

법인명 <sup>1)</sup>		대표자	
소재지 (국가, 주, 성) <sup>2)</sup>			
투자업종 <sup>3)</sup>	주요취급품목 <sup>4)</sup>		
인원현황	임원: ( ) 관리직: ( ) 생산직: ( ) 영업직: ( ) * ( )는 한국인		
설립등기일	영업개시일		
법인성격	<input type="checkbox"/> 실제영업법인 <input type="checkbox"/> 특수목적회사(SPC) - 최종 투자목적국: - 최종 투자업종:	설립 형태	<input type="checkbox"/> 신설법인 설립 <input type="checkbox"/> 기존법인 지분인수 - 지분인수비율:    % (구주:    %, 신주:    %) <sup>5)</sup>
투자형태 <sup>6)</sup>	<input type="checkbox"/> 단독투자 <input type="checkbox"/> 공동투자 <input type="checkbox"/> 합작투자(한국 측 투자비율:    %)		
지배구조	<input type="checkbox"/> 비지주회사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자회사수:    개, 주된 매출 자회사 업종:    )		

	국가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	순투자액 <sup>8)</sup> (천미불)		계열여부 <sup>9)</sup>
			금기말	전기말	금기말	
주 주 현 황 <sup>7)</sup>						
			합 계	100.0		
현지법인 자본현황			전기말		금기말	
		자 본 금	천미불		천미불	
		자본잉여금	천미불		천미불	
		자본조정	천미불		천미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천미불		천미불	
		이익잉여금	천미불		천미불	
		합 계(A)	천미불		천미불	
한국투자자 지분투자 내역		한국투자자 지분율 합(B)	%		%	
		지분투자(A×B)	천미불		천미불	

- 주) 1. 현지법인의 법정상호는 영어 full-name으로 기재하고 법적명칭이 영문이 아닌 경우에도 ( ) 안에 영문명칭을 반드시 함께 표시. 중국 및 일본의 경우는 한자명칭을 < > 안에 함께 표시함
2. 국가명은 영문기재를 원칙. 중국은 성(省), 미국은 주(州)를 포함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토록 법정소재지를 상세히 기재. 중국의 성(省)은 국·한문 모두 기재하며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국가로 기재함
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 병기(예: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함
4. 제조업, 무역업의 경우 현지법인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주요 제품명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경우 세부사업내용을 기재(예:신사의류제조)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품목 및 매출비중을 기재함
5. 구주 및 신주 비율의 합은 지분인수비율임
6. “공동투자”는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작투자”는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함
7. 주주현황은 지분율 합이 100이 되도록 투자자 모두를 국가별로 기록하여야 함
8. 순투자액은 투자액에서 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록함
9. 계열여부 코드: 한국 측 최대지분투자자 또는 한국 측 최대지분투자자와 계열관계(1), 한국 측 최대지분투자자와 비계열관계(2)

### 3. 현지법인에 대한 한국투자자 대부투자 내역 (금기말 현재)

대부투자	대여금 (단위 :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 지분율 10% 이상 투자자				
	만	지분율 10% 미	주투자자 관계사 <sup>1)</sup>		
			기 타		
	계(A)				
	채권인수 <sup>2)</sup> (단위 :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 지분율 10% 이상 투자자				
	만	지분율 10% 미	주투자자 관계사 <sup>1)</sup>		
			기 타		
	계(B)				
합계(A+B)					

- 주) 1. 주투자자 관계사란 주투자자가 10% 이상 투자한 한국 소재 회사를 말함  
 2. 채권인수는 채권, 무보증회사채, 상업어음, 약속어음, 비참가적 우선주를 말함

### 4.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역투자<sup>1)</sup> 현황

	금액(천미불)		지분율(%)		배당금 및 이자 (금기,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전기말	금기말	
지분투자					배당금:
대부투자 (대여금 및 채권인수)					이 자:
매출채권					
합 계					

- 주)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10% 미만일 경우에만 역투자에 해당됨. 10% 이상일 경우에는 역투자가 아니라 독립된 직접투자에 해당됨

### 5. 현지법인 경영현황

#### 가. 현지법인의 투자자 및 근로자 앞 지급액<sup>1)</sup>

(단위 : 천미불)

배 당 금		한국투자자앞 대부이자지급액	한국투자자앞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한국인근로자앞 임금지급액
지급총액	한국투자자앞 지급액			

- 주) 당 회계기간 중 현지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기준

나. 현지법인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 (금기말 현재)

(단위 : 천미분)

차입처	코드 <sup>1)</sup>	차입 금액	보증자	코드 <sup>1)</sup>	차입기간		금리		용도 <sup>3)</sup>
					1년 미만	1년 이상	변동 <sup>2)</sup>	고정	

주) 1. 코드가 2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코드별로 분리 작성

①차입처코드 : 1.한국금융기관, 2.한국금융기관의 해외법인, 3.현지국금융기관,  
4.외국계금융기관, 5.관계회사(모기업 포함), 6.신디케이트론,  
7.회사채 등 기타

②보증자코드 : 1.관계회사(모기업 포함), 2.한국금융기관, 3.한국금융기관 해외법인,  
4.외국계 금융기관, 5.현지법인 물적담보, 6.현지법인 신용,  
7.합작투자자, 8.기타(구체적 기재)

2. 기준금리 + spread 형태로 기록할 것

3. 용도코드 : 1.시설자금, 2.운전자금, 3.채무상환, 4.기타(구체적 기재)

다. 현지법인의 판매처별 매출금액 및 비중 (당 회계기간 중)

	현지판매		대 한국 수출		제3국 수출		계
	관계회사앞	기 타	한국투자자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금액							
비중							100.0%

주) 관계회사는 국내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임

라. 현지법인의 매입처별 매입금액 및 비중 (당 회계기간 중)

	현지판매		대 한국 수입		제3국 수입		계
	관계회사앞	기 타	한국투자자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금액							
비중							100.0%

주) 관계회사는 국내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임

마.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sup>1)</sup>

(천미분)

자 산			부채와 자본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유동자산 (매출채권) -한국 투자자앞 -한국투자자의 관계사 <sup>2)</sup> 앞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관계회사출자금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1. 유동부채		
			(매입채무)		
			-한국 투자자앞		
			-한국투자자의 관계사 <sup>1)</sup> 앞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기타비유동부채)					
부채총계					
3. 자본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주) 1. 각 항목은 회계연도말 환율 적용.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대차대조표 작성

2. 한국 투자자의 관계사란 한국 투자자가 10% 이상 투자한 한국 소재 회사를 말함

바. 현지법인 손익계산서 (당 회계기간 중)

(천미분)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매출액			7. 영업외비용		
2. 매출원가					
(당기매입액)					
3. 매출총이익					
4. 판매비와관리비					
5. 영업이익					
6. 영업외수익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이자수익)	9. 법인세비용				
(외환차익)	10. 당기순이익				
(외화환산이익)					

주) 회계기간중 평균환율 적용.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손익계산서 작성

사.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현황

(1) 자회사

(단위 : 천미불)

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재무지표						
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 손자회사

(단위 : 천미불)

손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재무지표						
손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아.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현지법인 영업환경	구 분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현지업체와의 경쟁관계																	
	향후 영업전망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p>1.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복수선택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인사/노무관련 요인(고용/현지종업원 또는 노동조합과의 불화 등)</p> <p><input type="checkbox"/> 생산관련 요인(노동생산성/부품·원자재 조달)</p> <p><input type="checkbox"/> 마케팅관련 요인(홍보/판매)</p> <p><input type="checkbox"/> 재무관련 요인(현지금융 조달/과실 송금 등)</p> <p><input type="checkbox"/> 사회간접자본관련 요인(도로/항만/전력/용수 등)</p> <p><input type="checkbox"/> 현지국 정부의 간섭(과도한 준조세/현지기업과의 차별 등)</p> <p><input type="checkbox"/> 기타:</p> <p>2. 개선이 필요한 투자국의 법규나 제도(복수선택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노동관련 분야:</p> <p><input type="checkbox"/> 공장부지 확보 등 토지관련 분야:</p> <p><input type="checkbox"/> 분쟁해결 절차:</p> <p><input type="checkbox"/> 세제:</p> <p><input type="checkbox"/> 금융:</p> <p><input type="checkbox"/> 회계:</p> <p><input type="checkbox"/> 기타:</p>																	
현지법인 향후계획	<p>1. 현지법인의 향후 계획</p> <table border="1" data-bbox="365 1491 1278 1597"> <thead> <tr> <th data-bbox="365 1491 612 1541">철 수</th> <th data-bbox="612 1491 825 1541">투자축소</th> <th data-bbox="825 1491 1027 1541">현상유지</th> <th data-bbox="1027 1491 1278 1541">투자확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5 1541 612 1597"></td> <td data-bbox="612 1541 825 1597"></td> <td data-bbox="825 1541 1027 1597"></td> <td data-bbox="1027 1541 1278 1597"></td> </tr> </tbody> </table> <p>2. 현지법인 철수 및 이전 계획인 경우, 향후 투자 대상 국가</p> <table border="1" data-bbox="365 1648 1027 1693"> <thead> <tr> <th data-bbox="365 1648 612 1693">국가명</th> <th data-bbox="612 1648 1027 1693"></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5 1693 612 1715"></td> <td data-bbox="612 1693 1027 1715"></td> </tr> </tbody> </table>						철 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국가명			
철 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국가명																		
대 정부 건의사항																		



- 주) 1. 현지법인의 법정상호는 영어 full-name으로 기재하고 법적명칭이 영문이 아닌 경우에도 ( ) 안에 영문명칭을 반드시 함께 표시. 중국 및 일본의 경우는 한자명칭을 < > 안에 함께 표시함
2. 국가명은 영문기재를 원칙. 중국은 성(省), 미국은 주(州)를 포함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토록 법정소재지를 상세히 기재. 중국의 성(省)은 국·한문 모두 기재하며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국가로 기재함
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 병기(예: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함
4. 제조업, 무역업의 경우 현지법인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주요 제품명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경우 세부사업내용을 기재(예:신사의류제조)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품목 및 매출비중을 기재함
5. 순투자액은 투자액에서 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록함
6. 구주 및 신주 비율의 합은 지분인수비율임
7. “공동투자”는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작투자”는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함

### 3. 현지법인 자본현황 및 한국투자자 투자내역

현지 법인 자본 현황	자 본 금	천미불	한국투자자 지분을 합(B) :
	자본잉여금	천미불	
	자본조정	천미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천미불	
	이익잉여금	천미불	
	합 계(A)	천미불	
한국 투자자 투자 내역	지분투자(C)	천미불(A×B)	
	대부투자 <sup>1)</sup> 잔액(D)	천미불 (전기말: 천미불)	
	합 계(C+D)	천미불	

주) 대부투자는 대여금과 채권인수 금액을 합한 것이며, 채권인수는 채권, 무보증회사채, 상업어음, 약속어음, 비참가적우선주를 말함

### 4.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역투자<sup>1)</sup> 현황

	금액(천미불)		지분율(%)		배당금 및 이자 (금기,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전기말	금기말	
지분투자					배당금:
대부투자 (대여금 및 채권인수)					이 자:
합 계					

주)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10% 미만일 경우에만 역투자에 해당됨. 10% 이상일 경우에는 역투자가 아니라 독립된 직접투자에 해당됨

5. 현지법인 경영현황

가. 현지법인의 투자자 및 근로자앞 지급액<sup>1)</sup>

(단위 : 천미불)

배 당 금		한국투자자앞 대부이자지급액	한국투자자앞 로얄티 등 기타 지급액	한국인근로자앞 임금지급액
지급총액	한국투자자앞 지급액			

주) 당 회계기간 중 현지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기준

나. 현지법인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 (금기말 현재)

(단위 : 천미불)

차입처	코드 <sup>1)</sup>	차입 금액	보증자	코드 <sup>1)</sup>	차입기간		금리		용도 <sup>3)</sup>
					1년 미만	1년 이상	변동 <sup>2)</sup>	고정	

주) 1. 코드가 2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코드별로 분리 작성

- ①차입처코드 : 1.한국금융기관, 2.한국금융기관의 해외법인, 3.현지국금융기관, 4.외국계금융기관, 5.관계회사(모기업 포함), 6.신디케이트론, 7.회사채 등 기타
- ②보증자코드 : 1.관계회사(모기업 포함), 2.한국금융기관, 3.한국금융기관 해외법인, 4.외국계 금융기관, 5.현지법인 물적담보, 6.현지법인 신용, 7.합작투자자, 8.기타(구체적 기재)

2. 기준금리 + spread 형태로 기록할 것

3. 용도코드 : 1.시설자금, 2.운전자금, 3.채무상환, 4.기타(구체적 기재)

다. 현지법인의 판매처별 매출금액 및 비중 (당 회계기간 중)

	현지판매		대 한국 수출		제3국 수출		계
	관계회사앞	기 타	한국투자자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금액							
비중							100.0%

주) 관계회사는 국내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임

라. 현지법인의 매입처별 매입금액 및 비중 (당 회계기간 중)

	현지판매		대 한국 수입		제3국 수입		계
	관계회사앞	기 타	한국투자자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금액							
비중							100.0%

주) 관계회사는 국내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임

마.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천미불)

자 산			부채와 자본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유동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관계회사출자금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1.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기타비유동부채)		
			부채총계		
			3. 자본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주) 회계연도말 환율 적용.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대차대조표 작성

바. 현지법인 손익계산서 (당 회계기간 중)

(단위 : 천미불)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매출액 2. 매출원가 (당기매입액) 3. 매출총이익 4. 판매비와관리비 5. 영업이익 6.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7.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리스료)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 법인세비용 10. 당기순이익		

주) 회계기간중 평균환율 적용.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손익계산서 작성

사.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현황

(1) 자회사

(단위 : 천미불)

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채무지표						
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 손자회사

(단위 : 천미불)

손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채무지표						
손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아.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현지법인 영업환경	구 분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현지업체와의 경쟁관계															
	향후 영업전망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1.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인사/노무관련 요인(고용/현지종업원 또는 노동조합과의 불화 등) <input type="checkbox"/> 생산관련 요인(노동생산성/부품·원자재 조달) <input type="checkbox"/> 마케팅관련 요인(홍보/판매) <input type="checkbox"/> 재무관련 요인(현지금융 조달/과실 송금 등) <input type="checkbox"/> 사회간접자본관련 요인(도로/항만/전력/용수 등) <input type="checkbox"/> 현지국 정부의 간섭(과도한 준조세/현지기업과의 차별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2. 개선이 필요한 투자국의 법규나 제도(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노동관련 분야: <input type="checkbox"/> 공장부지 확보 등 토지관련 분야: <input type="checkbox"/> 분쟁해결 절차: <input type="checkbox"/> 세제: <input type="checkbox"/> 금융: <input type="checkbox"/> 회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현지법인 향후계획	1. 현지법인의 향후 계획 <table border="1" data-bbox="363 1469 1279 1576"> <thead> <tr> <th data-bbox="363 1469 612 1514">철 수</th> <th data-bbox="612 1469 826 1514">투자축소</th> <th data-bbox="826 1469 1024 1514">현상유지</th> <th data-bbox="1024 1469 1279 1514">투자확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3 1514 612 1576"></td> <td data-bbox="612 1514 826 1576"></td> <td data-bbox="826 1514 1024 1576"></td> <td data-bbox="1024 1514 1279 1576"></td> </tr> </tbody> </table> 2. 현지법인 철수 및 이전 계획인 경우, 향후 투자 대상 국가 <table border="1" data-bbox="363 1621 1024 1680"> <tr> <td data-bbox="363 1621 612 1680">국가명</td> <td data-bbox="612 1621 1024 1680"></td> </tr> </table>						철 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국가명	
철 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국가명																
대 정부 건의사항																



2. 국가명은 영문기재를 원칙. 중국은 성(省), 미국은 주(州)를 포함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토록 법정소재지를 상세히 기재. 중국의 성(省)은 국·한문 모두 기재하며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국가로 기재함
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 병기(예: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함
4. 제조업, 무역업의 경우 현지법인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주요 제품명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경우 세부사업내용을 기재(예:신사의류제조)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품목 및 매출비중을 기재함
5. 순투자액은 투자액에서 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록함
6. 구주 및 신주 비율의 합은 지분인수비율임
7. “공동투자”는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작투자”는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함

### 3. 현지법인 자본현황 및 한국투자자 투자내역

현지 법인 자본 현황	자 본 금	천미불	한국투자자 지분율 합(B) :
	자본잉여금	천미불	
	자본조정	천미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천미불	
	이익잉여금	천미불	
	합 계(A)	천미불	
한국 투자자 투자 내역	지분투자(C)	천미불(A×B)	
	대부투자잔액(D)	천미불 (전기말:            천미불)	
	합 계(C+D)	천미불	

### 4. 현지법인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천미불)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5.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역투자<sup>1)</sup> 현황

	금액(천미불)		지분율(%)		배당금 및 이자 (금기,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전기말	금기말	
지분투자					배당금:
대부투자 (대여금 및 채권인수)					이 자:
합 계					

주)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10% 미만일 경우에만 역투자에 해당됨. 10% 이상일 경우에는 역투자자가 아니라 독립된 직접투자에 해당됨

6.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현황

(1) 자회사

(단위 : 천미불)

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재무지표						
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 손자회사

(단위 : 천미불)

손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재무지표						
손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 보고서

(20 . . . 월 중)

1. 해외직접투자 신고 명세(내용변경 신고 명세 포함)

(단위: 미불)

일 자	투자자	기업규모 <sup>1)</sup>	현지법인명	투자국	업 종 <sup>2)</sup>	투자방법	비율	신고금액	합작투자자	신고기관	비고 <sup>3)</sup>

- 1)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기재
- 2)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5자리) 기재
- 3) 신규, 증액, 내용변경으로 구분 기재

2. 해외직접투자 신고 업체 투자현황

(단위: 미불)

투자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투자일자	투자방법 <sup>주)</sup>	투자내역			현지법인명	투자국	신규·증액
					현금	현물	이익잉여금등 기타			

주) 증권 및 대부투자 등으로 구분

3. 해외투자사업 대부투자원금 회수 명세(금전대여의 경우)

(단위: 미불)

투자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현지법인명	외환매입일자	매입금액	투자국

4. 현지법인 투자금 회수, 청산회수 등 명세(해외투자사업별 청산보고서 첨부)

(단위: 미불)

일자	투자자	현지법인명	투자국	투자방법	비율	신고금액	회수내역 <sup>주)</sup>	회수(실효)금액	합작투자자	비고

주) 투자금 회수(비거주자에 대한 전액 지분매각 포함), 청산회수(현지법인 청산의 경우), 실효(투자 취소 등)

5. 변경사항 보고내용

구분 <sup>주)</sup>	변경일자	투자자	사업자(주민)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주) 1. 투자자 상호 변경 2. 투자자 대표자 변경 3. 투자자 소재지 변경 4. 현지법인명 변경 5. 현지법인의 소재지 변경  
6.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변경 7. 자(손자)회사관련 보고내용





## 사후관리 유의사항

- 가. 해외지점의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점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완료 보고를 할 것
- 나. 해외지점의 영업기금보유,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영업순이익의 처분 및 손손실의 발생,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행의 사후관리를 받을 것
- 다. 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당행에 제출하여 그 결산 및 손익 상황에 관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을 것
- 라. 해외지점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및 처분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
- 마. 국내 항공·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해외지점의 현지수입금 및 현지수입금 사용명세서를 당행에 제출할 것
- 바. 해외지점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당행에 보고할 것
- 사. 해외지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 매각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 해외지점의 연도별 영업활동보고서(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서 포함, 별지 지침서식 9-22호)를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제출할 것

해외사무소 설치(변경) 신고(보고)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 호	(인)	대 표 자	
	사업자(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소 재 지 )	(주소) (전화번호) (e-mail)		
	업 종		담 당 자	
	기 업 규 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신청내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보고		
	사 무 소 명	(국문) (영문)		
	소 재 지	(국가명) (세부주소)		
	업 종 코 드	(표준산업분류표 5자리)		
	설 치 비			
	유 지 활 동 비			
	주 재 원 수	본국과건 :      명, 현지채용 :		
	설 치 사 유			
	변 경 사 항	내 용		
	사 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청인 귀하	신 고 번 호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필함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 고(보 고) 기 관 : (인)				

## 사후관리 유의사항

- 가. 해외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사무소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완료 보고를 할 것
- 나.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유지활동비,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행의 사후관리를 받을 것
- 다. 해외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당행에 보고할 것
- 라.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사무소의 재산목록,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해외사무소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및 처분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보고서

(보고회계연도 :       년)

1. 지점설치 신고인 현황

상 호 또는 성 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 소			

2. 해외지점 현황

지 점 명				
주 소				
설 치 일		설 치 국 가		업 종
주 재 원 수	본국파견 :   명		현지채용 :   명	

3. 재무상황 요약

(단위 : 천미불)

총 자 산		영업기금잔액	
매 출 액		영업손익금	
순이익(결손)금			

4. 자금차입 및 대여현황(당해 본사가 설치한 다른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거래현황)

자금차입현황	
자금대여현황	

5. 영업기금 지급현황

(단위 : 천미불)

구 분	지 급 금 액	
지 점	영 업 기 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사후관리의무면제 보고서

(      년      월      일)

\_\_\_\_\_ 귀하  
(참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은행                    지점 (인)  
담당자: \_\_\_\_\_ 전화번호: \_\_\_\_\_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제2항, 제9-25조제5항 및 제9-40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후관리의무면제 대상업체를 보고합니다.

투자자명 (직접투자, 지사설치)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현지법인(해외지사)명	현지법인(해외지사) 소재지	투자금액	비고 (사후관리 면제코드)

신고인명 (해외부동산)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신고일자	신고번호	신고금액	비고 (사후관리 면제코드)

- ※ 사후관리 면제코드 : 1. 투자자(법인) 폐업    2. 투자자(법인) 휴업    3. 투자자 소재불명    4. 현지법인 폐업    5. 현지법인 휴업  
6. 현지법인 소재불명    7.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8. 현지 재난·재해    9. 파산, 소송 등 현지 법적 분쟁  
☞ 해외지사의 경우 면제코드 1~3만 사용 가능, 해외부동산의 경우 면제코드 1~3, 7~9만 사용 가능

※ 본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 및 국세청의 해외부동산 관련 사후관리의무면제 자료로 활용되오니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사후관리면제 사유 관련서류는 해당 투자서류철에 편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지사 설치·현황 보고서  
(20 . 분기)

1. 해외지사 신고(설치비 및 영업기금 지급신고 포함)명세

(단위: 미불)

일 자	신고자	기업규모 <sup>1)</sup>	지사명	설치국가	구분 <sup>2)</sup>	투자금 구분 <sup>3)</sup>	최초·추가 <sup>4)</sup>	신고금액	신고기관

- 1)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정부투자기관, 비영리단체 등)로 구분 기재  
 2) 1.독립채산지점 2.비독립채산지점 3.해외사무소  
 3) 1.영업기금 2.설치비  
 4) 1.최초 송금(해외지사 설치와 영업기금, 설치비를 동시신고하는 경우) 2.추가 송금(영업기금, 설치비 추가지급을 위하여 경비지급 신고하는 경우)  
 ※ 해외지사 설치신고와 영업기금 또는 설치비를 동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구분, 최초·추가, 신고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2. 해외지사 신고 업체 송금현황

(단위: 미불)

신고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송금일자	송금내역			지사명	설치국가	최초·추가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3. 해외지사 폐쇄내역

(단위 : 미불)

일 자	신 고 자	해외지사명	설치국가	신고금액	회수구분 <sup>주)</sup>	회수금액	비 고

주) 1.해외지점 폐쇄 후 영업기금 회수액      2.해외사무소 폐쇄 후 잔존재산 처분 후 회수액

4. 변경사항 보고내용

구 분 <sup>주)</sup>	변경일자	신 고 자	사업자(주민)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주) 1. 신고자 상호 변경    2. 신고자 대표자 변경    3. 신고자 소재지 변경    4. 해외지사명 변경    5. 해외지사의 소재지 변경  
6.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변경

5. 부동산 취득·처분 현황

(단위 : 미불)

신고자	지사명	취득일	취득 금액	처분일	처분 금액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관련 유의사항

1.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하려는 해외부동산을 담보로 현지의 금융기관(비거주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신고의무는 면제되므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만 하면 됨  
→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현지조달액 및 현지금융기관 등을 기재함
2. 내신고가 가능한 경우
  - 가. 분양과 관련한 청약대금을 사전에 송금해야 하는 경우
  - 나. 매매물건이 확정되었으나, 계약금 등의 사전지급 없이는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내신고를 한 경우 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신고를 하거나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함
3.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추가 송금을 통한 현지조달액 감액 등)하는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내용변경 신고해야 함  
※ 신고수리받은해외부동산(A)을 처분하고 다른 해외부동산(B)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으로 (A)에 대한 처분 보고와 (B)에 대한 취득신고를 동시에 이행한 후 거래해야 함(내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4. 해외부동산 취득 후 현지 금융기관(또는 비거주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를 신고해야 함
5.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에 따라 아래 보고서를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1)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 :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개월 이내
  - 2) 해외부동산 처분(변경)보고서 : 부동산처분(변경)후 3개월 이내(3개월 이내에 처분대금 수령시 수령시점)
  - 3) 수시보고서 : 매 2년마다 보유사실 입증서류
6.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주요항목 기재 요령

- 본신고 및 내신고 구분 : 해당 항목을 체크
- 총취득금액(A) : 당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총액
- 국내송금액(B)
  - 가. 취득자금 국내 송금액 : 부동산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송금하는 금액
  - 나. 모기지론(원리금상환송금액) : 모기지론 금액 중 국내에서 송금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
- 현지조달액(C)
  - 가. 모지기론(원리금상환현지조달금액) : 모기지론의 원리금 중 현지에서 급여소득 혹은 임대소득 등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
  - 나. 기타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취득보유가 인정된 자금 혹은 현지 소득금액을 기재
- 신고수리금액 : 국내송금액(B)의 합계금액을 기재

## 서 약 서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고인과 부동산 취득명의인 다를 경우 기재

상기인은 현재 해외이주수속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나 동 해외 체재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에 부득이 본 서약서를 제출하오며, 해외 주거용 주택 취득자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인이 서약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응분의 제재를 받겠습니다.

20 . . .

## 개인의 외국주택 취득 관련 안내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주택을 취득한 자는 외국환 거래규정 제9-40조에 따라 아래의 보고서를 해당기한 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보고서 목록>

보 고 서 명	제 출 기 한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 이내
해외부동산 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 처분(변경)후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처분대금 수령시 수령 시점)
수시 보고서*	매 2년마다 보유사실 입증서류

\*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 사후 보고서의 제출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거나, 신고인의 주소(해외체재주소 포함),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  
(신고인 :                      전화 :                      )

1. 부동산 취득 명의인 :
  - 가. 성명 또는 법인명 :
  -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다. 주소 또는 소재지 :
  
2. 부동산 취득 공동명의인
  - 가. 성명 또는 법인명 :
  -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다. 주소 또는 소재지 :
  
3. 취득의 상대방
  - 가. 상호 또는 성명 :
  - 나. 주소 또는 소재지 :
  
4. 부동산 취득 내용
  - 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 (1)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일 및 신고수리번호 :
    - (2) 부동산 취득 등기일 :
  - 나. 부동산의 내용
    - (1) 내역
      - (가) 종 류 :
      - (나) 건 평 :
      - (다) 대 지 :
    - (2) 소재지 :
    - (3) 취득가액
      - (가) 건물가격 :
      - (나) 대지가격 :
      - (다) 부 대 비 :
    - (4) 부동산 관리자
      - (가) 주 소 :
      - (나) 성 명 :
      - (다) 취득자와의 관계 :
  
5. 기 타
  
6. 첨부서류
  - 가. 등기부등본 등 취득 입증서류(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한함)
  - 나. 부대비 영수증(부동산 취득세 납부증명 포함)
  - 다. 기 타

※ 본 보고서는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 해외 부동산 처분(변경) 보고서

(신고인 :                      전화 :                      )

1. 처분(변경)전 부동산 명의인 :
    - 가. 성명 또는 법인명 :
    -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다. 주소 또는 소재지 :
  
  2. 부동산 취득 공동명의인
    - 가. 성명 또는 법인명 :
    -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다. 주소 또는 소재지 :
  
  3. 처분(변경) 해외부동산의 내용
    - 가. 부동산의 명세(종류, 수량, 가격 등) :
  
    - 나. 부동산의 소재지 :
  
  4. 해외부동산 처분내용
    - 가. 부동산 처분 등기일 :
    - 나. 처분가격 :
    - 다. 기타 지급비용 :
    - 라. 국내 회수금액 :
    - 마. 국내 회수금액 수취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바. 신고인과 국내 회수금액 수취인과의 관계 :
  
  5. 해외부동산 변경내용 :
  
  6. 첨부서류
    - 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부동산 소유권 처분에 한함)
    - 나. 기타 지급비용 명세서
- ※ 1) 본 보고서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변경)후 3개월 이내(3개월 이내에 처분대금 수령 시 수령 시점)에 제출할 것  
2) 본 보고서 제출시 부동산 매각대금(국내 회수금액)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환매입 증명서(송금처 명기)를 첨부할 것

<b>대북투자(변경)신고서</b>				처리기간																
신고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e-mail)																	
	업 종																			
신고내용	투자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투자 <input type="checkbox"/> 재투자(증액)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폐지																		
	투자방식	<input type="checkbox"/> 증권취득 <input type="checkbox"/> 대부채권취득 <input type="checkbox"/> 기타																		
	투자업종																			
	투자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th> <th style="width: 20%;">증권투자</th> <th style="width: 20%;">대부투자</th> <th style="width: 30%;">총투자액</th> </tr> </thead> <tbody> <tr> <td>현금 (US\$)</td> <td></td> <td></td> <td></td> </tr> <tr> <td>현물 (US\$)</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del>X</del></td> <td></td> </tr> <tr> <td>합계 (US\$)</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증권투자	대부투자	총투자액	현금 (US\$)				현물 (US\$)		<del>X</del>		합계 (US\$)			
		증권투자	대부투자	총투자액																
현금 (US\$)																				
현물 (US\$)		<del>X</del>																		
합계 (US\$)																				
현지법인명	(자본금: USD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div>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고필한다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US\$)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신고기관 :                      (인)																	



② 대부투자

대 부 액		자 금 용 도	
이 율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대 부 자 금 조 달 방 법	자 기 자 금		차 입 금

4. 사업의 개요 및 투자의 필요성

5. 현지법인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단위 : 천미

불)

자 금 운 용		자 금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토지		차입금	
건물			
기계설비		자기자본	
운영자금			
·			
·			
·			



## 송금(투자)보고서

1. 투자자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2. 투자내용

가. 신고수리일자 및 신고수리번호 :

나. 투자국명 :

다. 투자업종 :

라. 북한현지법인명 :

3. 송금상대방(현지법인)

가. 수 취 인 :

나. 계좌번호 :

4. 송금(투자)내용

가. 투자신고액

(1) 증권투자 : (US\$ : )

(2) 대부투자 : (US\$ : )

(3) 기타( ) : (US\$ : )

나. 송금(투자)내용

(1) 송금일자 :

(2) 송금(투자)액 :

(3) 투자방법(지분/대부) :

5. 첨부서류

- 송금(투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송금 CABLE, 송금확인서 등)

- 수출신고필증(현물출자인 경우)

※ 1) 본 보고서는 송금(투자)후 즉시 제출할 것

2) 협력사업승인서 또는 신고수리서 원본의 여백에 송금은행의 송금확인을 받을 것

## 증권(채권)취득보고서<sup>1)</sup>

증권       채권

1. 투자자현황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상 호 또는 성 명		설 립 연 월 일	
주 소(소 재 지)	(주소) (전화번호)	(e-mail)	
투 자 자 규 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개인		
신 고 수 리 일 자		신 고 수 리 번 호	

2. 현지법인현황

법 인 명				
주 소(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e-mail)			
설 립 등 기 일		영업개시(예정)일		결 산 일

3. 증권 취득 내용

증권취득일(자본금출자일)		증 권 종 류	
액 면 가 액 합 계		취 득 가 액 합 계	
증 권 발 행 여 부	<input type="checkbox"/> 증권발행 <input type="checkbox"/> 증권미발행		

4. 채권 취득 내용

채 권 취 득 일		대 부 원 금	
이 자 율		대 부 기 간	
원 금 회 수 방 법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회수 <input type="checkbox"/> 분할회수(총 회, 주기 :    )		

1) 증권 취득 내용은 기업등록증, 채권 취득 내용은 차용증 및 영수증으로 증빙함



3. 남측 투자자 투자실적 및 자금조달

가. 투자실적

(단위 : 천미불)

구 분	직전년도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현물투자						
현금투자						
합 계						

나. 투자자금 조달

(단위 : 천미불)

자기자금			차입(타인자금)				
내부유보금	유상증자	기타	차입처	차입금액	금리	만기	보증인

4. 현지법인(기업) 경영현황

가. 현지법인(기업)의 투자자 및 근로자 앞 지급액 (당 회계연도 중)

(단위 : 미달러)

배당금		남측투자자앞 대부이자지급액	남측투자자앞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남측근로자앞 임금지급액
지급총액	남측투자자앞 지급액			

주) 회계연도중 현지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기준

나. 현지법인(기업)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 (당기말 현재)

(단위 : 천미불)

차입처	코드 <sup>1)</sup>	차입금액	보증자	코드 <sup>2)</sup>	차입계약기간		금리		용도 <sup>4)</sup>
					1년 미만	1년 이상	변동금리 <sup>3)</sup>	고정금리	

주) 코드가 2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코드별로 분리 작성

1) 차입처코드 : 1. 남측금융기관, 2. 현지국금융기관, 3. 관계회사(모기업포함), 4. 기타

2) 보증자코드 : 1. 관계회사(모기업 포함), 2. 국내금융기관, 3. 현지법인 물적담보, 4. 현지법인 신용,  
5. 합작투자자, 6. 기타

3) 기준금리 (Libor(Sibor, TB) 또는 CD) + spread 의 형태로 기록할 것

4) 용도코드 : 1. 시설자금, 2. 운전자금, 3. 채무상환, 4. 기타(기타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바.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당기말 현재)

(단위 : 천미불)

자 산			부채 및 자본		
항 목	전 기	당 기	항 목	전 기	당 기
1. 유동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1. 유동부채 (매입채무) (선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		
2. 고정자산 투자자산 (관계회사출자금) (장기대여금) 유형고정자산 (토지) (건물) (설비 등) 무형고정자산			2. 고정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기타고정부채)		
			부채합계		
			3. 자본 (납입)자본금 (잉여금) (당기순이익)		
총자산			부채 및 자본		

주) 각 항목은 회계연도말 환율을 적용하며,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대차대조표로 작성

사. 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당 회계연도중)

(단위 : 천미불)

항 목	전 기	당 기	항 목	전 기	당 기
1. 매출액			7.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및 할인료) (리스료)		
2. 매출원가 (당기매입액)			8. 경상이익		
3. 매출총이익			9. 특별이익		
4. 판매비와 관리비			10. 특별손실		
5. 영업이익			11. 법인세전 순이익		
6.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12. 법인세		
			13. 당기순이익		

주) 각 항목은 회계연도 중 평균환율을 적용하며,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손익계산서로 작성

아.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1. 현지법인 영업환경	구 분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1) 현재 영업환경					
	2) 향후 경영전망					
2.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1)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인사/노무관련 요인(고용/복측종업원과의 불화 등) <input type="checkbox"/> 생산관련 요인(노동생산성/부품·원자재 조달) <input type="checkbox"/> 마케팅관련 요인(홍보/판매) <input type="checkbox"/> 재무관련 요인(차입/송금 등) <input type="checkbox"/> 사회간접자본관련 요인(도로/항만/전력/용수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항 :					
	2) 개선이 필요한 법규나 제도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노동관련 분야 : <input type="checkbox"/> 분쟁해결 절차 : <input type="checkbox"/> 통행, 통관 관련 : <input type="checkbox"/> 세제 : <input type="checkbox"/> 금융 : <input type="checkbox"/> 회계 :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항 :					
3. 현지법인 향후계획	철 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전반적 계획)					
4. 대 정부 건의사항						

4. 첨부서류

- 현지법인 감사보고서(결산서) 또는 세무보고서(있는 경우에 한함)





다.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1. 대북사업 영업환경	구 분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1) 현재 영업환경					
	2) 향후 경영전망					
2. 대북사업 운영상 애로사항	1)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인사/노무관련 요인(고용/복측종업원과의 불화 등) <input type="checkbox"/> 생산관련 요인(노동생산성/부품·원자재 조달) <input type="checkbox"/> 마케팅관련 요인(홍보/판매) <input type="checkbox"/> 재무관련 요인(차입/송금 등) <input type="checkbox"/> 사회간접자본관련 요인(도로/항만/전력/용수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항 :					
	2) 개선이 필요한 법규나 제도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노동관련 분야 : <input type="checkbox"/> 분쟁해결 절차 : <input type="checkbox"/> 통행, 통관 관련 : <input type="checkbox"/> 세제 : <input type="checkbox"/> 금융 : <input type="checkbox"/> 회계 :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항 :					
3. 대북사업 향후계획	철 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전반적 계획)					
4. 대 정부 건의사항						



4. 잔여자산 회수 내역

가. 해산개시일(해산등기일) : 청산종료일 :

나. 청산등기일 현재의 자산·부채(요약) 현황

(단위 : 천미분)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투자 및 기타 자산		고 정 부 채	
고 정 자 산		자 본 금	
이 연 자 산		잉 여 금	
계		계	

다. 청산손익(해산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손익):

라. 회수되어야 할 재산[("가"의 순재산액±"나")×남측 투자비율] :

마. 회수재산 내역

(단위 : 천미분)

구 분	회수재산의 종류	금 액	비 고
회수일자			
계			

바.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

5. 첨부서류

가. 청산인 경우

-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전의 대차대조표
- 잔여재산(증권의 전부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 증명서(송금처 명기),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나. 대부채권 회수인 경우

- 외환매입 또는 예치증명서(송금처 명기)

※ 1)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을 것(대부채권 회수인 경우 제외)

2) 본 보고서는 남측으로 회수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북한 포함)에서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에 보고 할 것









## 대북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 보고서

(20 . . . 월 중)

1. 대북투자 신고 명세 (내용변경 신고 명세 포함)

(단위 : 천미불)

일 자	투자자	기업규모 <sup>1)</sup>	현지법인명	투자지역 <sup>2)</sup>	업 종 <sup>3)</sup>	투자방법 <sup>4)</sup>	비율	신고 금액				합작(합영) 투자자	신고기관	비고 <sup>4)</sup>	
								현금	현물	기타	합계				

- 1)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기재 2) 개성, 금강산, 기타지역으로 구분 기재 3)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5자리) 기재  
4) 증권, 대부, 기타로 구분 기재 5) 신규, 증액, 내용변경으로 구분 기재

2. 대북투자사업 신고업체 투자현황

(단위 : 천미불)

투자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투자일자	투자방법 <sup>주)</sup>	투자내역		현지법인명	신규·증액
					현금	이익잉여금 등 기타		

주) 증권 및 대부투자 등으로 구분

3. 현지법인 증권(채권)취득 내역

(단위 : 천미불)

투자자명	신고일자	신고금액	현지법인명	구 분 <sup>주)</sup>	취득일	취득금액

주) 1. 증권 2. 채권

4. 대북투자사업 대부투자원금 회수 명세(금전대여의 경우)

(단위 : 천미불)

투자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현지법인명	외환매입일자	매입금액	투 자 국

5. 현지법인 투자금 회수, 청산회수 등 명세(해외투자사업별 청산보고서 첨부)

(단위 : 천미불)

일 자	투 자 자	현지법인명	투 자 지 역	투자방법	비 율	신고금액	회수내역 <sup>주)</sup>	회수(실효)금액	합작(합영) 투자자	비 고

주) 투자금 회수(비거주자에 대한 전액 지분매각 포함), 청산회수(현지법인 청산의 경우), 실효(투자 취소 등)

6. 변경사항 보고내용

구 분 <sup>주)</sup>	변경일자	투 자 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1. 투자자 상호 변경      2. 투자자 대표자 변경      3. 투자자 소재지 변경      4. 현지법인명 변경
- 5. 현지법인의 소재지 변경      6.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변경      7. 자(손자)회사관련 보고내용

## 북한지사 설치·현황 보고서

(20 . . . 월 중)

1. 북한지사 신고(설치비, 영업기금 및 유지활동비 지급신고 포함)명세

(단위 : 천미불)

일 자	신고자	기업규모 <sup>1)</sup>	지사명	설치지역 <sup>2)</sup>	구분 <sup>3)</sup>	투자금 구분 <sup>4)</sup>	신고금액	신고기관

1)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정부투자기관, 비영리단체 등)로 구분기재

2) 개성, 금강산, 기타지역으로 구분 기재

3) 1.독립채산지점    2.비독립채산지점    3.북한사무소

4) 1.설치비            2.영업기금            3.유지활동비

2. 북한지사 신고 업체 송금현황

(단위 : 천미불)

신고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송금일자	송금내역				지사명	설치지역	최초·추가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기본경비	기타경비			

3. 북한지사 증권 및 부동산 취득(처분) 내역

(단위: 천미불)

신고자	지사명	구분(증권/부동산)	취득일	취득 금액	처분일	처분 금액

3. 북한지사 설치 내역

투자자명	신고일자	북한지사명	구분 <sup>주)</sup>	설치일

주) 1. 독립채산제 지점 2. 비독립채산제 지점 3. 사무소

4. 북한지사 폐쇄내역

(단위: 천미불)

일 자	신 고 자	북한지사명	설치지역	신고금액	회수구분 <sup>주)</sup>	회수금액	비 고

주) 1. 북한지점 폐쇄 후 영업기금 회수액 2. 북한사무소 폐쇄 후 잔존재산 처분 후 회수액

5. 변경사항 보고내용

구분 <sup>주)</sup>	변경일자	신 고 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주) 1. 신고자 상호 변경 2. 신고자 대표자 변경 3. 신고자 소재지 변경 4. 북한지사명 변경 5. 북한지사의 소재지 변경  
6.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변경

##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한 송금(투자) 보고서

1. 투자자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2. 투자내용
  - 가. 신고수리일자 및 신고수리번호 :
  - 나. 투자국명 :
  - 다. 투자업종 :
  - 라. 북한현지법인명 :
3. 송금상대방(현지법인)
  - 가. 수 취 인 :
  - 나. 비거주자원화계정 계좌번호 :
4. 송금(투자)내용
  - (1) 송금일자 :
  - (2) 투자금액 :(KRW: ) (USD:: )  
※환율은 당일 매매기준율 적용
  - (3) 투자내용 :
5. 첨부서류
  - 비거주자원화계정 사본
  - 송금(투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송금 CABLE, 송금확인서 등)
  -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한 대부자금의 지급시 거래사실확인서류(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1) 본 보고서는 송금(투자)후 즉시 제출할 것

  - 2)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한 대부투자의 경우 송금(입금) 및 지급 즉시 각각 제출할 것  
단, 동일자에 송금(입금)과 지급이 동시처리되는 경우 1회 제출로 같음함
  - 3) 협력사업승인서 또는 신고수리서 원본의 여백에 송금은행의 송금확인을 받을 것